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2009. 12.

교육과학기술부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과 학 기 술 ····· 1

- 과학관 학예연구직 채용 불합격 사유 공개 요청 ····· 3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질의 ····· 3
- 국제기술사 등록에 대한 문의(책임기술자관련) ····· 4
- 국제기술사 자격 요건 중 공학학사 조건 문의 ····· 4
- 비이공계 졸업자는 국제기술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지? ····· 6
- 기술사 계속교육은 해외체류시 유예가능한지? ····· 6
- 기술사와 관련없는 업무수행시 교육훈련 이수의무가 있는지? ····· 7
- 기술사 교육훈련 (CDP) 대상, 방법, 학점 문의 ····· 8
- 기술사 종목정비 계획 질의 ····· 9
- 기술사 CPD교육 기산일 기준 질의 ····· 10
- 기술사 계속교육(CPD) 기산일 질문 ····· 11
- 외국기술사 1차시험 면제 폐지 유예 경위 ····· 12
- 이공계(과학자) 지원이 필요 ····· 13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건의(학경력기술자, 가산점) ····· 14
- 공동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의 총괄과제 관리 등의 업무가 가능한지? ····· 15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미활용 특허권 양여 ····· 16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가능한지? ····· 17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17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현물투자 오류분에 대한 징수방안 ····· 1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출연금 이자 사용 질의 ····· 18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①항 관련 질의 ····· 19

- 대학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지? ····· 20
- 연구과제 참여율 관리 ····· 20
- 연구지원금 제도 관련 문의 ····· 22
- 학력 미달 연구전담요원 인정 요청 ····· 22
- R&D연구사업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 23
- 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의 관람료 책정 기준이 강행규정인지? ····· 24
- 서울과학관 발전 방안 문의 ····· 24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과학자 정보 요청 ····· 25
- 비영리 사단법인 사업실적 보고 방법 질의 ····· 25
- 사이언스tv 시청자 게시판 관리요청 ····· 26
- 출연(연) 청년인턴 학력제한 관련 문의 ····· 26
- KSTAR 핵융합에너지 개발 기간 단축 요청 ····· 27
- KSTAR 기술유출 우려 ····· 27
- 우주인 이소연씨 실험 결과 문의 ····· 28
- 안전관리 1, 2등급이 생물안전위원회 필수사항인지? ····· 28
- 연구소 안전관련 적용 법령에 대한 질의 ····· 29
-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 문의 ····· 29
-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위험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30
- 유전자 변형 동물 수입 방법 질의 ····· 3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 31
-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 추진 일정관련 질문 ····· 32
- 원자력법상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차이점 ····· 33
- 기술주제 보고서의 승인요청 방법(방사선 폐기물 관련) ····· 34
- 대학보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자격기준 문의 ····· 35
- 밀봉된 방사선발생장치(X-Ray장비) 사용에 대한 질문 ····· 36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재교부 방법 문의 ····· 37
-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실무경력 문의 ····· 38

●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에 대한 궁금사항 문의 ····· 40
● 열화상진단용역이 비파괴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 41
●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관한 질문 ····· 41

■ 전 문 대 학 ····· 43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로 개편된 학과 ····· 45
● 역량강화사업 주체에 관한 질의 ····· 45
● 인가대학 확인 방법 ····· 46
● 대학 인가 여부 ····· 46
● 대학의 인사행정에 관한 문의 ····· 46
● 집중수업에 대하여 질의 ····· 47
● 대학평의원 관련 질문 ····· 48
● 산업체 위탁생 등록금 질의 ····· 48
● 법인이사 임기에 관련한 질문 ····· 48
● 복수전공에 대하여 문의 ····· 49
● 사립대학 감사의 법적 책임 및 사임코자 할 때의 절차 ····· 49
● 사립학교법58조2(직위의해제)에 관한 건 문의 ····· 50
● 사립학교법과 대학정관에 관한 질의 ····· 51
● 사립학교의 장(대학) 징계처분 관련 문의 ····· 52
●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자격 ····· 53
● 산업체위탁교육생과 일반학생의 차이점은? ····· 53
● 승진심사에 대해서 문의 ····· 54
● 사전예고 없는 교수해임 ····· 54
● 전공심화 과정지원시 근무기간 산정 ····· 55
● 유학생 입학관련 질의 ····· 55
●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임원의 선출 방법 문의 ····· 56
● 이사회 의결사항인 재산의 범위 ····· 56

- 전공심화과정 개선에 관한 건 문의 ····· 57
- 전문 대학 설립 절차 및 시설물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 ····· 58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 지원 자격 ····· 59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기준에 대한 문의 ····· 60
- 전문대학과 고교 연계교육관련 문의 ····· 60
- 전문학사의 영문명 ····· 61
- 전일제수업 및 강의시간 선택제 개념 ····· 61
- 정규학기와 다학기 혼합 운영 문의 ····· 62
- 학력인정 가능 여부 ····· 62
- 학사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3년제 전문대 2년 수료) ····· 63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산업체 근무경력) ····· 63
- 해외인턴쉽 관련 질문 ····· 64
- 현장실습 관련 문의 ····· 64
- 해외인턴쉽에 대한 질문 ····· 65

■ 대학 및 대학원 ····· 67

- 일반대전환에 따른 국고지원금 ····· 69
- 강의실 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 69
- 공공건물 건설공사 관련 자재공급사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건 ····· 70
- 기존 대학교 부지면적 변경결정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면적기준적용여부 ···· 70
- 대학 컨벤션센터 건축 관련 ····· 72
- 대학교 내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72
-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교사시설의 범위 ····· 73
- 대학시설내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문의 ····· 73
- 대학시설중 지원시설에 대한 질의 ····· 74
- 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부지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74
-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에 문화집회시설 설치 가능 여부 ····· 75

- 민간업자가 학교를 건설하여 정부에 임대하는 사업(BTL)에 예산낭비 가능성은 없는지 ····· 76
- BTL 물가변동 사후정산 해석 ····· 76
- BTL사업 물가상승분 반영관련 GDP 디플레이터지수 적용관련 질의 ····· 77
- BTL사업중 퇴직공제부금초과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 78
- BTO(민자유치)사업 관련 문의 ····· 79
- 국립대학교 법인화가 사립과 같은 의미인지 ····· 79
- 국립대학의 법인화 관련 건 ····· 80
- 대학선진화위원회 부실대학 처리 관련 문의 ····· 81
- 자퇴하려는 학생이 과거 받은 누리장학금을 환불하는 것이 합당한지? ····· 81
- 대학 휴학 후 타 대학 지원이 가능한지? ····· 82
- 계약학과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대한 질의 ····· 83
- 계약학과 설치 관련 문의 ····· 83
-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문의 ····· 84
- 지자체 관할지역내의 직장인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문의 ····· 85
- 계약학과 운영(학생모집) 관련 문의 ····· 86
- 계약학과 운영 시 제반경비 관련 문의 ····· 86
-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에 관한 질의 ····· 87
- 직장인 산업체 위탁 관련 법률 문의 ····· 87
- 대학도서관 개방관련 문의 ····· 88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 육성 사업의 개선방향? ····· 89
- 외국의 한국어학과 설치된 대학 도서관에 한국어로 된 책 기증요청 ····· 89
-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대학조직 인정여부 문의 ····· 90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문의 ····· 90
-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국가기관 인정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 90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이 외부기업 및 기관과 공동출자하여 기업설립이 가능한지? ····· 91

- 산학협력단 및 학교장의 관계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문의 ····· 92
- 산학협력단에서 할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문의 ····· 92
- 이미용업의 학교기업 설립가능여부 문의 및 절차 문의 ····· 93
- 일반논문 제출 방법 문의 ····· 93
- 징계 시효에 대한 문의 ····· 94
- 생리 공결 처리 문의 ····· 95
- 홍콩 로컬학교 재학시 학력인정 문의 ····· 96
- “국립의료원간호대학”승계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 ····· 97
- ’09. 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 관련 문의 ····· 98
- ’09. 10년 약학대학 수업 개설에 관한 문의 ····· 99
- 대학의 5년제 건축학과 문의 ····· 99
- 6년제 약대 입학에 관한 질문 ····· 100
- 6년제 약대에 관해 문의 ····· 101
- 6년제 약대 진학 시험 관련 ····· 101
- 통합으로 인한 교명 변경 ····· 102
- 계절학기 활성화 요청 ····· 103
- 고등교육법 22조의 대학의 수업의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103
-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의미는? ····· 104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문의 ····· 104
- 과통합에 관한 질문 ····· 105
- 교명 변경에 대해 질문 ····· 106
- 대학입학전형에서의 지원방법에 대한 문의 ····· 106
- 교과부 인정 외국학교 여부 질문 ····· 107
-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절차 문의 ····· 108
- 국내(한국)대학교 졸업예정일때 외국의 학교 입학에 대해서.. ····· 108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 109
- 미복학 제적생 등록금 반환 요청 ····· 109

-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관련 문의 ····· 110
- 국립대학교병원이 국가기관인지? ····· 110
- 국제입찰 대상 정부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111
- 군 복학과 관련한 문의 ····· 111
- 학점 궁금한게 있어요. ····· 112
- 기성회비 감시에 대해서 ····· 113
- 대학 경차 주차 문의 ····· 113
- 대학 교양에 대한 질문 ····· 114
- 대학 모집단위 조정 시행 관련 문의 ····· 114
- 대학 및 대학원 설립에 대한 문의 ····· 115
- 대학 특별학점인정 관련 문의 ····· 116
- 대학 편입학에 대한 문의 ····· 117
- 대학 학과 특수대학원(야간)에 이중 학적 보유가 가능한지? ····· 117
- 대학 학위명 및 편입학 모집관련 문의 ····· 118
- 대학 학점 등록제 실시 요청및 학점 졸업제(학기 졸업제 폐지), 전공필수과목 학점 50% 이하 ····· 118
- 대학(교) 편입 자격 ····· 119
- 앨범비 납부가 필수인지 ····· 120
- 대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문의 ····· 120
- 대학교 수업료 환불 문의 ····· 121
- 대학교 재학 중 취업관련 문의 ····· 122
- 대학교 편입학 문의 ····· 123
- 대학교 사실여부 확인 문의 ····· 123
- 외국대학교 학점 인정에 대한 문의 ····· 124
- 대학생에 대한 조기취업 시기 문의 ····· 124
- 대학설립 인가에 관한 법령 문의 ····· 125
-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에 관한 질의 ····· 125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학생정원 증원과 조정관련 문의 ····· 126
- 대학성적 환산 질의 ····· 127
- 대학수시모집 전형료 질의 ····· 127
- 대학에서의 수업일수에 대한 문의 ····· 128
- 대학원 간 이중학적 허용여부 문의 ····· 129
- 대학원 학사 운영 방식 문의 ····· 130
- 대학의 주간과 야간 수업연한을 달리해서는 안되는지? ····· 130
- 대학의 학기 이수관련 문의 ····· 131
-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시 이혼자녀의 입학 문제 ····· 131
- 대학입학시 제출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관련 문의 ····· 132
- 대학캠퍼스를 떠나서 수업진행 가능 여부 문의 ····· 132
- 대학 편입학에 대한 문의 ····· 133
- 대학학적에 관해서 문의 ····· 133
- 도시 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에 대한 질의 ····· 134
-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 ····· 135
-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에 대하여 문의 ····· 135
- 미국 대학 인가 신청에 관한 문의 ····· 136
-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취득했다는 학사학위 문제 문의 ····· 136
- 사립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 137
- 사범대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졸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138
- 사이버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문의 ····· 138
- 산업대학의 휴학에 관한 질의 ····· 139
- 산업체 위탁교육 문의 ····· 139
- 설립주체(국립과 도립)가 다른 대학간 통합 가능 여부 ····· 140
- 성적에 관한 내용 문의 ····· 140
- 수능 제 2외국어에 대하여 문의 ····· 141
- 실습/실기 수업 장소 문의 ····· 142

- 실용음악과 편입 문의 ····· 142
- 야간대학 관련 문의 ····· 143
- 야간특별과정편입생 토요일 강의 가능 여부 문의 ····· 143
- 약대 6년제 질문 ····· 144
- 약대 학생선발을 신입학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여부 ····· 144
- 약학전문대학 6년제 시행 문의 ····· 145
- 수시 원서료 문제 ····· 146
- 외국계대학 졸업후 알고보니 비인가대학 ····· 146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제 운영 시 정원 제한? ····· 147
-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에 관하여 문의 ····· 148
- 외국인 편입학관련 문의 ····· 148
- 의료행위 교육학원의 위법여부 문의 ····· 149
- 이중학적 적용 여부 및 허용 가능성 문의 ····· 150
- 이중학적에 대한 문의 ····· 150
- 이중학적의 범위와 적용여부 문의 ····· 151
- 일반휴학시에 군입대후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 151
- 작업치료학과 설립 인증 기준에 대하여 문의 ····· 152
- 재수생에 관해서 문의 ····· 153
- 재입학생에 관한 전과 허용 여부 문의 ····· 153
- 군복무 중 수능 합격시 입학연기나 군휴학 가능여부 ····· 154
- 전과 문의 ····· 154
- 전문학사 등록확인 문의 ····· 155
- 전임강사폐지에 관한 문의 ····· 156
- 정규학교및 학점인정 문의 ····· 156
- 제적자의 편입학 허용 여부 문의 ····· 156
- 간호학과 편입에 관해 문의 ····· 157
- 졸업증명서 관련 질의 ····· 158

- 주간학과의 수업시간에 대하여 문의 ····· 158
- 중국 산서성에 사원학원의 인정여부 문의 ····· 159
- 치의예과 수료인데 약대 일반편입 지원가능한지 문의 ····· 159
- 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재입학 문의 ····· 160
- 특별학점 인정 여부 문의 ····· 160
- 편입에 따른 학점인증 문의 ····· 161
- 편입학 여석산출 시 폐과로 인한 캠퍼스간 전과 인원 반영 여부 ····· 162
- 필리핀대학 재학중 한국대학교 편입이 가능한가요? ····· 162
- 학력인정 질문 ····· 163
- 학력인정 확인 및 편입학 자격확인 ····· 164
- 학력 인증에 대한 문의 ····· 164
- 학사 동등 자격에 대한 문의 ····· 165
- 학점인정에 대한 문의 ····· 166
- 학점인정에 대해 문의 ····· 166
- 한국에서 인정되는 대학교에 대한 문의 ····· 167
- 한의학과 학사편입 관련 문의 ····· 168
- 해외 대학 졸업 인정에 대한 문의 ····· 168
- 휴직중인 교원이 심사한 학위논문의 효력에 대한 문의 ····· 169
- 휴학생 성적인정 가능 여부 문의 ····· 169
- 휴학생의 학정상태 질의 ····· 170
- 휴학자의 학력인정 여부 문의 ····· 171
- 한국폴리텍대학 교육과학부 인정 기관 여부 문의 ····· 171
- 학교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실시에 대한 문의 ····· 172
- 이사회 의결여부 질의 ····· 172
- 이사회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 대한 문의 ····· 173
- 이사회의에 관한 질의 ····· 173
-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이 기본재산포함되는지? ····· 174

- 임시이사체제의 대학교 학교회계 사용에 대한 문의 ····· 175
- 재산취득 가능여부 질의 ····· 175
- 재직 중인 이사가 연임을 원치 않을 경우 후임이사 선임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 176
- 전문대학원설립에 필요한 조건 ····· 176
- 정이사 선임 관련 문의 ····· 177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이전이 가능 여부 문의 ····· 177
- 커피전문점을 교사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178
- 학교 설립 과정에 대해 문의 ····· 179
- 학교공사 관련 후원금 법인회계접수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 ····· 179
- 학교기업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 180
- 학교법인 설립시 시설공사 발주 관련 문의 ····· 181
-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 매각 관련 문의 ····· 182
- 학교법인 이사회 및 임원과 관련하여 문의 ····· 182
-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관련 질의 ····· 183
- 학교법인 임원 해임에 관한 질의 ····· 185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문의 ····· 185
-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의 대학 차이 ····· 186
- 학교운영 주체와 법인인감 사용에 대하여 문의 ····· 187
- 학교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 ····· 187
- 해외부동산 매입에 대한 문의 ····· 188
- 해임과 사임의 차이점 및 절차와 효과에 대한 문의 ····· 189
- 현직 사립대학교 교수의 법인경영 관련 문의 ····· 189
-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 문의 ····· 190
- 회의 용어 및 의미 해석에 대한 문의 ····· 190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3항에서 이사전원이란? ····· 191
-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감사의 직무에 관한 문의 ····· 191

-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호선의 의미 ····· 192
-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사장에 대한 안건상정시 이사회 소집권자의 건 ····· 192
- 사립학교임원(이사)의 해임 의결 관련 문의 ····· 193
- 산학협력단 운영 문의 ····· 193
- 수의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 ····· 194
- 수익용자산(부동산)를교육용자산으로 전환에 대해 문의 ····· 194
- 수익용재산(토지)의 교육용지 전환 관련 문의 ····· 195
- 신학교 설립 및 절차 문의 ····· 196
- 신학대학 이전 건 문의 ····· 196
- 이사선임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의 ····· 197
-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사회자 지정? ····· 197
- 의전원 폐지 움직임에 대해.. ····· 198
- 특수대학원에 대해 문의 ····· 198
- 학사 교육부 인정 여부 ····· 199
- 고등교육법시행령 ····· 200
- 남성 차별적인 로스쿨(law school) 입학요강 문제..여자들은 모든 로스쿨 지원가능 ··· 200
-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 관련 문의 ····· 201
-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 202
- 대학원 학위 표시와 관련하여 ····· 203
- 대학원대학교 관련 내용 ····· 203
- 로스쿨 생긴 대학 법대 재입학 ····· 204
- 로스쿨 정책에 관해 문의 ····· 205
- 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 205
- 로스쿨 특별전형(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의 ····· 206
- 박사과정 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 ····· 207
- 박사논문 제한 기간이 교육법에 명시되었는지요? ····· 207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 208

- 서민의 자녀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방법 ····· 209
- 석/박사 인원 수위조절 ····· 209
-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 퇴학없이 석사학위 수여 가능 여부 ····· 210
-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 자격 ····· 211
- 약학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 211
- 외국대학 졸업자 학위인증 문의 ····· 212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교육부 등록 증빙서 ····· 212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 석사 학위와 논문에 관하여. ····· 213
-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복수 지원 가능 여부 ····· 214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 214
- 학위 확인 ····· 215
- 학위인정관련 ····· 216
- 검사가 되기위한 방법 ····· 216

■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과정 ····· 219

- 국립(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저렴하게 운영 요청 ····· 221
- 평생교육원 시간제수업 관련사항 ····· 221
- 09년 1학기 수강인원 제한 및 등록금인상 안내 ····· 222
- 간호학사 취득을 위한 요청 ····· 223
-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대학 증명서 ····· 224
-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 224
- 독학사 및 자격증 시험 일정 ····· 225
- 평생교육기관 소급 학점 인정 여부 ····· 225
- 학습자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 226
- 보육교사 자격증을 위한 학위취소 ····· 227
- 학점은행제 사설업체 환불 ····· 228
- 학점은행제 시간제수업 축소에 대해서 ····· 228

- 학점은행제 인정범위 ····· 229
- 1급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해 ····· 230
- 사회교육전문요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재발급 문의 ····· 231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활용 ····· 231
-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된 문의 ····· 232
- 평생교육기관 실습을 위한 기관 확인 ····· 233
-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의 비전 ····· 234
- 평생교육사 1급 승급에 대하여 ····· 234
- 평생교육사 3급 실습 면제 가능 여부 ····· 235
- 평생교육사 3급 자격 취득 ····· 236
- 평생교육사양성과정 모집 관련 ····· 236
- 평생교육사 배치 및 채용과 관련하여 ····· 237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238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강생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유무 ····· 239
-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문의 입니다. ····· 241
-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41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기관 ····· 242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의 ····· 242
- 평생교육사 취득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43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질의 ····· 244
- 평생교육실습(학습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 245
- 평생교육실습 면제 가능 여부 ····· 246
- 평생교육사실습 면제조건 ····· 247
- 여성의 평생교육정책 관련 ····· 247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시간제 모집 관련 문의 ····· 248
- 겸임교수 시수 부족에 따른 교원수 인정여부 문의 ····· 248
- 고등교육법 인가 12곳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문의 ····· 249

-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문의 ····· 250
- 공인 인증서 관련 문의 ····· 251
- 방송대에 박사과정 설치관련 문의 ····· 252
- 방송통신 고등학교 출석수업 관련 ····· 252
- 방송통신대학교에 수학과 개설요청 ····· 253
-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이수를 받으면 학사학위로의 인정을 법적으로 확인할수 있는지? ····· 253
- 사이버대학원 관련 문의 ····· 254
- 「원격대학의」 시행령 제29조 제2항 3호 관련 문의 ····· 255
- 유사 학교명칭에 따른 답변요청 ····· 255
- 사이버 이공계 대학설립에 대한 문의 ····· 256
- 사이버대학에서의 영국식 영어로의 영어강좌 개설 등 문의 ····· 257
- 해외 외국정규학교 수업영상 국내 온라인 서비스 관련 문의 ····· 258
- 사이버대학 설립과정 문의 ····· 259
- 시간제등록생 관련 문의 ····· 259
- 사이버대학 설립기준에 설비현황 관련 문의 ····· 260
- 튜터를 조교로 볼 수 있는지 문의 ····· 262
-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교과부의 인가받은 곳인지 ····· 262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회복지 원격대학인지 확인차 ····· 263

■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 265

- 상업실기교사자격증 취득 ····· 267
- 10년 중등임용시험 복수전공 가산점 관련 ····· 267
-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안내 ····· 267
- 1급 정교사 자격증에 관한 질의 ····· 268
- 1급정교사 자격증 소유시 교육대학원 졸업시험 교직이수과목 통과 여부 ····· 269
- 2009년도 편입자의 구법 또는 개정법 적용건 ····· 269

2010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사 관련 문의 ····· 270
2급 준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 271
2급 중등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 271
사범대 가산점 폐지 ····· 272
간호학과 교직이수 문의 ····· 272
개명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재교부 ····· 273
교과목변경승인에 대한 질문 ····· 273
교대통폐합 반대 ····· 274
교련 교사 자격증 ····· 274
특수교사자격증 관련하여 문의 ····· 275
교사자격증 유효확인서 신청방법 ····· 275
방통대의 교사자격증발급 여부 ····· 276
전임강사 경력자에 교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 277
교생실습 면제 ····· 277
교생실습과 관련하여 질문 ····· 278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문의 ····· 278
교원 자격증 문의 ····· 280
외국대학 졸업 후교원 자격증 취득 ····· 280
교원임용고시에 대해서 ····· 28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문의 ····· 281
교원자격 표시과목 ····· 282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 검정이란? ····· 282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연계전공의 뜻 ····· 28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 가능할지? ····· 28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 가능한지 ····· 284
교원자격조건에 대하여 ····· 285
교원자격증 관련 ····· 285

- 교원자격증 관련 문의 ····· 286
- 교원자격증 관련 ····· 287
- 교원자격증 관련하여 문의 ····· 288
- 교원자격증 명칭변경(교도교사 자격증) 문제 ····· 288
- 교원자격증 문의 ····· 289
-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추가적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 289
- 교원자격증 취득후 편입학 관련 ····· 290
- 교원자격증 통합교과 표시과목 변경의 건 ····· 291
- 교원자격증 통합교과 표시과목 변경의 건 ····· 291
- 교원자격증(부전공) 취득 문의 ····· 292
- 교원자격증 때문 ····· 292
- 교원자격증의 추가 취득 ····· 293
- 교원자격증취득에관하여 ····· 294
- 교육대학교 심화과정 질문 ····· 295
- 교육대학교 유아교육 졸업 자는 유아교육2급 정교사 무시험 검정 대상인지 ····· 295
- 교육대학원 입학시 어린이집근무교사(유치원정교사 자격자)에 대한 차별 ····· 296
- 교육대학원 교사자격증 발급가능 ····· 296
- 교육대학원 교생실습 ····· 297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지급 ····· 297
- 교육대학원 부전공 교원자격증 ····· 298
- 교육대학원 실습에 관해 문의 ····· 299
- 교육대학원 입학 자격에 관하여 ····· 299
-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문의 ····· 300
- 교육대학원 입학시 학점인정 관련 ····· 301
- 교육대학원 입학자격에 대해서 ····· 302
- 교육대학원 입학조건에 관한 문의 ····· 302
- 교육대학원 전공개설 문의 ····· 303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입학관련 문의 ····· 303
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부여관련 ····· 304
교육실습 면제 가능 문의 ····· 305
교육실습 면제대상 범위 문의 ····· 305
교육실습 면제에 대해 ····· 306
교육실습 문의 드립니다. ····· 306
교원 임용 결격사유 ····· 307
교육학전공 ····· 307
교직과목 관련 질문 ····· 308
치료교육교사자격 취득 방법은 ····· 308
교직이수 과목 설치 및 사범대학 학과 설치 제한에 관한 문의 ····· 309
교직이수가능 대학 ····· 310
교직이수대상자 관련 ····· 310
교직이수에 관하여.. ····· 311
교직자격검정에 대해 ····· 311
유치원교사의 상담심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 312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문의 ····· 312
기술·가정연계전공 ····· 313
사이버대학 특수교육과 ····· 313
대학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14
대학편입학시 교원자격증 갱신여부 ····· 315
미용실기교사 취득방법 ····· 315
박사학위 소지자 중등교원 임용 ····· 316
보건교사 교직이수과목 문의 ····· 316
보건교사의 간호교과(과목) 지도에 관한 질의 ····· 317
보건교사자격취득 ····· 318
복수교직에 관한 문의 ····· 318

- 복수전공 ····· 319
- 복수전공 관련 문의 ····· 319
- 복수전공 유무 ····· 320
- 복수전공과 부전공 ····· 321
- 복수전공을 통한 특수교육 전공시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수 학점에 관해 ···· 321
- 부전공교사자격증 ····· 322
- 사립대학 교원자격증 발급 ····· 323
- 사범대 졸업후 간호대 편입하였는데 보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나요? ····· 323
- 사범대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이 가능한지요? ····· 324
- 사범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임용 특례조항 질의 ····· 325
- 사서교사 부전공 표시 ····· 326
- 상담교사 자격요건 ····· 326
- 임용고시 응시 가능한지? ····· 327
- 영양교사 교생 실습에 관한 문의 ····· 327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관련 ····· 328
- 유치원 교사 자격 교과교육영역에 대한 문의 ····· 329
-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관련 ····· 329
- 인턴교사제, 영어회화전담강사제 반대 ····· 330
- 자격전환 ····· 330
- 자격증 갱신 ····· 331
- 자격증 갱신 ····· 332
- 외국의 유치원교원 자격증 인정 ····· 333
- 사범계 유아교육학과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문의 ····· 333
- 전기, 전자, 통신 중등교사 자격 ····· 334
- 전문가 및 박사 교사 채용 연수에 관한 문의 ····· 335
- 전문상담교사 ····· 335
- 전문상담교사 (1년 양성과정) 자격 취득 건 ····· 336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받고자 할때 ····· 337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에 대하여 ····· 338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에 대해서 ····· 338
- 전문상담교사 문의 ····· 339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없어진 후 ····· 340
- 전문상담교사 임용 자격 ····· 340
- 전문상담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질문 ····· 341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 342
- 전문상담교사 전과 ····· 342
- 전문상담교사(2급) 문의 ····· 343
- 전문상담교사(2급)자격 관련하여 ····· 343
-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 휴직 교사는 불가능한가요? ····· 344
- 전문상담교사과정(1급 양성과정)을 연장 시행 요청 ····· 344
-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방법 ····· 345
- 전문상담교사자격증 ····· 345
- 정교사 자격증에 대한 질문 ····· 346
- 정교사1급 자격증과 관련한 질문 ····· 347
- 제빵 실기 교사는 왜 없나요? ····· 347
- 준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 348
- 준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 ····· 348
- 중등 교원자격증 인정에 대해 문의 ····· 349
- 중등 '조리'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 ····· 350
- 중등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질의 ····· 350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발급 ····· 351
- 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 351
- 실기교사자격취득 요건 ····· 352
- 철학과 교직이수 ····· 352

- 치료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문의 ····· 353
- 치료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 354
- 치료실기교사 관련 질문 ····· 354
- 치료실기교사에 관해서 ····· 355
- 치료특수교사 정2급 자격 유지 ····· 355
- 특수교원자격 관련 문의 ····· 356
- 학사편입과 임용고사에 대해 질문 ····· 357
- 학사 편입을 통한 상담교사 정교사 자격취득 문의 ····· 357
- 화학공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영문과를 전공하고 영어과 정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 357
-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관련 별표 2에 관한 문의 ····· 358
- 치료교사 관련 ····· 359
- 치료교사 자격전환에 관한 질문 ····· 360
- 치료교육 교사 (재활과 복지) 연수 관련 및 대학원 문의 ····· 360

■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 361

- 공휴일 출장시 시간외수당 병급 가능 여부 문의 ····· 363
- 국립대 정원 내 조교 신분 추가 질의 ····· 363
- 겸임 채용 조건 ····· 364
-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365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관련 질의 ····· 366
- 과거 교육법상 대학조교 경력은 현재 교원경력에 산정이 되는지? ····· 367
- 교수 승진자에 대한 계약 임용이 가능한지? ····· 367
- 교수 호봉 산정 관련 문의 ····· 368
- 교수, 조교의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문의 ····· 369
- 교수의 겸직 문의 ····· 369
- 교수자격유지(신분)와 총장자격과 학사학위없는자가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인정여부 ····· 370

- 교수채용 정보사이트 문의 ····· 371
- 교원 승진 임용 최소 경력년수 적용 질의 ····· 371
- 교원 승진규정에 관해 질의 ····· 372
- 교원의 임용기간과 휴직기간에 관한 사항 문의 ····· 372
- 교원확보율 산정시 겸초빙 인정인원 문의 ····· 373
- 교육경력에 대한 유권해석 ····· 374
-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 규정에 대해 ····· 375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해석 의뢰 ····· 375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문의 ····· 376
- 교육대학원 소속 교수의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소속 변경 혹은 겸임 가능 문의 ·· 377
- 교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 문의 ····· 377
- 국립대 정원내 조교의 신분 문의 ····· 378
- 국립대학 계약제 전임교원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 ····· 379
- 국립대학 조교 법정정원 문의 ····· 381
- 국립대학교 교수의 사기업 참여에 대한 문의 ····· 382
- 국립대학교 임용시 경력 호봉산정에 관한 질의 ····· 383
- 대학(교)의 신임교수 임용시 계약제 임용이 가능한 근거는? ····· 384
- 대학교 시간강사 겸직 비겸직 구분 문의 ····· 384
-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에 대하여... ····· 385
- 대학교수 재직중 학위취득에 따른 경력 인정 여부 문의 ····· 386
- 대학교수의 타대학 비전임교수 겸직 문의 ····· 386
- 대학교수의 타대학 비전임교수 겸직 문의 ····· 387
- 대학교원 임용시 평가의 적정성 문의 ····· 387
- 대학교의 연구조교 경력인정률은? ····· 388
- 대학의 교수명칭과 자격에 대해 질문 ····· 389
- 대학의 교수확보율 산정방식 문의 ····· 389
- 명예교수, 석좌교수 임명 근거 문의 ····· 391
-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문의 ····· 392
- 법대 겸임교수의 아파트 동대표 겸직에 대한 문의 ····· 392

- 사립대학교수 겸직허가에 대해 문의 ····· 393
- 사립학교 교사의 대학 시간강사 겸직 여부 문의 ····· 393
- 사립학교 총장 임기에 관하여 문의 ····· 394
- 시간강사 비정규직 고용 문의 ····· 394
-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법 적용 문의 ····· 396
-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 396
- 안식년에 사업가능 여부 문의 ····· 397
- 의원면직과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문의 ····· 398
- 임상실습전담강사 채용에 관하여 문의 ····· 399
- 자체정원 조정시 교원확보율 요건 문의 ····· 399
- 정년퇴임(65세 이상) 교수를 초빙교수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 400
- 조교 임용시 특수교육보조원 경력 인정율 ····· 400
- 지침 폐지에 따른 문의 ····· 401
- 직급 & 재계약 관련 문의 ····· 402
- 직위해제 및 징계 관련 문의 ····· 402
- 초빙교원 학력 관련 문의 ····· 403
- 초중등학교 교사 겸임교수 임용관련 문의 ····· 404
- 파견, 휴직자 인사발령 문의 ····· 405
- 학교 교직원 채용시 규제에 대한 문의 ····· 405
- 호봉획정 관련 문의 ····· 406
- 호봉획정시 상근직의 개념 ····· 407
- A대학 전임교원이 B대학 겸임교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407

■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 409

- 정부학자금 대출의 연령 제한 문의 ····· 411
- 편입생에 대한 기초수급대학생 장학금지급 여부 문의 ····· 412
-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하게 될 경우 문의 ····· 412
- 올라가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문의 ····· 413

-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사항 문의 ····· 414
- 저리의 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자 지원 문의 ····· 415
-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문의 ····· 415
- 국가 근로장학생 이중수혜에 대하여 문의 ····· 416
-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간 관련 질문 ····· 416
- 국가근로장학생 방학기간에도 근무하는지? ····· 417
- 4년제 대학교 국가근로장학제도에 대하여 문의 ····· 417
- 성적에 의한 등록금 환불 가능 여부 ····· 418
- 근로장학금이 장학금인지 문의 ····· 419
- 2007년 입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지원에 관한 문의 ····· 419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일반휴학 관련 문의 ····· 420
- 기초생활수급자 미래로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 421
- 평생교육법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제외 관련 문의 ····· 421
- 편입생 기초수급대학생 장학금 기준 관련 문의 ····· 422
- 기초수급자 인정 문의 ····· 422
- 다자녀 가구 등록금 면제 가능 여부 문의 ····· 423
-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에 관한 문의 ····· 424
- 휴학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질문 ····· 424
- 대학 수업료 반환 기준일 문의 ····· 425
- 대학 정부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관련 문의 ····· 425
- 대학 제적시 등록금 미 반환 문의 ····· 426
- 대학교 기성회비 차등징수 규정 문의 ····· 426
- 마지막학기의 대학등록금 관련 문의 ····· 427
- 등록금 분납자와 관련한 문의 ····· 428
- 무상고등교육 시행시기 문의 ····· 428
- 보증제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 ····· 429
- 기초생활자의 외국인 아내의 기초생활자장학금 신청 문의 ····· 430
- 신용등급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제한 문의 ····· 431

- 신입생(미성년자) 학자금대출 친권 동의 관련 질의 ····· 432
-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장학금 지급 여부 문의 ····· 433
-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 ····· 433
- 잘못 지급된 장학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434
- 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한 질문 ····· 434
- 기초생활수급자 성적 기준 문의 ····· 435
- 장학제도에 관해 문의 ····· 436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 437
-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 438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문의 ····· 438
- 정부학자금대출 현역사병 이자유예 문의 ····· 439
- 00디지털대학교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 439
- 지방대 인문사회계열장학금 관련 질의 ····· 440
- 지방인문계열 장학금 관련 질의 ····· 440
- 학교 성적장학금 및 학교 규정 질의 ····· 441
-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질의 ····· 442
- 학자금대출 필요 서류 문의 ····· 442
- 현역사병의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에 관하여 질의 ····· 443
- 휴학 복학에 관한 등록금 문제 질의 ····· 443

■ 기 타 ····· 445

- 한국사능력시험 일정 ····· 447
-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관련 문의 ····· 447
- 대학정보(목록)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 448
- 유학자격에 대한 문의 ····· 448
- 국비유학과 장학금에 관한 문의 ····· 450
- 중국 정규대학 졸업 인정 여부 문의 ····· 451
- 중국 유학 관련 지원제도 문의 ····· 451
- 외국인과학기술자 F-5비자(영주권) 신청 문의 ····· 452

Ⅱ.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과 학 기 술

과학관 학예연구직 채용 불합격 사유 공개 요청

질의

○ 특별 채용 학예연구직에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 전형에 불합격 처리되었는데, 그에 관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 기준인 전공분야와 직무연관성, 직무관련 경력, 어학 성적,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차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사료 되어 신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4. [인사과]

○ 과학관 연구직 특별채용은 많은 분들이 응시하셔서 최종 선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자 모두 훌륭한 분들이나 채용인원이 한정되어 애석하게 많은 분들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셨습니다.

○ 서류전형 결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제1항 다호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질의

질의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전기철도, 철도신호는 "전기기술사"로 통합(안)에 대해 변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7.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 종목정비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기술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 3년 계획인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08-2010)에 기술사종목 정비가 반영되어 있

는바,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 종목이 선진국(15~20개)에 비해 너무 세분화(89개)되어있어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국내 기술사활용 관계법령 및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장기적 과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 자격종목의 단계적 정비·통합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종목별 업무영역, 다른 기술자격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22개)를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세부 종목명(89개)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수준, 산업수요, 업무영역, 종목간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종목정비(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 기술사 연구 전문기관(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산업현장 및 학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하여 단계적인 기술사 종목 통합·정비로 연착륙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제기술사 등록에 대한 문의(책임기술자관련)

질의

○ 국제기술사 등록요건 중 책임기술자 등록요건기준 6조 5항 나 ②를 보면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현장에서는 건축소장- 건축-토목-기계-조경 분야 등이 있는데, 그중 토목분야에서 책임을 진 기술자는 인정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추가로 국제기술사와 APEC 엔지니어와의 기준이 완전히 별개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2. [과학인재육성과]

○ 국제 기술사에 대한 심사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상호인정 심사위원회에서,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등록기술사 등은 해당 심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국제기술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술사 국제협력팀(02-538-3159, 내선 4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기술사 자격 요건 중 공학학사 조건 문의

질의

○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문학사 학위에 전자계산 조직응용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획득한 후 4년 실무를 한 뒤 2001에 전자계산 조직

응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 한미 FTA하며 상호인증 얘기가 나온 뒤 당연히 저도 해당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8월 국제기술자 자격요건에 공학 학사 조건이 추가된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 그동안 국가에서 기사자격을 학위에 상관없이 시험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기사자격 획득 후 기술사 자격 조건에 학위 전공과 상관없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국제 기술사 자격요건이라고 공학사 조건이 포함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는 기사자격과 기술사 자격을 비전공자가 취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취득한 기 취득 권리는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4. [과학인재육성과]

○ 세계적으로 기술사의 공학교육 이수 요구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기술사 자격요건으로 대학원 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학교육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Washington Accord에 2005.6월 준회원국가입하고, 2007.6월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공학교육 인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APEC 엔지니어, EMF국제기술사 자격기준은 Washington Accord를 토대로 인증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국제기술사 자격 요건으로 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 회원국들이 마련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2008. 8. 22 고시)을 제정한 것입니다.

○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나,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현장경력을 감안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기술사 계속교육을 이수한다든지 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신청자가 이수한 공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검토, 현장 경력 고령 등을 통해 공학교육 이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정을 한 경우 심사에 통과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 현재로서는 인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공학교육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없어서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기술사는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부족했던 요건이 보완되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제사례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술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학교육 강화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인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이공계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든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비록 국제기술사로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상대국

에서 이공계 졸업증명서나 학위증을 요구할 때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이공계 졸업자는 국제기술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지?

질의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6조 2호 가호에 의하면 '4년제이상 이공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인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업계에 15년 종사하여 소방기술사를 취득했고, 내년에 소방관련학과 대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 4년제 이공대학 교육과정은 이수하지 못하고 관련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면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편입해서 이공대학을 다녀 학사를 취득해야하나요? 편입하면 4년과정이 아니라 2년 과정이 될텐데 그래도 학사학위만 취득하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9.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 회원국들이 합의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사법 시행규칙 및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이공계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공계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제기술사 자격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자격 인정여부는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향후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심사위원회에서 국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행 규정상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제 사례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계속교육은 해외체류시 유예가능한지?

질의

○ 기술사 CDP는 일정 기간, 일정 학점 이상을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역할로 현지에서 1~2년 체류 예정인바, 일정기간의 유예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과학인재육성과]

○ 해외체류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술사 교육훈련실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에 그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소명하시면 교육훈련 이수기간에서 그 기간만큼 뒤로 연기되며, 그 기간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 제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소명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기술사회(02-538-3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와 관련없는 업무수행시 교육훈련 이수의무가 있는지?

질의

○ 식품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식품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기술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3년에 90학점을 이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90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수하지 않으면 기술사 자격을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교육의무를 정의하고 있고, 교육훈련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 대상자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해당 기술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 의무가 없고, 교육을 미이수 하시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년 이상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해 직무 수행 전 45학점 교육훈련의 의무가 있습니다.

○ 교육훈련의 목적은 관련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

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부에서는 해당 기술사 자격 소유자 분들의 교육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기술사 직무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이수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교육훈련 (CDP) 대상, 방법, 학점 문의

질의

1. △△ 공사의 기술사가 기술사 교육훈련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기술사 자격과 수행 업무를 일일히 비교하여 자체 판단으로 교육 여부를 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저희 공사 업무 영역과 성격을 고려할 때 저희 공사내 기술사 전원은 상기법에 해당하는 직무를 하고 있다고 당연히 판단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요?
2. 기술사법 제 5조의 3(기술사의 교육훈련) 3항에 사용자는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가. 90학점 전부를 수강교육으로 취득할 경우, 소요경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나. 시행규칙 별첨,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에 다양한 학점 취득경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바 취득의무학점 90학점의 일부를 교육이 아닌 자율학습활동으로 취득하라고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지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30. [과학인재육성과]

○ 교육훈련 대상은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에(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에 나와 있으며,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고, 기술사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를 말합니다.

○ 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란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말합니다.

○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의 범위는 위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술사를 말하며, 자격에 대한 사용여부는 아닙니다. 기술사교육훈련은 기술사 개인의 직무에 따라 교육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기술사 본인이 기술사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회사 및 개인의 확인서 등)를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인재육성과) 또는 교육실적관리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기술사회에 절차를 문의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술사교육훈련중 기술사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강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3년간 기본 12학점, 전문 12학점 등 총24학점입니다. (지정된 교육기관 : 한국기술사회(전종목), 한국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건설분야))

○ 나머지 66학점은 자율학습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므로(기술사법 시행규칙 별표1 학점인정기준 참조) 수강교육 외에 경력신고나 타법령 교육 등으로 나머지 학점을 개별적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90학점 모두를 수강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필수 수강교육학점(지정된 교육기관교육)은 24학점입니다.

○ 아래에 기술사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교육훈련제도>

□ 교육 대상 및 이수학점(인정기준)

1) 교육훈련 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

2) 이수학점 : 매 3년마다 90학점 이수

※ 3년 이상 기술사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 이수

3)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 90학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교육 각각 12학점 이상 필수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의 종류

1)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자율학습활동

○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기술사 종목정비 계획 질의

질의

○ 2010년도에 기술사 종목을(특히 토목분야를) 통폐합 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3.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 종목정비에 대해 현재 교과부와 노동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PEC 엔지니어나 EMF 국제기술사 등의 제도에서와 같은 대분류체계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기술분야와 기술범위를 같이 표기하여 현재의 종목체계의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기술사 종목의 외국종목과의 통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기술사회 측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제시한 안이며 정부차원에서는 부처간 간담회등을 통해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 기술사 종목정비를 한 과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기가 2010년이고, 2차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종목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목정비는 기술사, 관련 협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각 종목별 주무부장관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종목통폐합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큰 변화를 겪는 종목은 최근 5년간 응시자가 극히 적었고, 응시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분야 기술사 종목은 응시자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극히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종목정비는 기술사 검정시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정비에 따른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목정비와 관련된 협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차후에 안이 만들어지면 기술사와 관계된 분들이 참가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사 CPD교육 기산일 기준 질의

질의

○ 기술사 취득자는 기술사 CPD교육에 관련되어 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2007년 7월 27일이전 기 취득한 기술사는 2010년 7월 26일까지 90학점을 받는다면 그 다음 교육기간 [경우1]과 [경우2] 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경우1] 교육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경우2] 2013년 7월 25일까지 90학점을 수료

회신 회신일 : 2008. 7. 2.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 교육은 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해야하므로, 2007. 7. 27. 이전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교육 기산일은 2007. 7월 27일입니다. 따라서 2007. 7. 27일~2010. 7. 26(3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2010. 7. 27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2013년 7월 26일까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술사 계속교육(CPD) 기산일 질문

질의

○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계속교육(CPD)에 대하여 두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1)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에 대한 기산일의 해석 및 적용

- 2007. 7. 27이전 기술사 취득자에 대하여 시행령을 적용할 때,

  첫째, 2007.7.27을 기준으로 4년,3년,3년의 교육주기가 적용되는지

  둘째, 2007.7.27을 기준으로 3년,3년,3년의 교육주기가 적용되는지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시행일인 2007. 7. 27이후 기산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격증 취득후 1년의 기간이 소급적용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9. 17.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 계속교육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마다 90학점을 취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07년 7월 2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기산일은 "교육 받은 날"이 아니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의 기준은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날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07년 7월 27일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은 1년이 경과한 2008년 7월 26일이 되며, 이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1년 7월 25일까지 9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차 교육기간은 2011년 7월 26일~2014년 7월 25일이 됩니다.

(2) 2007년 7월 27일 이전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기산일은 자격 취득의 "1년 경과" 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자의 기산일

- 기산일은 2007년 7월 27일이며, 2010년 7월 26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차기 교육 이수 기간 : 2010년 7월 27일~ 2013년 7월 26일)

나.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기산일

-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2007년 7월 25일 자격 취득자는 2008년 7월 25일이 기산일이 됨
- 2006년 7월 30일 취득자는 2007년 7월 30일이 기산일이 되며, 이 경우 2010년 7월 29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그리고 2007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 자격 취득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술사는 교육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제한한 것인데, 2007년 7월 27일 이전 자격 취득자중 1년이 되지 않은 기술사 자격 취득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술사 1차시험 면제 폐지 유예 경위

질의

○ 국내 기술사자격시험의 1차 합격율이 응시대비 10%이내로서 합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쉽게 취득 가능한 미국PE(오리곤주)자격을 국내기술사로 1차시험 면제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 2007.12)에서 외국기술사 자격자에 대한 국내기술사자격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를 공표(2008.8)하고서도 폐지를 2010년으로 유예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0. [과학인재육성과]

○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등은 외국과의 협약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1년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한 것은 2009년도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 금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시험이 면제되는 것을 기대하고 외국기술사(PE)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이 입게 될 심리적·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제도개선의 취지와 목

적을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과규정을 둘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과학자) 지원이 필요

질의

○ 저는 수학 과학을 좋아해 과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자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진학률이 우리나라처럼 낮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4. [과학인재육성과]

○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 이공계전공자 채용목표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의 경우 금년에도 5,306명의 과학기술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지원의 결과로 과학고 졸업생의 이공계 진학율을 살펴보면 2003년 74.3%에서 2007년 89.2%로 증가하였으며, 대입 수능 자연계열 응시자(수리 "나"형)을 살펴보면 2005년 전체 응시자 중 62.4% 차지하였다가 2008년 6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에서도 2004년 56%에서 2007년 68.8%로 비이공계 취업률 67.5%보다 약간 더 높아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정부에는 금년에도 이공계 인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초연구강화를 위해 개인·소규모 연구지원[3,704억원('08) → 6,000억원('09) → 1.5조원('12)]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생활과학교실 확대 및 국립중앙과학관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전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풀뿌리 과학기술문화를 조성하여 많은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이공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건의(학경력기술자, 가산점)

질의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중 기술사 자격이 없는 학경력기술자를 기술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수석감리사의 조건이 [감리사 등급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별표 1]을 보면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감리는 투입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업무이며 현장 기술자를 기술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의 법규에서는 기사자격증을 갖고 19년이상 경력만 있으면 수석감리사가 될 수 있으며 (기술사 + 10년 경력과 동등한 위치가 됨), 공무원,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의 자질이 평균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등급으로의 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수석감리사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 감리원의 등급구분은 자격증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여야 하며 기사자격증을 갖고 경력만 있으면 기술사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학경력자의 폐단을 그대로 이어받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PQ점수 산정시 반영되고 있으므로 감리원 등급에서는 자격증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PQ점수 산정시 기술사에 대한 실질적인 가점이 필요합니다.

○ 건설공사의 최종적인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검증받은 자격자을 보유한 감리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부실공사 방지를 확보하고 담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석감리사의 조건을 기술사로 한정함으로써 우수하고 유능한 감리원에 의한 건설품질향상과 함께 감리원의 기술력 향상 등을 이룰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1. [과학인재육성과]

〈1〉 건설분야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과 감리원 제도 개선

○ 「기술사제도개선방안」(2005.11.10)에 따라 「학 · 경력기술자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개정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기술사”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의 자격에 “순수 학경력기술자”의 진입만 차단하고, 국가기술자격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는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기술사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감리원의자격”에 대해 국토해양부(종전의 건설교통부)에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기술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 활동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 감리용역 PQ기준에서 “기술사”자격 보유자 가점 부여

○ 현행 각종 PQ제도 운영에서 “기술사”자격가점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에도 기술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석감리사를 기술사로 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소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법 소관부처로서 기술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사 배출시험(노동부), 육성 · 관리(교과부), 활용(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 부처가 다르고, 소관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이 달라,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해 건설, 토목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여 기술사자격이 실질적인 전문자격자로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동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의 총괄과제 관리 등의 업무가 가능한지?

질의

○ 연구개발을 직접수행하지 않고 아래의 예상역할(연구외 부분) 수행을 위해 정부과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참여시 예상 역할 (연구기관은 연구에 전념)

1. 연구개발 기획 및 로드맵 구성
2. 최적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한 과제관리
3. 주기적 과제협의를 통한 진도 및 연구개발 현황 확인
4. 결과물 정리/보고

5. 기타 연구외적인 사항 처리

회신 회신일 : 2009. 6. 17. [과학기술전략과]

○ 언급하신 연구 외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이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구 외적인 사항만을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미활용 특허권 양여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특허권 중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을 발명자(연구수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특허 등록 후 7년차까지 권리유지를 하고 있으며 8년차 부터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을 7년차 이후 발명자에게 재양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발명자가 특허권리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03호, 2008.12.31) 제15조 6항의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특허 등록후 7년이 경과할때까지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에 대하여 내부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 확정하여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6. [과학기술전략과]

○ 당초 동 규정의 제·개정 사유를 고려시, 7년차 이후 특허권을 포기할 경우, 발명자가 해당 권리의 승계 의사를 밝힌다면 규정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소정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습니다

○ 제개정 사유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의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연구개발자의 소유권 인정. 연구개발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등의 소유권 포기시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가능한지?

질의

○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일부 중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보수)와는 별도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7.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되어 협약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3조에 의한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책임자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범위에서, ---〈 직접비(목) 7. 연구활동비(세목)의 나.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의 75% 이상을 보상금 · 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을 발주하는 부처마다 자체 사업관리요령(지침)에 의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당초 계획한 예산과 사업발주 부처 사업관리요령지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및 규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별표1의 [표]내용을 보면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 중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기의 부분 중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히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과학기술전략과]

○ 동관리규정 별표 12호 나목 하단의 단서조항은 나목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나목의 현금부담 기준(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현물투자 오류분에 대한 징수방안

질의

○ 우리 연구원은 2006년, 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기업 현물투자의 오류사항을 정산중에 발견하였습니다. 현물투자가 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잘못 계상되어 잘못된 부분만큼 현금으로 징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현물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08.7.8 일부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별표4에서야 들어가 있어 이 규정 시행전 협약한 내용을 이 규정을 들어 적용할 수 없다고 참여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류 계상된 현물 투자분을 현금으로 받을 근거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3. [과학기술전략과]

○ 2008.7.8일자로 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는 동 규칙 부칙 제8호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 시행전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별표4의 개정내용(신설된 현물부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출연금 이자 사용 질의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조항해석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10조 제9항에

⑨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

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 출연금의 이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

ⅰ) 재투자에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과제의 연구비 부족 시 투입이 가능한지

ⅱ) 새로 신규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에 투입 가능한지

ⅲ) 재투자시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ⅳ)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연구장비 구매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3.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9항에 따른 출연금 이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하위법령(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부처에서 별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출연금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소관 부서)에서 승인하는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질의하신 1, 2, 3, 4번 항목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①항 관련 질의

질의

○ 질의사항 1. 법 제7조 ①항 2호의 “기업의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성격을 지닌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만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사항 2.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5조 ①항 1~4호 ②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 제7조 ①항 2호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사항 3. 법 제7조 ①항 7호의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한국선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사항 4. 시행령 제15조 ⑤항의 “독립된 연구시설”에 한국선급과 같이 독립된 부서로 편제된 연구소(연구시설포함)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8. 22. [과학기술전략과]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①항 2호의 "기업의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의미하며,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 제7조 ①항 7호의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확인 결과 한국선급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를 삭제하여 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동 조항 후단의 기준을 충족하는 타 분야의 비영리법인도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시행령 제15조 ⑤항의 "독립된 연구시설"이란 독립부서 편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 업무공간 및 시설과 구분되는 연구공간 및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사항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타 공간 및 시설과 분명히 구분되는 연구 공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이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 '08년도 산학연 협력사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가 대학내 또는 대학인근으로 되어 있어 벤쳐기업을 경영하는 교수 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대학 연구실내에 또는 대학 공간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희망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1. [과학기술전략과]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기준에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로 대학 내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대학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설치기준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참여율 관리

질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범주에 지자체나 공사의 연구용역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요?
3. 내부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참여율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4. 연구과제 참여율 관리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기업체의 연구과제(용역)도 참여율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5. 만약 민간단체 및 기업체 연구용역도 참여율 관리를 해야 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 기준도 내부인건비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6. 민간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과제가 참여율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 규정으로 참여율을 산출하여 간접경비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9. [과학기술전략과]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부, 처, 청 등을 말하며, 이들 기관에서 "oo연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과제를 공모하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나 공사의 연구용역은 사업시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에도 용역사업 예상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oo용역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역사업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닙니다.
2. 참여율은 연구자의 연구 참여 비율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관리합니다. 즉, 과제참여율이 20%인 경우 인건비 총액의 20%만 해당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내부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내부인건비를 계상은 하지만 연구비로 지급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연구 참여도에 따른 참여율은 산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에 연동해서 계상되는 직접비중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의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4.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봉총액(보험금, 각종 부담금 포함)을 100%으로 할 때 연구사업의 연구비로부터 계상 · 지급되는 인건비의 비율로, 정부지원 인건비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나 기업체의 수탁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공공수탁사업에 대해서만 참여율 관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봉총액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재검토 대상입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나, 민간수탁사업인 경우에는 민간과 대학이 협의하여 연구비목과 비목별 연구비용 등을 산정하게 되므로 민간과 협의하면서 학교규정을 근거로 참여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간접경비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연구지원금 제도 관련 문의

질의

○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연구사업 중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연구 실험장비 구입이나 연구와 관련되는 건물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때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나 제도가 있는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0. [과학기술전략과]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은 정부에서 직접 출연이 가능하여 대형 시설 및 건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실험장비의 경우에는 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자유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에 포함된 연구실험장비는 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과제 수주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출연(연)의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나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 미달 연구전담요원 인정 요청

질의

○ △△연구소는 독립된 연구 개발 공간과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2명의 연구 인력의 학력이 맞지 않아서 연구소 설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간 10여건의 특허출원과 개발상품이 있음에도 연구소 설립을 신청할 수 없어 각종 정부 과제 신청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학력이 미달되더라도 예외조항을 두어 오랜 경력, 노하우, 연구개발 활동을 갖추고 특허 출원을 하여 개발 제품에 적용한 사례를 가진경우에 연구 인력자격을 인정 해주시어 많은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에 전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과학기술전략]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관련 요건은 개정 당시 기업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하는 내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현재와 같이 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규정의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D연구사업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질의

○ 00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면서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현재 수산분야 및 환경분야 관련하여 R&D연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00협회가 R&D연구사업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다른 기관에서 한바가 있어 질의합니다.

○ 저희는 본 연구사업을 추진하면 전적으로 인건비를 이 사업에서 충당해야하며, 일부 참여인력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자립도 강화를 위하여 수익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에 대해서는 협회로 부터 인건비 지급이 없이 순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 이에 제가 소속된 협회가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4. [과학기술전략과]

○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격상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에 대해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개발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그 급여를 연구개발비에서 충당하도록 내부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0협회는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해결방안

귀 협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에서 외부인건비를 지원(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위한 일시적 고용 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에 연구수당(인건비의 20% 이내)을 계상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상설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의 관람료 책정 기준이 강행규정인지?

질의

○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이 과학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관람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책정을 하면 되는데, 과학관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상의 별표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5. [과학기술문화과]

○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2항에 의하면 국·공립(시에서 건립)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책정기준은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서울과학관 발전 방안 문의

질의

○ 현재 서울과학관은 시설도 낙후되고 창경궁 부지내에 위치하여 신증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되면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됩니다.

○ 국립서울과학관 이전이 가능하다면 서울에 유치를 원하는 자치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립서울과학관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서울시내 타부지로 이전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7. [과학기술문화과]

○ 서울과학관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개관으로 인한 서울과학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계하여 수학, 과학교육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주신 서울과학관 이전에 관한 의견은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 보다는 수도권 북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관 발전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과학자 정보 요청

질의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인물을 중심으로한 한국과학기술인 기념을 주제로 전시작품을 내고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여러 과학자들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 [과학기술문화과]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사업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6명이 헌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명예의 전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http://kast.or.kr/HALL/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사업실적 보고 방법 질의

질의

○ '07년도 까지는 과학기술부에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08년도 정부 부처의 통합으로 주무 관청이 변경되어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신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한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보고를 매년 꼭 해야 하는지?
- 보고 시기는 언제까지이고, 양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3. 2. [과학기술문화과]

○ 과학기술분야 학회의 주무관청은 부처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이며,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은 '과학기술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 및 학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 등의 제출은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익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tv 시청자 게시판 관리요청

질의

○ 사이언스tv를 시청하는데 게시판에 사이언스tv와 관련된 질문을 남기면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전화연결도 안되고 싸이트 관리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7. 14. [과학기술문화과]

○ 현재 사이언스TV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청자 의견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 작가나 PD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사이언스TV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사이언스TV에서는 게시판 담당자 지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사이언스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연) 청년인턴 학력제한 관련 문의

질의

○ 00연구소 청년인턴 모집에는 4년제 학사만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자나 전문대학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2. [연구기관지원과]

○ 출연(연) 인턴연구원은 기 신문공고('09.1.20) 및 기관별로 공고한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향후 인턴연구원 제 추진시 응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STAR 핵융합에너지 개발 기간 단축 요청

질의

○ KSTAR 핵융합에너지 개발 현실화 상용화는 2040년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2015 년쯤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되도록 최대한 연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STAR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과감한 국력 총력 지원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2. [거대과학기반과]

○ 우리나라는 2007년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KSTAR)를 완공하여 2008년 6월 최초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습니다.

○ KSTAR 장치는 향후 2025년까지 핵융합 플라즈마 가열, 진단, 제어 등에 대한 연구 및 고성능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기술을 습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핵융합연구 선진국과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료, 재료, 열 이용 및 공학 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EU, 미국 등 핵융합 선진국에서도 2030년대 핵융합발전 실증로(DEMO)에 의한 전기 생산 실증과 204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대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핵융합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부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STAR 기술유출 우려

질의

○ 대한민국의 태양 핵융합 계발에 연구진 중 일부 외국인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스럽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7. [거대과학기반과]

○ 우리나라는 '한국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국내 핵융합 연구장치를 중심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풍부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핵융합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확보에 노력중이며, 이러한 과정은 국가 중요 연구시설에 적용되는 철저한 보안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기술유출과 같은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주인 이소연씨 실험 결과 문의

질의

○ 우주인 이소연씨가 우주에서 실행한 과학실험결과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실험결과들을 보고 싶은데 보도 자료만 있을 뿐 실험결과에 대한 것은 없더군요. 실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를 보내 주시며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8. [우주개발과]

○ '우주에서 실행한 과학실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sbs이 협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18개 연구실험결과에 대해 분석 진행중입니다.

○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로 실험결과에 대해 공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제작된 cd을 일반인이 구매하는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1, 2등급이 생물안전위원회 필수사항인지?

질의

○ LMO 안전관리 1,2등급은 생물안전위원회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3. [기초연구과]

○ 현재 생물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은 2등급 연구시설에서 권장사항입니다. 필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 및 통합고시가 개정되면 관보에 게재되며, 연구시설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에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biosafety.mest.go.kr)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안전관련 적용 법령에 대한 질의

질의

○ 당사 연구소는 00회사의 일부 부서로써 제품 연구, 개발을 담당합니다. 당사 연구소는 00라는 법인으로 재무, 인사, 홍보 등 지주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과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소가 떨어져 있지만 독립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 (질의)이 경우 연구소는 기업체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0. [기초연구과]

○ 동 연구소는 독립기관이 아니어서 본사에서 적용받는 법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기업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사고시 보상이 되며, 구성원이 근로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비의 확보(근거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와 연구실사고발생시의 조사는(법 제16조)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관리규정 작성,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참조)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 문의

질의

○ 교과부 소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르면
가.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나. 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사용명: 00안전협의회 연회비
- 사용처: 안전관리자 정기회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안전관리 정보교류, 안전세미나 실시, 안전관리 교육 등

*참고: 00안전협의회는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등록된 비영리기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1. [기초연구과]

○ 교과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 20조(연구개발비 사용),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실 안전과 직접관련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로 불인정하고 있으나, 00안전협의회는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00안전협의회 연회비를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연회비가 연구실안전 세미나 등 안전관리비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위험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 법적으로 선임된 인원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위험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타직원들 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9. [기초연구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용도도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 구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따라서, 말씀하신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법령에 한정된 용도에 사용하시어, 연구실 안전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변형 동물 수입 방법 질의

질의

○ 00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입니다. 외국에서 유전자 조작 생쥐를 수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1. [기초연구과]

○ 시험연구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실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연구환경안전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별지11호 서식)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3.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1부
4.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1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6. 시험연구개요서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질의

○ 질문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험용 마우스나 랫드의 transgenic 동물로 미국 등에서 많이 개발되어 SPF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용 마우스나 랫드를 SPF 동물로 수입하려고 하면 이 법률에 적용이 되는지요?

○ 질문2) 치매에 관련된 transgenic mouse와 관절염에 관련된 transgenic mouse를 수입하여 연구자에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와 이것을 사용하는 자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지요? 매번 수입시때마다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2. [기초연구과]

○ (답변1) 적용됩니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사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

는 실험용 동물(마우스, 랫드 포함)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돌연변이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2) 네, 적용됩니다. 먼저, transgenic mouse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는 연구자(연구기관)는 관련 시설을 LMO 연구시설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체에서도 transgenic mouse를 수입하여 사육한다면 관련 시설을 LMO 연구시설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 수입하는 마우스는 수입업체 또는 사용하는 연구기관(연구자)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 추진 일정관련 질문

질의

○ 2009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내용 중 인력양성사업 관련입니다.

○ 미래연구자, 원자력국제전문가, 3N 연구자 등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식 공고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00의학원 연구원으로 근무중인데 미래연구자 지원가능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기존의 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30. [원자력정책과]

1. 2009년도 인력양성사업 추진일정

○ 미래연구자, 원자력국제전문가 사업 추진일정 : 5월 공고, 6월 평가, 7월 연구개시

○ 3N연구자 : 2월 공고, 3월 평가, 4월 연구개시

2. 미래연구자 지원가능대상

○ 국외 대학, 연구소, 국제대회 등에 우수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원으로 구성된 그룹을 파견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국제화 도모하는 것으로, 연구책임자가 해당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진하므로

○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신청당시 학부 도는 대학원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또는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산업체,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정규직 연구원인 자로서 만 35세 미만인자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요령)

○ 미래연구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원으로서, 연구책임자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거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어야합니다.

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은 미래 원자력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할 고급 전문인력 육성과 원자력분야의 연구 및 산업인력의 균형적 수급을 위한 차세대 우수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술진흥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원자력법상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차이점

질의

○ 원자력법상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 (질의 1) 건설허가는 각종 원자로시설(관계시설 포함)을 건설 및 설치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운영허가는 건설허가에 따른 원자로시설을 건설 및 설치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안전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상용화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즉 건설이나 새로운 시설에 대한 설치와는 무관한 영역인 순수한 운영과 운전에 관한 사항인 것)이 맞는지?

○ (질의 2) 건설허가 변경사항의 경우는 기존에 건설 및 설치된 원자로시설(관계시설 포함)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 및 설치할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후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해석도 맞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8. 4. [원자력안전과]

(질의 1에 대한 답변)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가 건설이나 새로운 시설에 대한 설치와는 무관한 영역인 순수한 운영과 운전에 관한 사항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는 예비허가와 최종허가의 개념으로, 동일한 목적의 예비서류(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서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제출·검토됩니다.

- 건설허가시에는 주로 위치 등 부지의 적합성과 원자로시설의 기본 설계, 기본적인 방사선환경영향 등(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과 건설·시공상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 운영허가시에는 건설허가시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수정을 거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제출·검토되어 최종확인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운영허가”라고 해서 순수하게 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허가”시 예비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개념으로 “운영허가”사항에는 “건설허가”사항의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예시한 바와 같이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원자로시설 내에 새로운 관계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성능, 운영 등에 관한 최종적인 허가인 “운영허가”의 변경사항이 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 원자력법 제11조 후단의 건설허가 변경은 운영허가 이전의 원자로시설 건설단계에서 건설허가 제출서류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건설허가 제출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등

○ 이미 운영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변경허가가 가능하지 않으며, 원자로의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운영허가 서류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됩니다.

기술주제 보고서의 승인요청 방법(방사선 폐기물 관련)

질의

○ 원전기술 고도화 사업으로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용 고건전성 용기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과제 수행의완료와 함께 성공(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

○ 과제수행의 목표로서 기술주제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자력법 제 104조의 2, 1항에 의거 보고서의 승인을 요청 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참가하는 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1.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28조”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신청을 하실 경우, 우리부에서는 원자력법 제104조의2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28조 등 법령에 따른 신청자격, 기술주제의 적합성(신청대상) 등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친 후에 동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적합여

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을 하실 경우 우리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동 승인된 사항이 바로 원자력시설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기술 등을 채택하여 원자력법령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우리부의 허가(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현행 원자력법은 전체적으로 “원자력관계사업” 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관점에서 사업수행 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절차와 요건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 즉, 기기나 기술별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원자력관계사업이나 원자력이용시설에서 허가내용의 일부로서 반영합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원자력법이 사업 또는 시설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분용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별 용기에 대해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자력시설(원자로시설,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등)에 대한 허가서류(예: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이런 절차는 원자력법령에 따라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라야 밟을 수 있으며, 이런 방식은 하나의 원자력기기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적용대상 사업․시설과 더불어 (즉, 적용환경과 더불어) 종합적인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예외적으로 운반용기에 대하여는 개별 설계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원자력법 90조의2) 이 경우에도 승인신청의 주체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보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자격기준 문의

질의

○ 원자력법 66조 제1항 4호와 동법 시행령 제196조 제2항 2호 별표3에 의하면 사용허가 인력기준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취득자를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사는 없는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방사선사면허소지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대학이더라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취급자의 피폭관리에 보다 적합하므로 방사선사면허소지자도 사용허가 인력기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3.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 제91조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제도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면허제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 양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각 면허별 세부시험과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밀봉된 방사선발생장치(X-Ray장비) 사용에 대한 질문

질의

○ 제 회사에서 전자부품 분석용 X-Ray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05년 8월 23일에 신고필증을 받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및 성능 : (엑스선발생장치)160 kVp 0.2mA X1(용량이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인것 같습니다.)
2. 사용목적 : 제품의 내부결함 검사
3. 사용방법 : 외부의 조작판넬에서 컴퓨터에 의한 원격조작
4. 사용장소 : 동사 공장 생산라인
5. 신고일 : 2005. 08. 23

○ 제가 이 장비를 맡으면서 관련 법조항을 찾지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 1. 이 장비에 대해서 현재 3명의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교육을 마친상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수교육은 필요 없는 것인지요?

질문 2. 3명의 담당자들에 대해서 매년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1년에 한번씩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 3. 기타 이 장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7.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표면방사선량률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용목적, 방법, 장소, 신고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고대상일 것 같습니다.

답변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경우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관리구역이 없으면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2 건강진단에 대한 조항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99조입니다. 원자력법시행령 제298조와 제299조를 참조하시면 신고사용자는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검진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 : 원자력법시행령 제298조 및 제299조

- 원자력법시행령 제298조 (측정) ①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9조에서 같다)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 원자력법시행령 제299조 (건강진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보존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답변 3 방사선발생장치 수량 증량/사용장소 변경 등은 사전에 변경신고를, 상호/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후 30일 이내에 경미한사항변경신고를 그리고 신고한 방사선발생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 30일 이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원자력법상의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상의 의무는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재교부 방법 문의

질의

○ RI 면허를 분실하여 재교부 받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17.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의 재교부 신청은 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rasis.kins.re.kr) 접속→사이버민원→민원서식(39번 서식 원자력 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 재교부이므로 면허번호는 안적으셔도 됩니다. 동 양식을 첨부파일로도 보내드립니다.

※ 사유서는 6하 원칙에 의해 A4 용지에 작성, 수입인지(2,500원 우체국에서 판매), 사진 1매를 동봉 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요.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 문서가 처리되면 등기로 면허증을 재교부해 드립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실무경력 문의

질의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응시자격은 원자력법시행령 별표5의 따라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이상 종사한자 입니다.

○ 그리고 과기부고시에 나온 실무경력은 개인선량계피폭기록이 방사성동위원소협회(100% 인정)와 식품의악청안전청(50%인정)에 보고된 개인선량계 피폭측정만으로 인정합니다.

○ 전문대 방사선과를 졸업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경력기간은 2000년 1/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지 5년동안의 방사선피폭기록이 식약청에 보고되어 있으며, 편입학하여 4년제 대학 졸업일자가 2004.2.28일입니다. 2006년 3월부터 3년동안 방사선학과에서 전임강사로 근무중이며 학교임용 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및 신고 받았음) 식품의약청 방사선안전과에서 개인피폭선량계는 교육기관의 경우 착용하지않아도 무방하기에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학력을 갖추고 실무경력을 확보한 후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원자력면허시험을 관리하는 면허시험실에서는 대학교 전임강사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 현재까지 개인피폭

선량계에 의한 식약청의 월별선량기록확인서가 없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수 없다라고 과기부고시에 나온 규정에 의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시켰습니다.

○ 방사선피폭경력에 대한 실무담당하는 곳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 식품의약품안청청으로 이원화되있기에 식약청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방사선에 종사하는자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면허시험에 응시할때 실무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30년간 개인피폭기간이 있는 종사자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응시를 위해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고 관련 면허시험을 본다고 가정시에 학력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실무경력이 전무한 관련학과(원자력공학과나 방사선학과) 4년제 재학생의 교육훈련6주를 실무경력 1년으로 간주하는데 이들 학생들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적으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7. [방사선관리과]

○ 시험을 1년동안 힘들게 준비하신 귀하의 어려운 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귀하께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4년제 대학졸업 후 2004년 3월~2006년 2월까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2년을 종사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5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1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의 경력은 50%를 인정하므로 귀하의 경력은 1년이 인정됩니다.

○ 둘째,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자는 1년의 실무경력이 인정되지만 귀하의 전공이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무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 셋째, 귀하께서 언급하신 2006년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의 경력포함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신고” 관련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75호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식약청에서 우리부로 귀하의 공식적인 실무경력 통보여부도 검토하였으나, 귀하께

서는 개인피폭선량기록이 없으므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에 대한 궁금사항 문의

질의

○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중에 빈운반용기의 운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 제113조 (빈 운반용기 운반)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의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용기로 운반할 수 있다.

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
2.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 위의 내용 중 빈운반용기를 운반할때의 제한 사항입니다. 내용의 제목 중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의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용기로 운반할 수 있다' 라는 말 중에

○ "L형 운반용기로 운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빈 운반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반 용기를 다시 L형 운반용기에 넣어서 운반 해야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A형이나 C형운반 용기를 빈용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L형운반용기로 보고 운반을 한다는 말인지 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L형 빈 운반용기를 운반할때 내부오염도에 대해 총방사능량을 구해서 서류에 첨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건(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것만 만족하면 총방사능량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내용물도 없는데 총방사능량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1. [방사선관리과]

1)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빈 운반용기 운반)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그 자체가 L형 운반용기로 간주되어 운반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9호) 제22조(운반용기의 일반기준) 및 제23조(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3) L형 운반용기로 운반이 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교과부고시 제2008-69호 제23조의 표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빈 운반용기에 방사성내용물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는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또는 측정 방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열화상진단용역이 비파괴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질의

○ 한국전력에서는 매년 열화상진단용역을 발주하여 한전 배전선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불량설비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는데,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로부터 관련법에 의거 협회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토록 협조공문이 접수되어,

※ 관련법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 담당자 : 백민호(02-587-4311) ☞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3. 한국비파검사진흥협회의 공문의 합법여부를 파악코자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 [방사선관리과]

○ 협회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협회의 설립)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인가한 협회로서(첨부 설립인가서 참조바랍니다) 동법률 제2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의 등록, 검사자의 교육훈련 등을 우리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협회 명의의 공문은 합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관한 질문

질의

○ IAEA “안전조치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와 이를 보완 대체하는 “추가의정서”(2004년 2월 19일 발효) 간의 해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는 ‘핵물질의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의 이용’(non- proscribed military activity)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가의정서의 규정과 상치(conflict)되어 추가의정서 제1조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의정서의 규정들은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존 안전조치협정 제14조를 따르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non-proscribed military activity의 한 형태인 naval propulsion reactor(NPR)가 추가의정서 제18조 a)의 원자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참고로 동일한 내용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 군축비확산과’에 문의한 결과, “말씀하신대로 추가의정서는 안전조치협정을 보완, 대체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추가의정서와 안전조치협정이 상치될 경우 추가의정서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naval propulsion reactor 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또는 원자력통제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란 답변을 얻어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5. [원자력통제팀]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핵물질은 안전조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조치협정 제37조에서 국내 면제 총량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NPR에 사용하는 핵물질의 농축도 및 양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그리고 AP는 기본적으로 협정의 정량적 운용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성적 접근 방안이므로 설령 NPR 핵물질을 안전조치 면제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IAEA는 이의 신고된 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 파악할 권한을 가집니다.

전 문 대 학

3년제 학과에서 2년제로 개편된 학과

질의

○ 3년제에서 2년제로 학과가 개편되어 2008학년도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대학 학칙에는 정당한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개편 학과소속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전문대학정책과]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바뀌기 전에 3년제 학과에 다니던 학생이 군입대 및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경우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아야 하기에 복학생의 관리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개편하기 전에 교내 구성원은 물론 휴학생 등에게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복학생에 대한 관리 및 대책과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학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칙에 2년제학과로의 개편에 따른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량강화사업 주체에 관한 질의

질의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훈령(이하 전문대학 훈령) 제25조(사업비 계정관리)와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훈령(이하 대학훈령) 제26조(사업비 계정관리)를 보면 대학훈령의 경우,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주체는 학교가 됨으로서 업무 절차나,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전문대학훈령의 경우, 역량 강화사업 주체는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으로 되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이 대학에 비해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는 현실입니다.

○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왜 역량강화 사업의 주체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9.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은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이 높은 전문 직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4년제 대학에 비해 산학협력 활성화가 더

욱 중요하고, 산학협력 총괄 추진체로서의 산학협력단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해당 전문대학 총장님의 책임하에 산학협력단(반드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함) 회계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업무절차나 시스템은 해당 대학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전문대학 관련 재정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가대학 확인 방법

질의

○ 교과부 인가대학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0. [전문대학정책과]

○ 해당 대학의 등록여부는 http://www.kcce.or.kr/(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검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인가 여부

질의

○ 철도간호전문대학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이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대학이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폐교된 학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1. [전문대학정책과]

○ 질의하신 철도간호전문대학은 1979년 당시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전문대학으로 1984년도에 폐교되었으며, 한국철도대학에서 학적부를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의 인사행정에 관한 문의

질의

○ 도서관, 생활관(기숙사) 등과 같은 부속기관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급 이상의 교원이 겸보하여 왔습니다. 생활관장의 보직에 부교수급에 해당하는 4급 일반사무직원을 임명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전문대학정책과]

○ 생활관장의 보직에 부교수급에 해당하는 4급 일반직원을 임명할 경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귀 대학 정관 등 관련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학운영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집중수업에 대하여 질의

질의

○ 대학의 과목 중 스키과목(이론1시간, 실습2시간 : 3학점)은 눈이 있는 겨울에 하여야 하는 특성상 이론시간은 학기 중에 1~5주 수업을 하고 실습시간은 방학 중에 3박4일로 6~16주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3.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의 수업운영 방법 등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수업운영 및 성적관리 방법 등은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과목 등과 같은 특정교과에서 집중강좌 개설이 꼭 필요한 강좌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교육관련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학점인정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 또한 집중수업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많은 수업을 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중수업을 개설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교육과정 운영상 최소한도 내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대학평의원 관련 질문

질의

○ 학교법인 정관에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교원, 직원 평의원 임기는 2년이며, 조교는 그 임기동안, 학생평의원 임기는 재적기간 중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총장이 위촉한 평의원에 대하여 임기가 남은 평의원을 총장이 해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4.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0조의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의원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학장이 해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 등 객관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정관이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체 위탁생 등록금 질의

질의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생은 일반 학생보다 등록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얼마나 적게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4.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비부담은 당해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위탁업체의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의 하향 조정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해당 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 부서나 등록금 책정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이사 임기에 관련한 질문

질의

○ 학장의 법인이사 임기가 200X년 6월 7일이며 학장의 학교임기가 200X년 8월 31일입니다. 법인정관에 학장은 당연직 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학장이 법인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할 경우 8월 31일까지 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2. 9.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제20조)에 의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본 건의 경우 정관에 학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0X년 6월 7일까지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였으므로 이사의 임기는 '0X년 6월 7일까지로 판단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학장임기 기간인 8월 31일까지 연장할 경우 재의결 후 관할청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수전공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전문대학에서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가 가능한가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으면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9. [전문대학정책과]

○ 복수전공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학생의 전공이수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전공이수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수업연한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의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감사의 법적 책임 및 사임코자 할 때의 절차

질의

○ 사립대학(전문대)의 학교법인 임원중 감사의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는 어떤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지요?

○ 감사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감사의 직무입니다.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감사는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사립학교법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조)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15조제4항)

○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는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58조2(직위의해제)에 관한 건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제58조의2(직위의해제)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면권자인 이사장이 단독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지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위해 이사회 의결이 요구된다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이사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인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과 학교법인 정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의 각호에 대한 판단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이사장 단독으로 가능할 것이나,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직위해제의 경우도 임면의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단독으로 상반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정관에 관한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 정관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에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는 "부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법과 정관 중 어느 법을 우선하여 결정해야 되는지요?
- 정관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를 사립학교법 보다 우선 적용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직위해제 여부가 가능한지요?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 여부가 가능한지요?

○ 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있는 안건과 다른 별개의 안건에 대해 이미 요청되어 있는 안건에 우선하여 이사장 직권으로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 학장이 위촉한 대학평의회 의원을 경미한 사안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장이 해촉할 수 있는지요?

○ 대학정관 제44조(임면)⑤대학 교육기관의 부학장, 교목실장, 대외협력실장, 학사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위 보직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보직교수를 보할 경우 이사장 직권으로 가능한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학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와 직위해제를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법인에 접수되어 있을 경우 학장이 제청한 보직인선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0. [전문대학정책과]

○ 학교법인 정관 제49조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임면권자가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권과 당해 교원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교원 직위해제를 비롯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학장이 위촉한 대학평의원회 의원의 해촉은 법인 정관이나 대학평의원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이사회 의결 여부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 등에 이사회 의결사항 규정이 별도로 없을 경우 이사장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학장 직위해제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법인에 접수되어 있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까지 학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립학교의 장(대학) 징계처분 관련 문의

질의

○ 사립학교의 장(대학)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장을 징계처분함에 있어 당해 학교에 설치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있는가요?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립학교의 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즉 파면,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23.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교원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는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자격

질의

○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자격 중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5인 미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의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조합명의로 지원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인택시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조합명의로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지원 자격이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위탁교육의 경우,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대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서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자격이 있는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산업체로 정하고 있으나,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 명의로 지원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대학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외에 실제 재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대학의 장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체위탁교육생과 일반학생의 차이점은?

질의

○ 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확인서 제출을 요구 하는 바, 일반야간학생과 차이점 및 혜택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9.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육성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체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대학과 위탁교육 계약에 의거 별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대학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장, 교육과정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계속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진심사에 대해서 문의

질의

○ 저희 공립대학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 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이고, 승진 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대상교원의 임기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올해 9월 2일 날자의 저희 대학 교학과 공문에서는 9월 16일 까지 임용 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승진 임용 심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 교학과장은 승진불가라는 소식을 통보하였습니다.

○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규정을 잘 지켰고, 연구실적이나 교내외 봉사활동 등 현행 규정에 따른 업적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6. [전문대학정책과]

○ 교원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진심사와 관련해서 문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립대학 교원중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55조 참조))

사전예고 없는 교수해임

질의

○ 3월 2일자로 1학기가 개강되어 2주차의 강의가 진행 중이었고, 3월 10일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3월 9일자로 해임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3월 10일 받았습니다. 학기 강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3. 20. [전문대학정책과]

○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해당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더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심화 과정지원시 근무기간 산정

질의

○ 올해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전공심화과정을 하려고 살펴보니 산업체 경력이 1년이 있어야 할 수가 있더군요 그런데 원서 접수 마감날까지 1년이 되어야한다는 대학이 있고 2월말까지 1년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이 있습니다. 입학 전까지 경력1년 채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4.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 1년 이상의 근무기간 산정은 입학전까지 기간을 적용되며, 입학원서 제출시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학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경력 및 관련 증빙자료로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학생 입학관련 질의

질의

○ 사립전문대학에서 국내 학생 부족으로 외국의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유학생을 모집하다보니 국내 학생들보다 4~5주 정도 늦게 입학하게 됩니다. 4~5주의 수업결손을 학기 중 보강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16주를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9. [전문대학정책과]

○ 2010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하면, 순수외국인인 경우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9월 입학 가능) 학생 선발은 교육관련법령(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포함)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사증 발급이나 입국 후 수강신청 등의 일정을 감안한 모집을 하여 외국학생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임원의 선출 방법 문의

질의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아들이 추천되어 후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해당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4. [전문대학정책과]

○ 임기 만료 임원의 후임으로 자신이 연임되는 이사회 안건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참여할 수 없으나 후임이사가 단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해 제척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라 이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인 재산의 범위

질의

○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예컨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계장치, 비품 등도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 건물 등 등기.등록된 재산을 의미하는지)와 제28조에서 말

하는 “기본재산”의 범위 어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재분류 되고,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의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의 기본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동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의 처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등이 해당되고, 보통재산은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인 법인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재산인 학교용 재산이 있습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장치, 비품 등의 재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보통재산으로서 학교에 소속되는 학교용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 모두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공심화과정 개선에 관한 건 문의

질의

○ 현재 인가받은 학교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4년제 학사학위를 전문대에서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입사지원을 하기위해 기업체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을 하다보면, 제가 다니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사 학위과정이지만 학교가 전문대학 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2,3년 대학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과를 4년제로 구분하여 표기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3.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동등자격)을 졸업한 재직 경력자의 계속교육 활성화하여 실무 지식/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제도로서,

전문대 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의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200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후, 전문대학의 신청/인가를 통해 2008년도부터 운영되어 올해 첫 졸업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이 단순한 전공심화과정의 홍보/개선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교육/사회적/문화적 인식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첫 번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전문대학은,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의 자격요건에 (4년제 대학 졸업과 마찬가지로) 동 과정이 반영되도록 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직원들의 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 과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서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전문대학에서 입학생 유치를 위해 '무시험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전문대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등등자격)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후 학사학위로 수여하고, 전문학사과정과 합쳐진 과정이 아닌 별도의 과정으로 '4년제 학사학위'라는 명칭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세번 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에서 구분하여 표기하는 제안에 대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서, 재직자의 심화교육을 동 제도 운영은 전문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재학생, 대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동 제도 운영의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 대학 설립 절차 및 시설물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

질의

○ 골프 전문대학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 절차 및 건설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전문대학정책과]

○ 홈페이지〉학생〉대학생〉대학·전문대학원 정보〉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 인가 신청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질의하신 골프장 설립시 인.허가 절차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므로 학교설립과 별개로 보아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 설립시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 지원 자격

질의

○ 저는 전문대학 2학년 재학중으로 전공 심화과정 입학을 하고 싶은데 입학조건이 궁금합니다. 이 자격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 [전문대학정책과]

○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 여기에서 "산업체" 인정기준은 아래의 범위 안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산업체 재직여부는 4대 보험 관련 서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로 증명해야 하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업체 인정 기준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②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신문사 등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⑧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⑨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

○ 발표하기를 입학정원내 정원조정 기준도 편제정원으로 할 예정이고, 산업체도 적은수 기준인데 저희학교는 재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많은수기준)으로 맞혀야 되어서 혼동이 생깁니다.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확보율 기준은 여전히 재학생과 편제정원중 큰수 기준인지?
2. 그러면 대학전체 전임교원 확보율도 당연히 큰수 기준으로 맞혀야 되는건지? 혹시 변경을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전문대학정책과]

○ 전공심화과정에 적용되는 전임교원확보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 [별표 2] 의 규정에 따라 재학생과 편제정원중 많은 수를 적용합니다.

○ 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도 마찬가지로 재학생과 편제정원중 많은 수를 적용합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중이며 동 제도의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대학과 고교 연계교육관련 문의

질의

○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위탁생 연계 가능 여부와 기존 실업계고등학교 연계교육과정 내에 인문계직업교육과정 위탁생을 포함 시킬 수 없다면 별도의 위탁교육장과 협약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우선선발이나 학점인정 장학금 혜택 등을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5. [전문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학사의 영문명

질의

○ 3년제 과정을 졸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학사를 줍니다. 국내에서야 수업년한의 차이가 있으니까 전문학사와 학사로 나눈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겠지만 외국에 제출하는 영문학위명을 굳이 학사에 준하는 이라는 의미의 associate bachelor degree 라고 쓸 필요가 있는가해서입니다.

○ 그리고 전문대학의 영문명이 college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bachelor학위를 줘야되는거 아닌가싶네요. 우리나라에서 구별을 위해 전문학사, 학사 나뉜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외국대학의 사례에 맞춰서 제출할 영문명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6.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학사명의 영문 명칭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년제~6년제의 학사학위를 bachelor's degree로 칭함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와 구별되는 전문학사학위를 bachelor's degree로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일제수업 및 강의시간 선택제 개념

질의

○ 전일제 수업의 개념은 무엇이며, 고등교육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강의시간 선택제의 개념-예를 들어 주간 모집만 있는 000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하여, 실제 운영은 강의시간 선택제를 활용하여 주간 및 야간의 별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7. [전문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에 전일제 수업에 대한 용어는 없으나,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 야간, 방송통신, 현장실습 수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간 모집단위는 학생의 수업이 대부분이 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집단위를 의미하므로 주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을 별도반을 편성하여 전체의 교과목을 야간으로 수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관련 법령과 규정내에서 야간 모집단위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규학기와 다학기 혼합 운영 문의

질의

○ 일부학과에서 정규학기와 다학기를 혼합운영 가능 여부와 가능할 경우 수업주수 및 강의시간 근거는 무엇인지? 수업주수는 상관없이 15주 수업시간만 충족되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3. [전문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의 학기는 2학기 내지 4학기 범위 내에서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목적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관련 법령 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수업일수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며,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하여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력인정 가능 여부

질의

○ 초급대학을 76년에 졸업한 사람이 전문학사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 [전문대학정책과]

○ 초급대학 졸업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사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3년제 전문대 2년 수료)

질의

○ 전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4학기 즉 2학년을 수료하고 현재 자격증 준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에 심화과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는 지원이 되지만 3년제 대학 2학년 수료는 불가라고 하더군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전문대학정책과]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산업체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라는 것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3년제 대학에서 2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입학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산업체 근무경력)

질의

○ 저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왔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산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더라구요.

○ 올해 병설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1년단위가 아니라 계약제로 275일을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경우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나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기가 3월에 시작되서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거 같기는 하지만 궁금해서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 근무경력의 요건은 4대 보험관련 서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재직기간은 1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총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원자격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인턴쉽 관련 질문

질의

○ 미국으로 1년동안 인턴쉽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1년 동안 미국으로 보내서 6개월 정도는 무급으로 일을 배우고 나머지 6개월은 유급 인턴쉽인지?

회신 회신일 : 2008. 11. 13. [전문대학정책과]

○ 해외인턴쉽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당대학에서 일정조건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대학협의회로 어떤 국가로 어떤 사업체로 인턴십을 수행할지 계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대학협의회에서 심사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대학에서 인턴십에 관한 계획이 없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우선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은 1학기 동안 해외인턴십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공관련 학점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전공과 인턴십 프로그램내용이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자격을 보면, 재학생으로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 40학점이상 취득, 성적 B°이상, 파견대상국 소정의 어학능력자였습니다. 2006년도 관련자료는 한국전문대학협의회(www.kcce.or.kr) -〉 주요사업(해외인턴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관련 문의

질의

○ 전문대학 현장실습이 꼭해야하는 의무조항인지요? 현장실습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학사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현장실습을 대체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예: 현장견학,전공과목과 실습 등)

회신 회신일 : 2008. 7.18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의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느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현장실습의 운영방법 및 운영여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법 제7조와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참고하여 각 대학의 학칙에 규정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해외인턴쉽에 대한 질문

질의

○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 인턴쉽에 대한 정확한 모집공고와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9. [전문대학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선발·지원하는 「2009년도 해외인턴십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해외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감각과 실무능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 국·내외 양질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문대학생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4년제 대학생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문의하신 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적 B°이상 취득한 학생 중 파견국 언어능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해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일반공지 〉 '해외인턴십'으로 검색하시면 공고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일반대전환에 따른 국고지원금

질의

○ 우리대학은 산업대학교육정책에 따른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느냐 또는 산업대학으로 그대로 존속하느냐를 가지고 몇일 뒤에 논의를 하게됩니다.

○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산업대학으로 있을 때와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때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알기에는 국고지원금이 산업대학보다 일반대학이 교수 또는 학생 1인당 대비하여 약 30% 정도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우리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현재보다 좀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예산담당관]

○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면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원조정에 따른 재정배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운영비는 학생수, 교직원수, 시설면적, 시설보유율 및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일반대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액 차이는 정량지표(교원수↑, 학생수↓) 증감과 지원단가로 결정됩니다.

○ 일반대 설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원수를 늘릴 경우 지원액이 늘어나고, 학생수를 줄일 경우 지원액은 감소하므로 교원수와 학생수 증감을 적정하게 조합할 경우 지원액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 다만 정책유도 또는 정책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지원대상, 대학의 역량 등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실 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 강의실 내부 붙박이 책꽂이와 붙박이 화단 및 창문 밑의 인테리어 턱 등은 강의실 면적에 산정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8. [교육시설지원팀]

○ 강의실(실) 면적 산정기준은 구조체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의 가로, 세로 거리를 곱하여 산정한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벽면에 부착된 책꽂이 및 붙박이 등은 실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공건물 건설공사 관련 자재공급사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건

질의

○ 공공기관(대학생활관 건설공사)관련 사업추진 방식이 BTL방식입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도서에 냉난방기기(EHP)가 외산 '○○○'제품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사유: 장비공급사인 ○○○ 내부사정에 의한 납품일정 (평상시 1개월 → 4개월)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 문의1. 해결 대안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부득이 설계변경 반영하여도 감독관 입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 문의2. 공공기관에서 장비설치 시 국산제품으로 사용이 바람직한데 고환율 이전에는 장비가격이(외산&국산) 5%정도 차이가 났지만 현재 엔화상승으로 2배 가까이 가격차이가 남과 설계사와 감리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국산제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11. 27. [교육시설지원팀]

○ BTL사업은 사업시행자(spc)와 주무관청간 기체결된 협약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자재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설계도서에 기 반영된 특정자재에 관한 사항은 사업제안자와 주무관청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협약 당시와 현재 공사시점 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자재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합당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학교 부지면적 변경결정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면적기준적용여부

질의

○ 질의배경

- 본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금회 학교시설 부지를 확장(당초 128,285㎡→변경134,415㎡)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교사기준면적의 2배이상의 교지면적(138,702㎡)을 확보해야한다는 사유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제15127호 1996.7.26)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의거 이영 시행당시(1996년이후)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영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는 바, 1971년 설립인가된 본 대학의 경우는 교지면적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합니다.

○ 질의내용 1

- 법률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된 기존 대학의 면적변경에 있어서 현행 교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교지면적기준은 새로이 대학을 설립할 때만 적용되는것인지

○ 질의내용 2

- 또한, 2005년 변경된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제19095호, 2005.10.25)제4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기존대학의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전의 경과규정 부칙(제15127호 1996.7.26) 제3조는 유지가 되는건지, 교지면적은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4.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교지의 기준면적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4에 의거하여 학생정원 1000명 이상인 경우 교사기준면적 2배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학교설립인가기준이나, 동법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의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여부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학교)의 장애요인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서 교육용 기본용재산확보등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교지의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부족한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하기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임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컨벤션센터 건축 관련

질의

○ 컨벤션센타라고 하면 회의를 하면서 숙박을 겸하는 기능이 있는데 건축물중 회의실 면적이 많으면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컨벤션센타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할수 있습니다.

○ 컨벤션센타를 대학내에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를 위한 회의실로 이용(주로 학생이 아닌 이용객)하고, 건벤션센터 건물내 대학 기숙사를 두어 센터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제공하는, 컨벤션센터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시설의 구분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학생기숙사 및 교직원을 위한 숙소는 설치가 가능하나, 외부 이용객을 위한 컨벤션(기숙사)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내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의하면 대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고등교육법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0. [교육시설지원팀]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상 대학 교지내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 교지내 있는 모든시설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교육 및 연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그 자체도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에서 구분하고 있는, 교육용기본시설인 학생회관, 교수회관 등의 학교구성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 시설로 구분하는 것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별표1에서 교육시설의 그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와는 다른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학교 교지내에 있는 복지차원의 기숙사, 학생회관, 교수회관 소비조합 매점 이발소, 보건진료소 등등은 교육 및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교사시설의 범위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및 부속병원)로 결정(신규)함에 있어, 사학재단(기독교)의 대학교(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교회:학생 및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별표2]의 교사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5. [교육시설지원팀]

○ 종교시설이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의 교사시설에는 부합되지 않음으로 교사시설에 포함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시설내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문의

질의

○ 대학 교내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50타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학교용지내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규정등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용지는 학교용지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30조를 보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별표 제2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교육지원시설의 범주에 “체육관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은 체육수업에 필요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에

서도 체육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학교부지로 결정된 부지내에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시설중 지원시설에 대한 질의

질의

○ 사학재단(기독교)으로서 대학부지내 문화집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연면적:5,194.2㎡, 지상6층)을 건축하여 그중 2개층(5,6층 면적:618.65㎡-순수교회면적)을 일요일은 교회(대학교회)로 사용하고 월요일~토요일까지는 공연 및 집회장소로 대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대학시설에 부합하는 지원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3.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부지내 문화집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6층)중 순수교회 면적 618.65제곱미터(5층과6층)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교사시설에는 부합되지 않음으로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부지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질의

○ 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부지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실시 계획인가 또는 용도변경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된다, 안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 질의의 요지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학교시설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00시의 경우 2004년, 2008년 건축허가시에는 교육연구시설로 허가 및 도시계획 인가를 내어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준공후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인가(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처리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3. [교육시설지원팀]

○ 먼저 대학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구내에 있는 학생식당, 교수식당, 학생기숙사에 있는 식당을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얻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득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며, 건물의 용도와 국토계획법과는 별개 사안으로보아야 하며, 더군다나 대학구내에 있는 식당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교사시설중 교육기본시설에 포함되어 대학의 교지, 교사 보유율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건축물의 일부 면적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문제이며,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대학 구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구내에 있는 학교 식당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학교 식당의 운영주체가 달라진다고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법 체계 운영상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에 문화집회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

○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지정된 부지에 문화집회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문화및집회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동조 각호의 법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과학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학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교지 내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업자가 학교를 건설하여 정부에 임대하는 사업(BTL)에 예산낭비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

○ 학교건설과 이를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BTL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업이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또한 국민들의 세금도 일부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문을 두들겨 봅니다. 아무리 민간업체가 관리한다해도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민들 세금이 투입되는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7. [교육시설지원팀]

○ 학교시설 BTL사업이란 민간자본을 학교시설사업에 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임대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건축비를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몫이고, 청소 및 경비는 운영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운영사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사업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시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마다 청소 및 경비 등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업무는 교육청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세금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평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부에서는 교육청에 더욱더 철저히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BTL 물가변동 사후정산 해석

질의

1. 기협약된 BTL 사업에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35호에 따라 물가변동방식변경설명회에서 “기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50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관청은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함”의 문구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약변경

을 추진하여 협약변경을 체결한다면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35호 따라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분에서 50%만 분담하여 계약변경을 합니다. 변경계약된 금액(주무관청이 분담한 50%)만 시공자(하수급인포함)에게 귀속되면 되는지 협약변경되면 사업시행자도 무조건 50%로 분담하여 시공자(하수급인포함)에게 귀속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BTL사업은 주무관청이 분담한 50% 물가변동분만 시공자(하수급인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면된다고 하고 어떤 BTL사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50, 즉 100% 물가변동분을 시공자(하수급인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변경협약체결한다면 하수급인에게 어떻게 필요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BTL사업은 변경협약체결하면 변경협약체결이후에 계약된 하수급인에게만 물가변동분을 적용해 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어떤 BTL사업은 변경협약체결하면 변경협약체결과 상관없이 기계약된 하수급인에게도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8. [교육시설지원팀]

1. BTL은 사업시행자가 위험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재정부고시(5.20)에 따라 기 추진중인 사업의 물가변동분 중 주무관청 부담인 50%만 부담하도록 고시하였고 시행사와 주무관청은 물가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협약변경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가정산은 건설사와 사업시행자와 협약 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하수급자에게 최소한 주무관청에서 지급한 물가정산금(50%)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수급인게 정산금액을 통지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서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한 사실 및 지급이 이루어 졌는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BTL사업 물가상승분 반영관련 GDP 디플레이터지수 적용관련 질의

질의

○ 당 현장은 2007년 11월에 착공되어 2010년 12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 BTL현장입니다. 기

획재정부 공고 제2008-35호(2008.05.20) 및 교육시설지원과-1331(2008.06.30)에 근거하여 2008년 4분기까지 BTL사업 물가상승분을 주무관청(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2009년 1분기 물가상승분을 신청을 위해서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검색해본 결과 기준이 2000년=100에서 2005=100으로 변경되어 지수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질문1. 2009년 1분기부터의 물가상승분 신청시 새로 산정된 2005=100기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기존에 승인받은 2008년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새로 바뀐 2005=100기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재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7. [교육시설지원팀]

○ GDP디플레이터 적용 기준년도는 2005년을 기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2008년도에 준공된 경우는 2000년도 기준이며, 2009년이후에 준공되는 것은 2005년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BTL사업중 퇴직공제부금초과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 BTL사업관련하여 퇴직공제부금이 당초 적용요율이 건축공사 1.99%, 토목공사 1.90%로 적용되어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8년 1월 14일 이후공사 적용요율 2.30%로 적용 “단 2007.12.31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 할지라도, 2008.1.1이후 사업이 개시되는 (실제 착공되는)건설공사는 4,100원 적용할 것” 이런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7. [교육시설지원팀]

○ BTL사업의 기본 취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간인의 창의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은 당초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서에 적합한 건물을 인수하고, 민간인에게는 관리운영권을 주어 임대료 및 운영비를 협약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계내역 등 모든 것은 운영사(SPC)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퇴직공제부금 설계변

경은 1차적으로 운영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주무관청과도 협의가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금 내용의 상승(3100원에서 4100원)에 따른 것이라면 시공사, 운영사,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TO(민자유치)사업 관련 문의

질의

○ 대학에서 부지내에 학생편의시설(기숙사)을 BTO로 유치하여 준공후에 대학소속 재학생 외 동일부지내에 있는 동일법인소속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및 외부인도 사용료를 받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5. 8. [교육시설지원팀]

○ 우선 결론적인 답변으로, 대학 기숙사는 사업추진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다소 상이합니다.

1) 사립대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투법에 따른 사업은 아닙니다. 즉 사립재단과 민간자본간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BTO로 유치한다고 해서 기존 기숙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2) 국립대학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으로, 고등교육법의 대학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방식으로 추진됨에 상관없이 대학 기숙사로서의 역할을 함이 당연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법인화가 사립과 같은 의미인지

질의

○ 국립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 국립 서울대학교는 사립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6 [대학선진화과]

○ 현재 정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명에서도 보이듯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될지라도 국립대학

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번 서울대 법인화의 추진의 목적은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달리 서울대학교는 하나의 법인체로서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이 될지라도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기초 학문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 법률(안)은 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관련 건

질의

○ 국립대학교가 법인화 된다는게 어떤겁니까.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법인화에 따라 직업이 공무원에서 다른직업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국립대학과 특수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특수법인으로 인한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5.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둔 정부조직의 하나로서 조직, 인사, 예산운용 등에 있어 매우 경직적이어서 대학이 자체 발전목표를 세우고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국립대학의 운영체제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책임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될 경우 주요 변경사항은 의결기구로서 대학에 이사회 설치, 심의기구로서 교육연구위원회(교원)와 재무경영협의회(학내외 인사) 설치·운영, 소관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고, 정부는 총액으로 예산지원하며, 예산의 편성·결산은 법인이 담당하는 등 재산활용 및 회계측면에서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권 부여되며,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법인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며, 법인전환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을 적용하되, 공무원 연금수준 보장하고, 총·학장이 4년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하여 책무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학 법인화는 개별대학의 자율적

신청시 협의를 통해 입법작업을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선진화위원회 부실대학 처리 관련 문의

질의

○ 지난 5월 18일자 언론을 통해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6월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11월께 최종 부실 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부실대학이 다른 대학에 통폐합될 경우 현재 그 부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통폐합된 대학에서 동일한 전공학과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통폐합이아니고 부실대학만 폐교된다면 현재 그 부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7. 13. [대학선진화과]

○ 사립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개편,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통폐합 또는 폐교로 인해 특정 대학이 폐지될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들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하여 통합대학 또는 인근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영부실 대학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편입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퇴하려는 학생이 과거 받은 누리장학금을 환불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

○ 2006년 2학기부터 휴학중에 있는데 가정사정으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2006 년도1 학기 누리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학기 등록금중 장학금을 제한 나머지를 납입한바 있는데 제가 받았던 장학금 전액을 환불해야만 자퇴신청이 처리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때 미래의 퇴학이나 전과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학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조건이나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각종 장학금이 성격상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그 취지에 맞는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사후에 학생의 신분이 변경된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

수한다는 것은 장학금 취지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7. [대학선진화과]

○ 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제3항제1호 및 동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단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운영규정에 장학금 지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단자체운영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NURI사업 사업비관리매뉴얼 10. 장학금 다. 재학생 등록금 장학금의 경우에는 등록금 면제 및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등록 후 부득이한 휴학(군입대, 사고, 질병)의 경우에만 환수조치가 불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 NURI사업 사업비관리매뉴얼의 규정에 의해 등록 후 군입대, 사고, 질병 외의 사유로 휴학이나 자퇴 시 장학금 환수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만약 직전학기부터 새로운 학기까지 누리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때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미등록휴학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모든 장학금이 아닌 새학기에 받은 장학금만 해당됩니다. 또한 동서대학교 해당 사업단의 장학금에 관한 자체규정에서 자퇴 시 구체적인 장학금 환수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추가장학금의 경우에는 동매뉴얼 10. 장학금 라. 추가 장학금의 규정에 의해 NURI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3조를 준용하여 사업단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들은 NURI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이 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취지를 살려 사업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휴학 후 타 대학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대학에서 휴학을 하고, 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타 대학에 수시나 정시 지원 가능한가요? 또 합격한다면 입학 전에 한 곳을 포기하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대학자율화팀]

○ 우리부에서는 입학학기가 같은 두 대학 이상의 대학 학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입학학기가 다르므로 법령으로 이중학적 보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에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학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학과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대한 질의

질의

○ 우리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산업체 등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 : 등록금의 30%
- 계약 산업체가 부담하는 지원금 : 등록금의 30%
- 대학의 장학금 지원 : 등록금의 40%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진로직업교육과]

○ 대학이 장학금으로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이 감면되는 부분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만을 합산한 액수를 100%로 볼 때, 학생은 필요한 경비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7조 제6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학과 설치 관련 문의

질의

○ 정예영농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농촌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농산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영농법인 등에서는 졸업 후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재교육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졸업 후 농업인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3. 30. [진로직업교육과]

○ 계약학과는 산업체 수요에 의한 대학의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목적에 두고 도입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재교육형 및 채용조건형의 계약학과 설치등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등에 의거 설치에 적합한지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있어, 지자체 및 중앙부처 -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 대학이 3자계약형태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등의 범위(계약학과 운영요령 참조)에 속하지 않는 단체등과는 계약학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문의

질의

○ 저희대학의 특수대학원 중 한 곳에서 계약학과를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1. 특수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요?
2. 계약학과가 설치될 경우 입학정원은 정원외인지, 정원내인지 여부?
3. 입학정원에 제한이 있는지요?
4. 현재 우리대학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인데요, 이와 다르게 계약학과에 한해 수업연한을 2년이내로 단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진로직업교육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산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의 계약학과 경우 정원외로 모집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며, 학교규칙의 관리는 고등교육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록 정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만큼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설하여야 할 것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법시행령 제7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재교육형등 일 경우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교육과정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학칙을 마련하여 따름이 옳을 듯합니다.

지자체 관할지역내의 직장인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문의

질의

○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의 제5조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생략)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지자체 관할지역내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이 가능 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1. [진로직업교육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8조 1항 1호 및 2호에 의거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채용조건형), 국가, 지자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계약학과의 형태는

1. 지자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형이나, 지자체로의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로 운영
2. 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3자계약 형태로

   대학은 교육훈련을 담당, 지자체는 비용부담 담당, 산업체는 신규채용 및 산업체 소속직원 재교육 제공 담당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자체 육성산업과 관련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지원의향이 있는 경우 대학 - 지자

체 - 산업체 3자계약 형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학생모집) 관련 문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을 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경우 교육대상(학생) 선발에 공무원외 별정직공무원(예:국회의원보좌관)도 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계약학과 2009학년도 공무원반 구성 (공무원 20명 + 별정직공무원 5명)

회신 회신일 : 2008. 12. 2. [진로직업교육과]

○ 문의하신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학교간의 계약에 의해 실시됩니다. 학생 선발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학과 운영 시 제반경비 관련 문의

질의

○ 계약학과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에1항에 의하면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라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반경비라 함은 등록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10조 4항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가령, 등록금중 산업체에서 20%의 장학금과, 학생부담금 40%, 학교의 학비감면으로 40%로 책정할 경우 4항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생부담금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배사항에 해당되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6. [진로직업교육과]

○ 제반경비에 대한 해석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산업체에서 대학으로 계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 학생 납부 경비 상한기준에 대한 해석은 운영요령에 명시했듯이 대학에서 계약학과 운영

시 산정되는 전체 경비에서 학생 부담금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학교감면금은 제외하도록 하였기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에 관한 질의

질의

○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8일자로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 시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을 보면 대학과 산업체와의 거리를 동일광역지자체 또는 100㎞ 로 제한하고 수업방법을 출석수업50%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는 저희대학과 광역지자체가 다르고 학교와의 거리도 100㎞가 넘습니다. 수업방법도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을 각각 3분의1수준으로 배당하여 맞춤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 저희대학이 2008년 10월 20일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로 산업체와의 계약대로 2009년3월부터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9. [진로직업교육과]

○ 「계약학과 운영요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요령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의하여 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갱신이 필요한 때까지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산업체 위탁 관련 법률 문의

질의

○ ○○대학교에서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 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6. [진로직업교육과]

○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산업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

였습니다.

○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계약학과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재교육형과 채용조건형 두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재교육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에 재직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 채용조건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그리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시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할 수 없으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이 납입하는 금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학생은 경비의 1/2범위 이내에서, 산업체는 1/2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습니다.

대학도서관 개방관련 문의

질의

○ 지역 주민으로 대학도서관(열람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립대는 물론이고 국립대까지 지역주민, 타학교 학생 등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5. [학술진흥과]

○ 도서관을 포함한 대학의 운영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는 있으나 대학으로 하여금 특정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학에서 열람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였었으나 면학분위기 훼손, 보안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외부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재학생 다수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하게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 육성 사업의 개선방향?

질의

○ 교과부(과학재단)에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 육성 사업이 시행준비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국가경제 및 과학발전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학의 국내 체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정함으로써 정말 국내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석학을 초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구실에도 일년에 몇 개월 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 정말 실효성 있는 석학초빙이 이루어지려면 체류기간을 못 박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초빙된 석학이 한국에 있어야만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 언제든지 초빙한 석학이 외국에 있어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학술진흥과]

○ WCU 사업의 〈유형3 과제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의 석학 체류기간(비연속 체류가능)은 예산 낭비 방지, 국내 연구자 및 학생과의 대면 접촉을 통한 감화 교육, 실질적 학술 활동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2개월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의 한국어학과 설치된 대학 도서관에 한국어로 된 책 기증요청

질의

○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되어 버리는 책들, 국민들이 기증한 책들, 국가에서 예산을 부어 우수추천도서로 선정하여 사들인 시, 소설책들 중 남는 책들,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들이 잘 읽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책들 등, 어떤 책이든 다 좋습니다. 몇 십 권씩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또는 러시아 같은 나라에 있는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에게 한국어로 된 책들을 기증해 주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학술진흥과]

○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국내외 대학도서관에 직접 도서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RISS International'이라고 하여, 해외에서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학에

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후진국 대학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외교부 국제교류재단에서는 후진국에 대학도서관을 새로 건립해주거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대학조직 인정여부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대학 조직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30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문의

질의

○ 국공립대학교에서 법인으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국공립대학교 국가기관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6.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지만, 대학의 하부기구입니다.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학협력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게 되므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계약에 있어서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국가기관 인정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 보아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에 의하여 기관장의 권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국립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용역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과거 질의답변을 보면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나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산자부(현재 지식경제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당해 질의응답을 근거로 계약 상대자를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으나 착수와 준공 청구 및 계산서발급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올립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국가기관으로 보아 수의 계약이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1.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학협력단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이 외부기업 및 기관과 공동출자하여 기업설립이 가능한지?

질의

○ 학교기업 설립시 외부기관(기업)과 대학교가 공동출자 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

○ 학교기업을 설립한 후 학교기업에서 현금출자가 가능한지

○ 산학협력단에서 현금출자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 [학연산지원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 활용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등을 하는 부서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로, 외부기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 참고로, 대학-기업-지자체 등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장의 관계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문의

질의

○ 산학협력단 및 학교의 회계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있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자금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학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종종 산학협력단장을 학장이 겸직을 하거나 산학 협력단의 자금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결제를 득하여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이 산학협력단의 자금집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단장의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일종의 면책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회계 및 산단회계, 법인회계 등의 관리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 및 회계는 별도 관리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규칙상에는 겸직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면에서는 회계관리의 분리가 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학연산지원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에 의거 학교규칙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장을 둘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할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문의

질의

○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언급된 것 외에도 일반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 업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은 동 법률의 목적 및 업무범위 등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대학의 학교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수익 처리되어야지 산학협력단회계로 수익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용업의 학교기업 설립가능여부 문의 및 절차 문의

질의

○ 학교기업의 설립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용업의 경우 "공중위생법"과 관련하여 신청자(사장)의 이미용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기업의 장은 대학의 총장인데 총장님이 이미용면허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설립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 [학연산지원과]

○ 학교기업설치운영에관한 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학의 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설립 업종과 관련하여 면허, 자격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설립 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논문 제출 방법 문의

질의

○ 학위논문이 아닌 일반논문을 준비중입니다. 논문 분야는 '컴퓨터 공학'입니다. 작성 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 기관에 제출하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 [인문사회연구과]

○ 일반논문 등재와 관련하여, 현재 학술논문은 해당분야의 각 학술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사.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은 각기 다르므로 등재코자하는 학술지를 운영하는 학술협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한국연구재단(www.nrf.go.kr / 02-3460-5553)에서는 '학술지평가' 사업을 통해 선

정한 등재지 목록과 등재후보지(8개의 주제분야로 구분)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해당 분야에서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확인하고 연구자가 투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시효에 대한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의 훈령 제236호(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는 진실성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제①항에 따라 2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5년 이내 또는 5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7. [인문사회연구과]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성격 및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목적에 대한 이해 필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이 목적이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규정"등의 목적은 징계양정에 의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목적
  징계관련 규정 : 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에 의거 관련자를 징계함에 목적

○ 징계사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그 연구가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구가 "위조" "변조" "표절"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며 목적입니다.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된 사유를 징계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징계사유 발생한 날”의 적용 및 “연구부정행위”를 징계사유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의 5년시효는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날”로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날”은 “표절 행위를 실지로 행한 날” 또는 “해당 논문을 투고한 날”등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의거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판 등을 통해 유죄가 입증된 날” 즉 당사자의 행위가 징계양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말은 “연구부정행위” 결과가 징계사유에 반드시 해당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거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요약

- 시효에 관한 쟁점을 다시 정리하면, 진실성검증의 목적이 징계를 위한 증거가 아니며, 징계는 진실성 검증과는 전혀 별개의 원칙과 절차에 의해 처리되므로 진실성 검증의 시효가 징계요구의 시한과 일치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과, 징계와 관련하여서도 “연구부정행위가 저질러진 날”을 “징계사유”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국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징계”는 별도의 목적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를 “징계양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나 법과 절차에 의거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리 공결 처리 문의

질의

○ 생리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보여드려야 출석이 인정이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서를 마련해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

○ 교내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 의사가 없어 확인서를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산부인과에

가서 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회신 회신일 : 2008. 9. 26.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의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모집단위별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학적처리.관리 등은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여학생의 경우 생리 등의 사유로 수업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적처리를 하고 있으나, 최근 생리결석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각 대학에 따라 그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리결석을 사유로 인한 증명서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재학중인 대학에 학생회 등을 통하여 건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콩 로컬학교 재학시 학력인정 문의

질의

○ 현재 DELIA MEMORIAL SCHOOL에서 5학년을 졸업했고, 홍콩생활은 6년을 하고, secondary5학년에 졸업을 하고 홍콩로컬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6.7학년에서 대학 예비과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대학을 가길 원하는 학생입니다.

○ 만약 제가 한국으로 대학을 갈 경우 홍콩에서의 5학년 졸업이 한국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닐경우 한국으로 대학갈 경우 어떤 학습을 취득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일본인 경우는 졸업인정을 하고 토플과 토익점수만으로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홍콩로컬의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대학예비과정을 할 이유는 없는것같은데, 홍콩은 6.7학년을 거치면 대학학습은 3년이면 마침니다. 예전에는 5학년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간 학생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0.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학력인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하는 동등정도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중에서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또는 학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한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수할 경우 12학년 이상을 수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학력인정에 여부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입학예정 대학의 입학전형 및 대학교육협의회(02-6393-5233)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승계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

질의

○ 관련근거;

□ 국립학교 설치령 부칙

제3조(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승계되는 대학교에 각각 편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우리대학 학칙 (개정. 2007. 3.1) 부 칙

(경과조치) 1.국립학교설치령 개정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립의료원간호대학 규정을 적용하고,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 동일계열 학과(학부)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질의내용;

○ 2007년 3월 1일자로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을 승계하여 존속기간이 2009년 2월 28일까지 인데 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존속기간 이후(2009. 3. 1)에 편입학을 원할 경우 편입학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질의1)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존속기간 이전에 제적된 자를 존속기간 이후에 우리대학에 편입학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편입학 시킬 수 있다면 정원 외로 편입학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3) 편입학이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는?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대학지원과]

○ 국립학교설치령 부칙(제19902호) 제3조에 의거하여

○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승계되는 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존속기간 이전에 제적한 자를 존속기간 이후에 귀 대학에 편입 가능여부에 대해 상기 규정은 존속기간내에 재적생(재학생과 휴학생)이 존속기간내에 동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특례규정으로 존속기간 이전에 제적한 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9. 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 관련 문의

질의

○ 총 정원 범위내 정원 조정은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2008학년도)의 확보율 이상 유지

→ 위 경우(자체조정)에 4가지 확보율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09년도 까지인지, 편제가완성되는 '12학년도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야간→주간 전환시 '09학년도 야간학부(과)의 주간 개편시 교육여건(교사)은 편제완성년도인 '12학년도까지 개편전('09. 4. 1)의 확보율 이상 유지

→ 야간정원 주간전환의 경우 개편전 교사확보율(기준값) 이 정확히 08.4.1일자 인지 09.4.1일 인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7. [대학지원과]

〈총 정원 범위내 정원 조정〉

○ 총정원 범위내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의 경우는 편제정원 기준 (또는 재학생기준)으로 '08.4.1 현재 교원 확보율이 '09.4.1 확보율 이상 유지 (편제완성되는 '12년까지)

〈야간→주간 전환〉

○ 개편전 교사확보율('08.4.1)이상입니다.

'09. 10년 약학대학 수업 개설에 관한 문의

질의

○ 2011년부터 6년제 학부생을 받기 때문에 약대는 09학번, 10학번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9년에는 1학년 학생이 없고 2010년에는 1, 2학년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럼 학생이 없으므로 09,10년에는 1,2학년 수업은 개설되지 않습니까? 비록 다수는 아니더라도 군제대후 복학생, 편입생,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분명히 생길텐데요.

○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전국 약학대학 협의회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대학지원과]

○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2009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2011학년도에 약학대학 전공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 약학대학 협의회에서 발표 예정인 약학대학 전공과정 전형계획에서 선수과목, 지원자격, 자격시험 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공지될 것입니다.

○ 귀하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대학별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5년제 건축학과 문의

질의

○ 대부분의 대학교의 건축학과가 4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왜 변경되었나요?

○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수와 그중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알 수 있을까요?

○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건축학과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 향후 4년제 건축학과 대학들도 5년제 건축학과로 변경되어 의대처럼 건축학과는 5년제로 확정되어 지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 8.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 31조에 의거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며, 다만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문의하신 4년제 건축학과가 5년제로 변경 등은 학교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귀하가 원하시는 5년제 건축학과 현황 등의 자료는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국토해양부가 관할하고 있는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는 입법예고가 2008년 11월중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년제 약대 입학에 관한 질문

질의

○ 올해 약대가 6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대학입학은 약학과가 없는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을 마치고 약학대가 있는 대학으로 시험을 봐서 옮길 수 있는지요? 또 약대를 들어가기전 2년동안은 어떤전공 (어떤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6. [대학지원과]

○ 대학입학은 약학과가 없는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을 마치고 약학대가 있는 대학으로 시험을 봐서 옮길 수 있는지요?

=〉 네, 참고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인 학제를 '2+4' 형태로 도입하였습니다. 2009학년도부터는 약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학부)로 입학하여 대학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을 치룬 후, 그 성적 및 선수과목 이수 등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후 대학별 전형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 약대를 들어가기전 2년동안은 어떤 전공 (어떤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요?

=〉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에 입학하여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하면서 약학대학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학 전공대학 대상자 모집 시행계획이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검색 : 약학) 〉 '약대 학제개편에 따른 2010학년도 약학전공자 모집전형 개표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년제 약대에 관해 문의

질의

○ 필리핀에서 약대를 다니고 있다가 한국의 대학으로 편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약대가 6년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2년동안 기초 교양 과정을 들어야하고 PCAT 인가, 시험을 봐야한다던데 제가 여기서 약대를 2년 다니다가 PCAT 시험보고 한국 약대를 다시 들어 갈수도 있나요? 아니면 꼭 다른 학과여야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외국대학은 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설립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동 학력의 인정 여부 판단은 별도의 인정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대학)에서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상 인가 여부, 교육과정 내용, 수업연한, 학생의 학점이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년제 약대 진학 시험 관련

질의

○ 6년제 약대로 진학하기 위해서 실시될 예정인 peet or pcat 시험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 현재 약대가 있는 대학에서 09학번 신입생을 선발시 이후에 약대진학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09년도에 약대를 가지 않는 학생들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전 답변에서 시험과목은 약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약대에 질문을 하니 그 단체는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 시험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peet or pcat 시험에 공인영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인영어 준비를 했더니 나중에는 없어지면 괜한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11. [대학지원과]

○ 2011학년도에 약학대학 전공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 약학대학 협의회에서 발표 예정인 약학대학 전공과정 전형계획에서 선수과목, 지원자격, 자격시험 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공지될 것입니다. 참고로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 지원자격의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각 대학별 지원요건에 대하여는 대학별로 추후 사전 예고될 예정입니다.

○ 또한 6년제 약대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하여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2+4체제'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2009학년도에는 별도의 약대 신입생 선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상의 전형계획 발표가 약학대학 진학을 준비할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우리 부에서도 적정한 시점에 관련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교명 변경

질의

○ 통합으로 00**대학교로 바뀐다는 하는데 00대학교 이름으로 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7. [대학지원과]

○ 00대학교와 **대학이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성원으로 통합에 이르렀으나, 통합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교명이 정해지지 못해,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국립대학의 교명과 관련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00**대학교"라는 교명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 이에 통합된 00대학교의 교명을 "00**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향후 통합된 00대학교가 새로운 교명 하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절학기 활성화 요청

질의

○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심적부담감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며 정규학기에 받지 못했던 학점을 계절학기때 충족할수 있다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양위주의 편성으로 교수님들은 논문 등으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규학기에 비해 수입이 적어 탐탁해 하지 않으십니다.

○ 그래서 전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의무화해 전공에 한 학년에 한과목씩은 개설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편입생들은 대개 20학점까지 밖에 못들어 초과학기를 다녀야 할 처지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전공으로 편입하면 모를까 다른 전공으로 편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계절학기의 활성화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8.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1조의 의거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학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가 정하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계절학기 포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부가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등교육법 22조의 대학의 수업의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질의

○ 고등교육법 22조는 대학의 수업방법을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 · 야간수업 · 계절수업 ·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사이버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대학원 석사 과정을 온라인 사이버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많은 대학들이 사이버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학생을 사이버 대학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대학이나 4년제 일반대학에서 일부 학과의 전체교과목을 고등교육법 22조에 나오는 방송통신수업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0.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는 다양한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학사운영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의미는?

질의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 대학이라 함은 국내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외대학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30.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고등교육법 제2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학교는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자국내의 교육기관 운영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자국법령인 고등교육법은 우리나라에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동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종류는 국내 대학(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 4년제 대학에서 각 학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확인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4년제 대학에서는 재적된 사실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각 학년을 승급하였다고하여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의 4학년 1학기에 재적이 되었을 경우. 그 학생이 3학년까지 이수해야하는 학점을 다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졸업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지, 학년별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았

다고 해서 승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학력인정은 무슨 근거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8.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학교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 상기 법령을 근거로 대부분 국내 대학은 학칙에 소정의 학점(대부분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2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편입학 또는 재입학시 3학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는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통합에 관한 질문

질의

○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 통보 없이 2010년 00학과의 신입생 정원을 정외과와 ** 학과로 돌려 신입생을 유치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전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00학과 학우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채, 조직 개편을 하는것에 관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수렴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대학지원과]

○ 법령상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3항에 의거 대학이 전년도 총 학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 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 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는 학과 통폐합되는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통폐합 직년 연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을 존치하도록 하고, 폐지되

는 학과의 휴학생 등에 관하여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시말해, 귀하가 문의하신 학과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교명 변경에 대해 질문

질의

○ 00대가 한국대라는 교명을 신청했다가 낙방 한걸로 아는데요.. 한국 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교명은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한국000대학교 같은경우는 어떻게 허가 받은거죠?

회신 회신일 : 2008. 7. 7. [대학지원과]

○ 한국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 한국의 모든 대학을 통칭하거나 다른 대학과는 달리 국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학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한국000대학교와 같이 교명의 일부로 “한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제시하신 교명의 가능여부는 교명변경 신청시 충분한 검토후 답변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학전형에서의 지원방법에 대한 문의

질의

○ 정시모집 나군 실수로 복수지원을 하여 복수지원위반사실을 인지한후 관련대학 입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대학의문을 두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으므로 전문대학이나 기타 사이버대학이라도 취학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 4년제 정시는 입학취소가 될 수 있지만 전문대나 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교는 관계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주어 이 안내를 받고 절망에서 조금은 빠져나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전문대학의 지원서를 냈으며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2일 등록을 마칠 생각입니다.

○ 그런데 대학교육협의회 측에 전화를 하면서 전문대학 역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었는데 청천벽력같은 말이더군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0. [대학지원과]

○ 대학입학전형에서의 지원방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시1학기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2학기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수시2학기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3.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에 각각 1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음(일반대, 교육대만 해당)

※ 산업대, 전문대는 해당되지 않음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에서 군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함

4. 정시모집 대학(일반대, 교육대만 해당)에 합격등록한 자는 대학(일반대, 교육대만 해당)에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 전문대는 해당되지 않음

5.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가 대학(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취소함

○ 2009학년도 전형이 종료되는 3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반자를 검색하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 학생은 이때 소명자료를 대학을 통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심의하여 입학취소 여부 등을 결정 대학에 통보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이 시기(대략 5월 정도 예상)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부 인정 외국학교 여부 질문

질의

○ 본인은 군 장기근무자(11년), 공무원(26년) 근무자이며, 국내회사에 회사원입니다.

○ 80년대에 미8군에 소재한 미국대학교 아시아분교 졸업자로서, 국내 사이버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합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인정 여부
2. 편입 가능학교(사이버 대학교, 대학원등)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대학지원과]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외국에서 대학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는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귀하가 수료한 미군내 교육기관이 미국 정식 인가 받은 기관인지 여부 및 해당 대학 수료 및 학위취득 여부는 귀하가 응시할 대학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절차 문의

질의

○ 국내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외국에서 학사를 취득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1.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라고 입학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력인정은 해당대학의 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 교육관계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학력인정 절차 및 확인기관은 없습니다.

국내(한국)대학교 졸업예정일때 외국의 학교 입학에 대해서..

질의

○ 한국 대학에서 졸업예정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중등록으로 되는 것인가요?

○ 일본의 전문학교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대학교의 졸업은 8월이 될것 같고, 일본의 전문학교로의 입학은 4월이 될것 같습니다.

○ 학교 명칭에는 '대학교'라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만약 졸업을 하지 않고, 전문학교로의 입학(유학)을 하게되면 이중 등록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0.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입학학기가 같은 두 대학 이상의 대학 학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학기가 다르므로 법령으로 이중학적이나 복수학위취득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에 이중학적 및 복수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금지하고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학부서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질의

○ 미국(령)은 50여개 주가 모인 합중국이고, 주마다 정부가 있고,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주마다 다릅니다. 연방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나 주정부에서 학교 설립 및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4조 운영주체'의 내용을 보면 외국 대학은 '당해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 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각 주의 정부(예,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가를 받는 대학은 운영주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대학지원과]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주체)에 질의에 대해서 미국 국가(주 정부 포함)의 공인받은 평가기구의 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은 운영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복학 제적생 등록금 반환 요청

질의

○ 대학을 다니다가 가사 사정으로 휴학하고 중간에 복학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복학을 못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제적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자퇴자만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미복학 제적생은 안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대학지원과]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등의 반환) 제2항의 규정상 제적(미복학제적 포함)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학원과 학교와의 규정은 전혀 별개입니다.

○ 또한, 제적과 자퇴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학생의 권리 행사 등) 제적의 경우는 학생이 자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자퇴시 가지게 되는 수업료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학칙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제적생에게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관련 문의

질의

○ 교과부에서는 훈령을 통해 기성회회계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선대학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일 일선 대학에서 이 훈령(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19조, 20조 위반의 경우)을 위반함이 명백할 경우 교과부에서는 해당학교 및 직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기성회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성회는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정 임의단체로, 대학마다 기성회 자체 규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 직접 간여 및 강력한 제재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립대 기성회계 훈령 위반시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기성회계 관리운영상의 여러 문제점 등을 보안하고자, 기성회계를 국고회계에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이 국가기관인지?

질의

○ 국립대학교병원이 국가기관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 [대학지원과]

○ 국립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입찰 대상 정부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는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대상기관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고로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사업인 경우, 국립대학교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5. [대학지원과]

○ 법령에 따르면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하고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 법령에 따른 국제 입찰 자격 여부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군 복학과 관련한 문의

질의

○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에 대해 저희 학교는 휴학 최대 가능학기가(6학기, 3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학기(3년)은 군휴학(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학기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도 군입대 휴학기간(의무복무기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A 라는 학생이 2008년 2.25일에 군입대를 하고, 2009년 5월에 단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 본교는 의무복무기간은 인정하고, 부사관이 되는 시점부터는 직업군인이기때문에 휴학학기를 사용하여 복무하도록 학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단기복무하사관 복무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휴학가능학기(3년)을 포함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미복학, 자퇴 등으로 학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 국방부에서 교과부로 협조요청온 공문 [여군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관련 협조]이 왔는데 이럴경우 여학생이 여자단기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군 휴학으로 조치해 주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 관련 공문처럼 남학생들이 군 복무할 경우 군복무 중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여학생의 군입대 기간처럼 어떻게 하라고 관련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6. [대학지원과]

○ 여학생의 경우 의무복무대상자가 아니므로 지원에 의한 군복무도 의무복무기간 만큼 병역법제73조를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적용여부는 학교의 결정사항입니다

○ 남학생의 경우 의무복무대상자이므로 의무복무 기간만 휴학을 하여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의무복무기간 인정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 군휴학의 경우 병 또는 단기복무부사관(하사관)인지에 따라, 또 각 군별로 의무복무기간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기간별로 군휴학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병으로 시작하여 의무복무완료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지원한 경우는 의무복무자라고 볼 수 없으나, 병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시작하거나 전환한 경우는 부사관으로 4년동안 반드시 마쳐야 의무복무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의무복무자라고 합니다. 단기복무부사관이라하여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학생이 의무복무 완료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궁금한게 있어요.

질의

○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반수해서 다른 학교를 졸업했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

서 받은 이수과목이나 학점같은 것도 남아 있는 건가요?

○ 전문대학원 가거나 할 때 전에 학교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9.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전적대학에서 받은 이수과목 과 학점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입학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성회비 감시에 대해서

질의

○ 기성회비, 대학 등록금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성회비에 대해 감시를 한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3. 24.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기성회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9조(예산·결과보고서의 제출)를 보면, 총(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0일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당해연도 예산성립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성회는 대학마다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정 임의단체로 기성회 자체 규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국가에서 직접 간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우리부에서는 기성회계를 국고회계에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경차 주차 문의

질의

○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요일제 및 홀짝제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차량 부제관련 지침이나 공문의 내용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0. [대학지원과]

○ 대학의 차량운행 억제와 관련하여, 현재 고유가 시대에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의 일환으로 차량2부제, 공용차량 억제, 사무실 냉.난방 온도 조정, 전등 및 승강기 감축 운영 등을 시달한 바 있으며, 경차, 장애인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경우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공공기관은 아니므로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동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토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교양에 대한 질문

질의

○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교양필수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과목들이 몇가지나 되고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 그 종류 중에 대학의 선택에 따라 몇가지가 그 대학의 필수교양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대학지원과]

○ 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교양과목 등은 대학의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칙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모집단위 조정 시행 관련 문의

질의

○ 저희 학부는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기술전공 등 아주 유사한 세 전공으로 구성되어 학문 특성상 학부체제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지도강화와 공학인증 시행을 위해 학부체제는 유지한 채, 전공단위로 모집하여 대부분의 교과를 학부 공통으로 운영하고, 공학인증을 추구하는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추가로 4과목 정도를 특별히 교육해야 합니다.

○ 학교 담당부서에 문의결과 학과로 독립하여 모집하던지, 기존의 학부제로 모집하던지 둘 중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학부제의 장점과 학과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부의 전공별 모집을 왜 모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0. [대학지원과]

○ 2009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통보하였습니다.

○ 정원정책 기조가 대학의 정원 자율책정 기조를 확대하면서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립대는 자율 운영 토록 하였고, 국립대도 법령개정을 통하여 총정원 범위 내 학과(부), 전공 신설/조정할 경우 추가인력 및 예산소요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2항(모집단위 광역화)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및 대학원 설립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이나 대학원 설립에 관해 용인 또는 평택 국제도시내에 대학교 내지는 대학원 대학교, 외국 학교 분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의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으며,

○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평택지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분교) 방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학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특별학점인정 관련 문의

질의

○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학기중 수강신청 및 수업참석(1학점당 최소 15시간이상)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절차이외에, 나름대로 공인영어시험(토익, 토플, 교내 영어Test 등)이나 컴퓨터국가자격증(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사무자동화 등)을 통하여 특별학점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앞서 언급한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한 학기에 1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되는 일반적절차 이외에 별도의 공인영어시험이나 자격증등으로 각 대학의 교육과정내 인정과목을 선정하고 특별학점을 줄 수 있게 각 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법상 위법하지 않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5.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교육과정 및 학점의 인정등을 학교의 장이 정한 학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3.28〉

대학 편입학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었습니다. 중국에서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학위가 인정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7. 7. [대학지원과]

○ 대학의 편입학은 일반적으로 3학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학사학위를 소지자의 경우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학사편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이 학위취득의 경우, 해당국가의 교육법에 의거 정규 설립된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또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정원외 편입학의 경우, 2학년과 3학년에 대하여 편입학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 2.3학년 선발은 각각 1학년(2학기)과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대학에서 정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대학 편입학은 대학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유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이 가능하므로, 지원요건의 자격충족 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대학의 학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국의 교육관련법령에 의거 설립.운영되므로 우리부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절차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당학력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의 재외공관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편입학 자격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 및 편입학전형계획에 의거 해당대학에서 이전대학의 국가내 학력 인정여부 및 이수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입학 규모 및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코자 하는 대학에 편입학 모집전형을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학과 특수대학원(야간)에 이중 학적 보유가 가능한지?

질의

○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편입학한 학생이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에도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 참고로 해당대학 학칙에는「이중학적을 가진자는 제적」처리토록 하고 있고, 대학과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은 달리 운영하고 여기서 이중 학적을 같은 대학내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포함하여 해석해야 할 지, 학부와 대학원의 학적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할지

회신 회신일 : 2009. 3. 9. [대학지원과]

○ 이중학적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학교 학칙에 이중학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이중학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취지, 그 규정 내용 및 관련 학칙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서 그 학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학위명 및 편입학 모집관련 문의

질의

○ 학위종별에관한규칙[폐지] 및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제정]에 따르면 학위의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및 학과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학위명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신입학 및 편입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입학은 정원내 결원인원으로만 편입학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결원인원을 편입학으로 모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며, 석.박사학위의 경우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에 의거 학술학위의 종류는 별표에서 정하며,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원외(특별전형)로 입학한 학생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외 편입학의 시행이 가능하며, 결원산정 및 지원자격 등 정원내·외 편입학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각 대학에 시달될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학점 등록제 실시 요청및 학점 졸업제(학기 졸업제 폐지), 전공필수과목 학점 50% 이하

질의

○ 대학의 학기 졸업제의 모순

현재의 학기 졸업제는 대학의 행정편의주의와 등록금 수입 등 학생위주의 교육 서비스 제공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편의가 위주가 아니고 교수들 위주로 편성되는 학과목의 배정으로 학생들은 졸업 요건의 학점이 넘었는데도 전공 필수 과목의 과다 배정으로 무리한 학점이 학생들에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 졸업 필수 과목의 학점은 졸업 필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양 및 전공 선택으로 50% 를 선택하는 자유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도록 국공립 대학에 그 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졸업 필수 학점이 훨신 초과 하였는데도 또 한 학기를 더 하거나 과다 학점의 수가 엄청난 경우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이는 젊은 이들의 불필요한 정력과 시간과 재정의 손실 및 국력의 낭비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대학지원과]

○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근거로 대학은 교육과정상 필요한 과목이나 이수학점 등에 관하여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공필수 과목이 5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우리부가 대학에 내려달라는 요청은 현행 법령상 받아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편입 자격

질의

○ 지방의 사립대(4년제)에 1학년에 재학중이고 올 3월이면 2학년이 됩니다. 다른 대학(교)로 편입이 1학년때나 2학년 학기중에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2. [대학지원과]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전문대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 자로 모집학년은 원칙적으로 3학년으로 입학 가능합니다.

앨범비 납부가 필수인지

질의

○ 사립대학교 재학중입니다. 납부금 고지서에 학생회비와 앨범비까지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앨범비도 의무인가요? 앨범은 자유 아닌가요? 사고싶은 사람이 사는걸로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8. [대학지원과]

○ 학생회비 통합고지에 대하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는 별도로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에 대하여 통합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동 사항은 대학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 바, 학생회나 학생담당 부서에 건의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우리부는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회비 등 자율경비 항목을 통합고지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다만, 졸업앨범비 환불은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

○ 2년제 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으로 바뀔때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4년제 대학교로 바뀔 수 있나요

○ 학교에서 18학점중 최소 학점인 15학점만 한학기에 수강신청을 햇는데 다른학교는 남은 학점만큼의 돈을 돌려준다는데 원래 받는게 맞는건가요?

○ 학교가 2년제에서 4년제로 군대 다녀온사이 바뀌면서 전문대 과정이 아예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4년제로 편입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학점을 빨리 취득하여 4학년 1학기만 하고 졸업할수 있는 조기졸업을 못하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1.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과 동일한 교원.교지.교사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으로 설립인

가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개편된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의 통폐합은 각 대학간의 의사협의를 통해 추진됩니다.

2.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대학에 따라 수업료의 징수방법은 월별, 학점별, 학기별 등 각 대학의 장이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별로 징수하는 대학은 신청학점에 따라 징수금액이 다를 것이나, 학기별로 징수하는 대학은 신청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은 동일합니다.

3. 또한, 학생의 등록금은 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학생 복지시설 등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사운영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므로 구체적인 등록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 예.결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학의 모집단위별 교육과정 운영 및 입학,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졸업 요건 및 절차, 신청시기 등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료 환불 문의

질의

○ 대학교 입학 후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잘 안나갔습니다. 2학기때에도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기 한 한달 전인가 휴학신청을 하고 입대를 했는데 수업료나 등록금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2. [대학지원과]

○ 등록금은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에 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의 반환은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휴학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를 할 경우 휴학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므로, 반환금액은 해당 대학의 2학기 개시일로부터 휴학신청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산정하여 아래 반환기준에 의거 산정될 것입니다.

○ 또한, 별도의 학적신고 없이 학생이 수강치 아니한 1학기 수업료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환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서 정한 학기개시일 및 규정 등에 의하므로 재적중인 대학의 학칙 및

학생복지과 등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 학기개시전 등록포기 및 자퇴 : 수업료 전액 반환(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5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2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1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교 재학 중 취업관련 문의

질의

○ 대학교 재학중 보통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내지 빠른 경우는 3학년 2학기에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담당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레포트나 시험등으로 대체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교수님들의 인식이 대학은 취업이 목적이 아닌 학문의 목적을 둔 곳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운이 좋게 취업한 학생들만 진퇴양난에 빠지게됩니다. 그나마 사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야간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비해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야간반이 없습니다. 결국은 야간대학으로 다시 3학년으로 편입등록을 하든지 아님 중퇴라는 신분을 갖게되는데

1. 국립대의 야간반 신설 가능여부,

2. 공직재직중 학적보유(학기등록)을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게 정당한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09. 6. 15. [대학지원과]

○ 국립대학교의 야간반 신설여부에 대하여는 대학내 총정원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신설이 가능하나 야간학과에 대해서는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또한 학교에서 4학년 취업생들을 위한 야간학과 신설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야간학과가 있는 학교라도 야간수업을 수강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직장생활하면서 야간수업에 참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도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공직 재직중 학적보유(학기등록)을 하게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게 정당한지에 대

하여는 공직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하면 학생인 경우 일정기간 임용유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용된 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편입학 문의

질의

○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필리핀대학에 입학 2년 수료후 한국으로 편입학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 대학은 필리핀 교육기관에 인가가난 정규 대학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8.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은 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설립하는 사항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필리핀의 교육관계법에 의거 고등교육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2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으로 사료되나, 학력의 인정은 해당 대학의 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학력인정 절차 및 확인기관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학력인정의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하고 있으므로 편입코자하는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사실여부 확인 문의

질의

○ 마하나임 대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4.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마하나임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술연구정책실 〉 '입학정원'으로 검색

〉 103. 2009학년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현황

-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국 〉 '입학정원'으로 검색 〉 5. 2008학년도 전문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편제정원) 현황(해당파일은 저장해서 확인)
-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국 〉 '원격대학'으로 검색 〉 2. 2009학년도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에서 '2009학년도 사이버대학 현황'(12개 대학)

외국대학교 학점 인정에 대한 문의

질의

○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왔는데 외국 대학교 학점이 인정되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9.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의 학점인정으로 국내대학에서 인정여부를 문의하셨으나, 이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으로 편입학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학의 편입학 자격요건(일반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편입학은 신입학과 별개로 별도의 정원, 배정인원이 있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의 여석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재학하였던 학교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정규과정에 재학하여 학년을 수료하였다면 국내 대학의 편입학 자격요건이 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입학은 대학에 따라 선발여부 및 규모, 지원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편입학 가능대학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의 편입학 모집전형은 일반적으로 11월~12월경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학과 및 인원 등 모집요강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원코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참고로 대학의 개설학과 현황은 교육통계센터의 학과정보서비스(http://cesi.kedi.re.kr/serv/P__AS__LS__XX__0001.jsp)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에 대한 조기취업 시기 문의

질의

○ 회사에서 신규사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대한 조기취업 시기에 대한 법령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대학지원과]

○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대한 조기취업시기에 대한 법령은 별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학위취득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조기취업이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대학설립 인가에 관한 법령 문의

질의

○ 대학 설립 인가에 대한 법령 가운데 과거에는 도서관 과 박물관 설립이 필수였지만 현재에는 박물관은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법령의 개정 전과 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7.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대학설립에 관련된 법령은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입니다.

○ 또한 박물관 및 도서관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의해 교사시설의 구분 중 도서관은 교육기본시설이며 박물관의 경우 부속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박물관은 교육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홈페이지〉법률교실〉종합법령정보센타 를 검색하여 해당 법령에 대한 연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에 관한 질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1항을 보게되면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

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라고 명시된 것이 학교 총 정원을 합한 것이 500명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연과학계열'같이 어떤 분야의 학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9.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의 계열별학생정원을 합한 것이라 함은 문구 그대로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등을 총 합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편제정원이하 합니다. 따라서 총 정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학생정원 증원과 조정관련 문의

질의

○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학생정원 증원과 조정 시 기준이 되는 4대요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학생정원 증원 시 갖추어야 할 기준 적용 시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등록학생수가 적은 경우 등록학생수(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지확보율 충족여부 평가에도 등록학생수가 적은 경우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 교지기준 면적 [별표 4]도 등록학생수(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 교원확보율을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전년도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에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4월 1일, 10월 1일자 두 번 모두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되는지요. 그리고 교원확보율이 100%이상이면 전년도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3.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 증원 및 조정 시에도 위 4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8.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에 의하면 각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기준보다는 정원기준이며, 〈질의2〉전년도이상 교원확보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4.1일 기준이건 10.1기준이건 교원확보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즉 4.1일 기준 70%, 10.1기준 72%이면 10.1기준인 72%이상(72%포함), 역으로 4.1일 72%, 10.1기준 70%인 경우 72%이상을 확보하야야 합니다

○ 〈질의 3〉 특수대학원 증원시에도 4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학원학생수가 증원되면 4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성적 환산 질의

질의

○ 대학교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키려고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백분율 성적 환산기준표에 따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백분율 성적 환산기준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 성적의 백분율 성적 환산기준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등 대학의 학점 운영 및 표기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 성적의 백분율 환산기준 등 성적 운영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수시모집 전형료 질의

질의

○ 수시전형료가 논술이 있는 경우에 7만원이며 여기에다가 인터넷접수를 대행하는 곳에서 수수료를 5천원을 받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1차 서류로 1.5배수에서 3배수를 뽑아 논술을 치게 합니다. 1차 전형에 떨어지면 불합격자에게만 2만원을 미리 제시한 통장으로 입

금을 시킨다고 합니다. 1차 전형 때는 1차 전형료만 받아야 정상이고 또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전적으로 수험생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대학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처리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율결정이라도 국민의 원성이 높고 불합리한 금액이라면 고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수시2학기도 정시모집과 수능고사 직전에 폐해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전형일자를 모두 수능시험 이후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8. [대학지원과]

○ 대학 신,편입학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대학에서 대입전형료를 책정할 때 전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전형료 절감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시2학기 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수업일수에 대한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수업일수가 연간 30주 이상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우리대학에는 한 학기에 15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궁금한 내용은, 수업일수를 한학기 15주 편성하되, 특정과목에 대해 집중수업이 가능한지요? (집중수업이라함은 한학기에 15주가 아닌 4-5주만에 일부과목을 이수함)

○ 저희대학에 개설된 교과목 중 “촬영” 등의 일부과목은 과목특성상, 장시간의 수업을 요하는 과목 등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매학년도 2~4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으로 살펴볼 때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학사일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개별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는 수업일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점당 이수시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목별로 반드시 15주간 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개별 과목을 편성·운영할 때 매학기 15주의 수업일수를 만족해야 한다면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1개 학년도 4개 학기 운영이 불가능하므로(15주×4학기=60주) 법 내부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과목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15시간 이상만 만족한다면 과목별로 단기간의 집중수업을 통해 이수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MBA 과정이나 외국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기기간에 소수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어서 새로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모듈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간 이중학적 허용여부 문의

질의

○ 대학원 3학기에 재학중입니다. 학업을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겨 타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질의 : 이 경우 나중에 합격한 대학원에 등록하면 이중학적이 되는데 허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3.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사 운영 방식 문의

질의

○ 한국의 대학원에서 이수해야할 학점은 총 몇학점인지 그리고 한학점을 얻기위해 몇번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혹은 몇시간인지? 대학원 학사 운영방식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준이 되는 법조항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9. [대학지원과]

○ 대학원(대학)의 학사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교육과정, 교과이수단위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은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대학(원)에 따라 졸업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등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는 45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2조의 2 및 제44조)

대학의 주간과 야간 수업연한을 달리해서는 안되는지?

질의

○ 건축과가 있다면 주간은 3년제로, 야간은 2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주간 수업년한과 동일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대학지원과]

○ 학과(모집단위)별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학과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주간과와 야간과는 모집단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모집단위가 다른 학과의 경우 수업연한을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규정하여 운영하실 사항이나, 모집단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교육과정의 동일명칭의 학과가 수업연한만 상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개별학과의 수업연한 및 학칙의 개정은 학내 구성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관련하여 우리부 대학지원과와 사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학의 학기 이수관련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교과의 이수를 위해서는 학점 당 이수시간을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10주 ~ 12주 간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행령이 정한 이수시간을 확보한다면 한 학기에 준하는 학점 (예 18학점)을 취득 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정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한 학기에 준하는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 하다면 몇 학점 정도가 10주 ~ 12주간의 기간에 취득하기 적정한 학점이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4. [대학지원과]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교육과정 및 학기, 수업일수 등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규학기 및 이수가능학점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정하여 운영할 사항일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학기는 2학기 내지 4학기로 정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학기 및 이수학점의 범위는 동 법령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시 이혼자녀의 입학 문제

질의

○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이혼자녀는 친권이나 양육권만을 내세우며 주민등록상에서 함께 하는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양성평등으로 호적법을 바꾼 현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8. [대학지원과]

○ 현재 대학입학전형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전형방법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시 제출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관련 문의

질의

○ 대학합격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중 일부를 외국에서 재학하고 왔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은 우리나라 현지대사관에서 발급을 안하며 그나라 외교부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증을 받으러 직접 비행기 타고 갔다와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기는 분실의 우려 때문에 불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1. [대학지원과]

○ 외국에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서 수학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발행한 각종 증명서에 대한 문서의 공증, 학교의 확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통하여 문서를 공증하였습니다.

○ 2007년 7월에 발효된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협약가입국 정부기관, 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문서에 대한 공증을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하지 않고 해당국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외교통상부에서는 최근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의 재외공관에서도 기존과 같이 영사확인을 하도록 재외공관에 안내하였습니다.

대학캠퍼스를 떠나서 수업진행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대학과 한 지역에 있는 신학원의 성인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의하여 수업을 진행 할 때, 대학 캠퍼스가 아닌 신학원(동일 시내 5km 이내) 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불법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6. [대학지원과]

○ 우리부의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에 의한 현장실습형태의 수업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원칙적으로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교사(교육기본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 그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편입학에 대한 문의

질의

○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대학2년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의 4년제 대학에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2. [대학지원과]

○ 대학의 편입학은 편입학이 허가된 여석 범위내에서 일반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편입학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학점에 대하여는 해당대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외국민의 정원외편입학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에 대하여 편입학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 2, 3학년 선발은 각각 1학년(2개 학기)과 2학년(4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각 대학별 지원자격, 대상기간 및 모집전형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 또는 대학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학적에 관해서 문의

질의

○ 00대학교를 3학년 과정까지 다하고 자퇴하였습니다. 이상태라면 제가 기업체에 취업시 학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졸로 지원해야 하는 건지, 초대졸로 인정되는 건지 어떻게 인정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6. [대학지원과]

○ 4년제 대학에서 3학년의 자퇴에 대한 학력인정은 대학 중퇴가 되겠으나, 이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학력인정 증명서는 없습니다. 다만 편입을 위한 전적학교 학점인정에 따른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시점에서 학력인정은 해당 사측(수요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에 대한 질의

질의

○ 00도내에만 자그마치 45개교(도시지역)가 대학 진학에서 농어촌 특혜를 받는다는것은 무리입니다. 농어촌학교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농어촌 특별전형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대학입시는 물론 고교 입시에까지 큰 애로가 있습니다. 농어촌을 빠져나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문제로 인하여 이주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자녀 대학 특별혜택은 순수 농어민자녀들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이것이 도시학교 학생들에까지 확대되어 읍,면지역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 농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 [대학지원과]

○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법령에 근거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현황을 지난 1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파악하였습니다.

○ 대입자율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자료를 대학협의체인 대교협 제공, 대교협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에서는 대교협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대학여건에 맞게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지역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제가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7주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7.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반환사유 및 별표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찾기 : 법제처(http://klaw.go.kr) 〉 법령명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

○ 그리고 해당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인 경우 동 규정에 의거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에 대하여 문의

질의

○ 미 연방 정부 기독대학교 인준협의회의 학위 인증대학교라고 합니다. 한국에 한국사무소를 내고 본교와 똑 같은 조건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며 세계 각국 어떤 대학으로부터 학점과 학위를 인정받고 편입학 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학교인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9.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 해외에 인가된 대학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대학교와 우리나라 대학에서 MOE 체결 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선발권은 각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전형방법, 전형자료 및 동 전형기간 내 선발시기 등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대학 인가 신청에 관한 문의

질의

○ 미국에서 대학 재학중인데 아마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첫번째인거 같아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 미국 정식 인가 학교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릴께요.

1. 관련 서류
2. 서류 접수 절차
3. 예상 소요 시간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대학지원과]

○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말하며 외국대학을 인정하는 제도나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대학과정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대학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우리나라에 편,입학 등을 하려면 해당 대학의 수요기관이 되어 검증 판단하며 외국 교육제도의 다양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취득했다는 학사학위 문제 문의

질의

○ 미국대학의 학사(B.A) 학위를 미국에 가지 않고도 취득하여 국내 정규대학원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진학할수 있는지요? 또한 국내대학교 대학원에서 미국의 학사학위를 인정하여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취득했을 경우, 후에 학사학위가 허위학위라고 판명되었을 때 학위를 취소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9. [대학지원과]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2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외국대학의 학력 및 학위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각 대학(원)이 해당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에서의 학력인정여부, 교육과정 및 학위 진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이에,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항은 대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대학에서 답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질의

○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대상 한국어학당의 설립 및 교육과정 등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 한국어학당 운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내 부서가 어디인지?

○ 한국어학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반 운영규정, 특히 수업비 및 기타 비용의 반환과 관련한 규정의 적정성여부의 판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학교측의 규정이 부당하게 학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6. 12.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제2항을 보면,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연구시설 등)을 보면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3항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는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래의 설치 목적과 학칙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범대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졸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

○ 사범대학생이 취업한 경우, 출석하지 않더라도 졸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사범대 4학년이 졸업전 학기인 2학기에 취업한 경우, 모든 수업 (15학점)을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담당교수님이 학점을 준다면, 졸업 학점 이수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8.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교가 제정 개정하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를 채우는 자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어 귀하가 문의하신 취업중인 자가 출석일수을 채우지 않고 학점을 부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정하는 학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전공으로 사이버대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버대 강의를 계속 듣거나 휴학을 하고 대학원 졸업후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이버대를 포기하고 대학원만 다녀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4.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입학학기가 같은 두 대학 이상의 대학 학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입학학기가 다르므로 법령으로 이중학적 보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대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에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원)의 입학부서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의 휴학에 관한 질의

질의

○ 고등교육법 제2관 제38조에 산업대학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각각 제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산업대학인 우리대학도 학칙 제33조에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장기간 휴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많은 휴학생이 발생되고 있어 학사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2년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1학기 이상 수학(복학) 후 (병역의무, 질병, 직장이전 등은 제외)휴학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8조와 개정하려는 학칙이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칙 개정 주요 내용

1.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1학기 이상 수학(복학)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질병, 직장이전 등은 예외로 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휴학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부칙

이 학칙 개정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8조의 수업연한이란 졸업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로 재학하여야 할 학기수를 의미하며, 재학연한이란 재학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학기수으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에 향후 휴학기간 제한하는 학칙 개정에 의해 현재 귀 대학 재적생들이 휴학기간초과로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문의

질의

○ 편입학을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현재 서울.경기도 지역에 교육관을 두고 모집하는 학교가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10. 14.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산업체 위탁교육 편입학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산업대학은 서울산업대학교(www.snut.ac.kr / 02-970-6114), 한국산업기술대학교(www.kpu.ac.kr / 031-8041-1000), 한경대학교(www.hankyong.ac.kr / 031-670-5114)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대학의 소재지 외에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개별 사업장에서 학습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에 의거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 소재 대학의 서울.경기 지역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여부는 재직중인 사업장과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립주체(국립과 도립)가 다른 대학간 통합 가능 여부

질의

○ 첫째는 국립과 도립 대학간에도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통합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 내지 근거법규에 의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신 회신일 : 2008. 12. 11. [대학지원과]

○ 설립주체가 다른 두 대학의 통·폐합은 쉽지 않지만, 설립주체간 , 지역주민들간, 학교구성원간의 충분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 이와 더불어 설립주체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재산 귀속, 학사처리, 교직원 처리, 재정지원 문제 등 자체 구조조정 등의 처리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에 관한 내용 문의

질의

○ 대학에서 2006년도 성적증명서 과목과 현재 2009년도 성적증명서 과목이 틀립니다.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바꿨을때

1. 학교자체 결재를 득 하여 과목을 바꿀수있는지요?
2. 법적인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7.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에서의 성적증명에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을 살펴보면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정원
2.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 · 편입학, 휴학 · 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전과) · 자퇴 · 제적 · 유급(유급) · 수료 · 졸업 및 징계
4. 교과의 이수단위, 학점인정
5.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에 성적증명서 과목의 오기로 인한 사항은 동조항 3항의 4에 의하여 해당 학교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제 2외국어에 대하여 문의

질의

○ 2009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아랍어의 표준점수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무려20여점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없는 아랍어의 학생 선택이 30%정도로 높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정당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운 좋아 표준점수가 좋게 나와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0. [대학지원과]

○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표기방식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이 응시영역/과목을 임의선택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으로 표준점수, 백분위가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습/실기 수업 장소 문의

질의

○ 학교 건물 외 장소에서 실습/실기 수업 가능 여부

○ 담당교수님 연구실 또는 연습실에서 실습/실기 수업 가능 여부

○ 담당교수님 연구실 또는 연습실에서 정규수업 외 연습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2. 24.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에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교지, 교사 등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인가 신청을 해야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학설립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학의 교육활동은 설립인가시 설정한 교지내 교육시설에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학원 수업과 같이 인원이 지극히 소수인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담당교수님 연구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있는 바와 같이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 부속병원 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외부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범계열 학과 또는 교직이수 학생의 경우 교생실습을 위해 소속 대학교 이외의 초, 중, 고교 등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학이 인가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장소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용음악과 편입 문의

질의

○ 일반 4년제 인문대학을 작년에 졸업하고 내년에 실용음악과가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인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음대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대학지원과]

○ 대학의 편입학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등은 학생선발권을 가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부에 별도 사전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2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을 경우 편입학의 지원자격이 될 것이나,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전공에 따라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에 대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학에 따라 결원의 범위 내에서 3학년 또는 4학년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편입학의 요건 및 전형방법 등은 각 대학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지원코자 하는 대학의 편입학 전형요건을 꼼꼼히 살피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야간대학 관련 문의

질의

○ 서울/경기도 주변 야간 대학교를 알아보고 있으나, 야간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점점 줄어들고 있더군요. 물론 학교 재정형편상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을거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 가능하나, 많은 분들이 못다이룬 꿈을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3. [대학지원과]

○ 우리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및 산업체 등 재직중인 직장인의 계속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학의 야간학과의 운영을 독려하여 왔으며, 현재 대학의 학과개설에 있어서 각 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정원조정(야간학과로의 전환)은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입학 학생들의 감소 등의 이유로 야간학과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대학이 많이 늘고 있으나, 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의 학과개설은 대학이 수요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부에서 강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야간특별과정편입생 토요일 강의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대학의 특별과정편입생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므로 평일 2-3일 야간 수업 및 토요일 수업을 요구하는데 혹시 토요일 수업이 교육관계법령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2.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등),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등에 의거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일부 학생에게 야간에 수업을 하는 문제는 학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나 담당교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야간 수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약대 6년제 질문

질의

○ 약대 6년제의 시행일은 2010년 몇월 몇일인가요. 미트/디트와 중복되나요? 약대 6년제도 의전처럼 복수지원이 가능할까요?

○ 선수과목 등 이수해야할 조건들이 많은데, 확실한 요강은 나오지 않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교과부에서 대한약학대학협의회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여주셔서 약대 6년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대학지원과]

○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 PEET) 시행 계획'과 '대학별 선수과목 결정 현황'을 2009년 2월 18일(수)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과 대학별 선수과목 결정 현황의 공지 이후에도, 제1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관련 일정(2010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등 세부사항과 전형요소별 전형방법을 포함한 대학별 전형요강 등에 대하여는 추후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kpeet.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대 학생선발을 신입학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 약학대학이 6년제 개편에 따른 학생 선발방법에 대하여 2010년도 약대학생을 타 대학 및

타학과에서 2년을 수료한자에 한하여 선발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일선대학에서 학생선발시 신입학으로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일반편입학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지 질의를 드립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4항관련)

○ 또한 만약 편입학으로 선발시 선발학년은 1학년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6년제임을 고려하여 3학년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대학지원과]

○ 약대 전공(3년차) 개념은 쉽게 답변드리면 동일 대학인 경우는 전과로, 타 대학인 경우는 편입학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학교육 전공대학자를 선발하다는 의미입니다.

○ 다시 말해서, 분리된 형태의 '2+4' 체제 6년제라도 다른 학부(학과)에서 이수하는 2년의 기초소양교육도 약대 수업연한에 포함되므로 3년차에 약대로의 진입을 입학개념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약학전문대학 6년제 시행 문의

질의

○ 약대가 6년제로 학제 개편이 되면서 조기시행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까지 발표하신다는 조기시행 상황이 전개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4. [대학지원과]

○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은 약학대학협의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하여 정책연구, 공청회 등을 토대로 2005 .8월 발표된 것입니다.

○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약학대학 학제 개편은 개편방안 발표 이후인 2006년 기준, 고1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진입은 200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약학전공 교육과정 선발은 2011학년도가 될 예정입니다.

○ 약학대학협의회에서 약학전공교육과정의 진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8월까지 약사 인력수급 공백차질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안대로 2011년에 전공과정 모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약대 전공과정 모집 시기 조정요청에 대해 내부검토를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입장이 변경

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안에 준해 약대 전공과정 진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원서료 문제

질의

○ 2-2 일반전형 수시에 수능성적 기준이 안되면 붙을 가능성이 없어서 논술시험을 보러갈 수조차 없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전형료를 환불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저학력을 못채워서 논술시험 아예 보러가지 않으면 채점비용도 들지 않을텐데 전형료의 일부라도 돌려줘야되는거 아닙니까? 1단계 2단계도 없고 원서만 받고 한것도 없는데 너무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1. [대학지원과]

○ 대학 신.편입학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대학에서 대입전형료를 책정할 때 전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전형료 절감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대입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의 경우 전단계 달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를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대학 졸업후 알고보니 비인가대학

질의

○ 한국에서 외국계대학을 졸업후 국내대학원에 입학해 작년에 석사학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외국계학교가 비인가 대학이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학사와 석사 모두가 취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학사를 다시 취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 회신일 : 2009. 4. 1. [대학지원과]

○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제 27조에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위탁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박사학위에 대해서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사학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학제, 학위제도가 다양하여 각국의 학위를 우리나라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학위를 국내의 동등한 학위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 또한, 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은 해당국의 학제, 교육과정 내용,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기관의 필요를 반영하여 해당학위의 인정이 필요한 기관(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국내대학원에 입학해 작년에 석사학위 이수를 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기관인 동대학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려되는 바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및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원에서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동대학원에서 입학시 자격기준 심사내용도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취소여부 등도 별도로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으로 생각됩니다.

외국대학과 공동학위제 운영 시 정원 제한?

질의

○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진행하다보니 정원 문제로 해외대학과 공동학위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아무래도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중학위(Dual Degree)수여 방식이 될텐데, 이 경우에 정원제한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기존 정원에 해외대학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학위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학위를 수여하는 대상학생은 법적으로 허용된 입학정원의 2~3배에 달할 수도 있게 될텐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일이겠지만요) 이럴때 혹시 향후 학위수여자 명단 보고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5.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내용은 학칙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언급하신 학위 수여자 명단은 우리부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 학위 번호를 부여하던 시기에는 학위 수여자 명단을 받았지만 이제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에 관하여 문의

질의

○ 미국에서 기술관련 대학을 설립추진하면서 국내에도 분교설립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와서 교과부에 문의합니다. 먼저 국내에 분교설치가 가능한지요? 경제특구에만 설립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현재도 그것이 유효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4. [대학지원과]

○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인천 송도 · 청라 · 영종도, 광양만권, 부산 · 진해)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확인 요망)시 설립가능 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기업도시 : 6개 도시(무안, 청주, 원주, 태안, 무주, 영암 · 해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8조

평택시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91동)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외국인 편입학관련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 제 51조(편입학)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유학생 편입학을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의 3년제 전문대학에서 졸업을 하지 않고 2학년(4학기)까지만 이수한 순수외국인이 국내 4년제 대학 3학년 과정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대학지원과]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경우 대학교육의 국제화·개방화 유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순수 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3학년 또는 4학년)에 정원 제한없이 정원외 편입학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국가 출신 학생들이 국내 대학 편입후 불적절한 학사관리로 불의가 있어 철저한 학사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행위 교육학원의 위법여부 문의

질의

○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요? 의과대학 이외의 사설 학원 등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반영구화장, 타투 등은 대법원에서 의료행위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 학원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행위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련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30. [대학지원과]

○ 의료행위 교육기관 및 반연구 시설의 불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연마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법령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에 의거한 학원의교습과정외에 의료행위는 교습과정안에 둘 수 없습니다.
2. 반영구화장 등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판결받은 바, 병원 등에서 의사의 진찰.진료를 통해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외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학원의인.허가를 맡고 는 각시도교육청에서는 인가받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 이외 구체적인 학원의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이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중학적 적용 여부 및 허용 가능성 문의

질의

○ 의사로서 일하면서 턱관절로 인한 파생질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턱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기위해 치과지식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금년 여름 Deet시험을 치르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후 다시 한의학과에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헌데, 혹여 00대 한의학과 휴학중인 제 상태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있어 이중학적 문제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렇게 민원 상담을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대학지원과]

○ 기본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동시에 2개 이상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중학적에 해당되며, 동 이중학적은 이중등록과 달리 우리부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각 학교의 학칙에서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재학 및 진학코자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을 확인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학적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원을 수료한 상태(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음)에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이중학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졸업을 해야 이중학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료만을 해도 이중학적의 보유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8.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사항은 이중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칙이나 관련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의 관련규정이나 학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중학적의 범위와 적용여부 문의

질의

○ 이중학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제가 로스쿨에 합격할 경우, 일반대학원은 휴학을 하고, 로스쿨에 재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그 설립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학적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교육의 공공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에 두군데에 학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5. [대학지원과]

○ 현행 법령상 이중학적(동시에 두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진학하고자 하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시에 군입대후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질의

○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를 하였으나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하지 않아 미복교 제적되었을 경우 재입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4. [대학지원과]

○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신청한 휴학기간의 종료후 학적처리에 대한 제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대학에서 미등록 제적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입학이란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자퇴 및 제적 등)한 학생의 경우, 이수학년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대학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수업료는 각 대

학의 실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입학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대학의 학칙 및 규정에 의거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업치료학과 설립 인증 기준에 대하여 문의

질의

○ 대학의 작업치료학과 설립 인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나 항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5.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학과 · 정원 등의 증설 · 증원 기준) 등에서 설치기준 및 조건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학과 · 정원 등의 증설 · 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 · 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 · 교지 ·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2.29〉

1.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2. 통 · 폐합 후 교사 · 교지 · 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재수생에 관해서 문의

질의

○ 대학생 1학년입니다. 한학기는 이미 마쳤는데요 2학기를 다니면서 재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휴학기를 내고 재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9. [대학지원과]

○ 재수를 준비 시 다니고 있던 학교의 휴학에 대한 결정은 민원인께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휴학을 하는 이유는 학교 수업과 대입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꼭 휴학을 하고 다시 대입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다른 학교에 합격이 되었을 경우 다니시던 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학교의 행정실 등에서 자퇴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고 합격한 학교에 입학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입학생에 관한 전과 허용 여부 문의

질의

○ 대학마다 재입학생에 대한 전과(일부학교의 경우 '소속변경')허용 여부의 명시가 대학마다의 학사운용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도 재입학

생에 대한 전과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어 혹시라도 관련법규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련법규가 없다면 학칙에만 명시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3. [대학지원과]

○ 동 민원은 학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으며, 학칙에는 입학, 재입학 · 편입학, 휴학 · 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전과) · 자퇴 · 제적 · 유급(유급) · 수료 · 졸업 및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복무 중 수능 합격시 입학연기나 군휴학 가능여부

질의

○ 공익근무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 수능을 봐서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자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학교입시에 합격한다면 그로인해 입학 연기라든지 바로 군휴학을 낼수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10년 5월제대인데 내년 입시에서 대학교에 합격하게되면 2011년도에 학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대학지원과]

○ 병역법상 입영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의 학적처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학생의 제적, 휴학 및 재입학 등의 학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입학생으로 선발되었다면 군휴학은 가능할 것이나, 학생의 선발은 대상학생의 입학후 학점이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학의 장이 정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복학 등에 관한 학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대학의 입학은 지원코자 하는 대학에 입학요건(가능여부) 및 학적처리 등을 확인하시는 후 진학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과 문의

질의

○ 대학교에서는 전과를 3,4학년 제적생 인원을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

에서 주야간의 변동없이 학과만을 변동하는 전과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위의 방법이 맞는 건가요?

* 또한 주야간 변동이 가능한가요?

○ 재입학 역시 3,4학년 제적생 인원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 정원내, 정원외로 분리하여 선발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과 야간, 정원내, 정원외로 구분하여 제적된 모집단위별 인원에 준하여 해당 모집단위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2. [대학지원과]

○ 법령이나,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전과 3,4학년생 제적생인원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이내에서 선발? : 법령과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의료인력, 교원만 제한) 학칙으로 제한하였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것 같으며,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동 민원은 학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학칙에는 입학, 재입학 · 편입학, 휴학 · 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전과) · 자퇴 · 제적 · 유급(유급) · 수료 · 졸업 및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의 장이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써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사 등록확인 문의

질의

○ 97년도에 00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전문학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이 되나요? 졸업증서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위 등록번호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번호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0. [대학지원과]

○ 졸업시 전문학사는 우리부에 등록되지 않고, 해당대학에 등록하며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졸업시 부여하는 것으로, 졸업증서번호와 학위등록번호는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부여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졸업한 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임강사폐지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내 전임강사 직급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진행상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8.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의 구분 상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을 '교수 · 부교수 ·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는 사항입니다. 동 법령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규학교및 학점인정 문의

질의

○ 북경00대학교 한국e- 캠퍼스라고 있는데 정규학교이면 국내에서도 학점인정이 되는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 [대학지원과]

○ 먼저 외국대학은 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설립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동 학력의 인정 여부 판단은 별도의 인정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대학, 기업 등)에서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상 인가 여부, 교육과정 내용, 수업연한, 학생의 학점이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그리고 학점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 대학에 편입 시 학점의 인정 범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할 경우 외국대학 졸업 시 학력은 인정하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적자의 편입학 허용 여부 문의

질의

○ 지방의 4년제 대학교입니다. 원래는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였는데 우리학교에 신입학으로 지원하여 1학년을 다니다가 미등록하여 제적당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번에 우리학교 편입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편입지원자격은 갖추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5. [대학지원과]

○ 제적생은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 아니므로 귀 대학의 학칙이나 전형기준에 의하여 편입생으로 응시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 학칙이 정하는 총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적생은 상기 법령을 근거로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학과 편입학 중 어떤 방법이 현재 학생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지 자세히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호학과 편입에 관해 문의

질의

○ 편입을 생각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00대 응급구조과를 졸업했는데요 지금 임상에서 일하고 있구요 편입을 알아보던중에 00대학교 간호학과에 편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양성을 위해 편입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인데요.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하물며 치위생사도 편입조건이 되는데 왜 응급구조사는 될 자격이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9.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학칙(용서 설명 : 대학이 정하는 규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28조제1항②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편입학의 입학정원 및 모집단위는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항에 따르면 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명시하고 고등교육법제23조의2(편입학)은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시말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응시자격이 있으며 대학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 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증명서 관련 질의

질의

○ 졸업일 전에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학이 있는 바, 이 경우 동 졸업증명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예) 졸업일자 : 2009. 02. 25. 졸업증명서 발급일자 : 2009. 01. 28.

○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여부 질의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 인턴과정을 위해 졸업 전에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2. 11.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대학은 학칙이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졸업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사항으로 졸업식 전에 발급된 졸업증명서가 효력이 없다고 우리 부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통상 대학은 졸업식 전날 학적변동을 통해 졸업식 당일 졸업일자가 명시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관련기관의 자격증 발급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간학과의 수업시간에 대하여 문의

질의

○ 학사운영에 주간으로 설립된 학과가 일부 수업을 야간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수업시간에 대한 주간과 야간 시간의 편성기준이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6. 1. [대학지원과]

○ 질문내용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등에 의거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일부수업을 야간시간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정한 학칙에 의해 운영됩니다.

○ 다만, 이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나 담당교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야간 수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산서성에 사원학원의 인정여부 문의

질의

○ 중국 산서성 서안시 사원학원(西安 思源學院)이 중국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규 인가를 받은 대학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7. [대학지원과]

○ 중국 산서성 서안시 사원학원은 우리 부에도 인가가 난 대학이 아니며, 외국기관의 학원은 우리 부에서 인허가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치의예과 수료인데 약대 일반편입 지원가능한지 문의

질의

○ 치의예과 수료하였고 치의학과 1학년 1학기 중퇴하였습니다. 일반편입 지원자격이 4년제 대학 2학년이상 수료면 지원가능한데 제가 치대라서 6년제라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치의예과는 자연과학소속이니 4년제 대학 2년 수료 맞죠? 따라서 약대 일반편입 지원가능한거 맞죠?

회신 회신일 : 2009. 1. 12.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정원내 편입학 지원자격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 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칙에 따라 의치학대 편입학 모집요강(선수과목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편입학 모집요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재입학 문의

질의

○ 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우리 학교로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사실상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여석이 있는 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수학위취득이 될 텐데요.. 혹시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복수로 취득할 경우 차후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3. 24.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입학학기가 같은 두 대학 이상의 대학 학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학기가 다르므로 법령으로 이중학적이나 복수학위취득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에 이중학적 및 복수학위 취득에 관한사항을 학칙에 금지하고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학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학점 인정 여부 문의

질의

○ 특별학점 인정 관련 교양수업으로 영어영역 관련 공인된 어학점수를 가져올 경우 학점인정 여부 문의입니다.

예) 교양영어 6학점(이수해야할 필수학점) 중 5학점만 이수하고 수강신청 없이 1학점은 공인어 학점수를 가져올 경우 취득 점수에 상응하는 학점(영어 1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요.

○ 결론적으로 수강 신청 없이도 학교 규정(지침)만 있다면 외부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대학지원과]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의 교육과정운영

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고등교육법제21조) 자격증(토플, 토익성적 등)을 학칙에 규정한 졸업요건 충족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 자체를 대학의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학 교육 부실화를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대학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합니다.

편입에 따른 학점인증 문의

질의

○ 특수교육학과에 편입을 하려고 보니 편입 요강에 일반편입란이 있고 학사편입란이 있더군요. 4년제 00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을 수료하고, 올해 청소년교육상담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 2년 수료도 2년제 대학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지는 제 이런 학점을 더해서 학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2년제 대학 인정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7. [대학지원과]

○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나뉘며,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졸업자는 학사학위를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4년제 대학의 2학년 수료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대학의 2학년 내지 3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으나,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이므로 학사편입학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 제도로의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의 취득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관련법률(법률 제8조,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학위종류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 교양, 총 학점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동 제도를 시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따라서, 동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방법 및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edubank.kedi.re.kr / 1688-04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입학 여석산출 시 폐과로 인한 캠퍼스간 전과 인원 반영 여부

질의

○ 대학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교에 있던 독어독문학과를 폐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교 독어독문학과에 존재하지 않는 학년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폐과에 따른 특별전과를 통해 본교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본교/분교간의 모집단위 이동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 때, 전과한 인원만큼 편입학여석에서 감해야 하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득이한 사례이고, 우리 대학에서는 캠퍼스간의 전과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 인원을 감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대학지원과]

○ 본교/분교간 학과 통폐합에 따라 특별전과를 실시하였고 분교에 제적자로 인하여 여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문의하셨습니다.

○ 먼저 학교 학생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대학이 학과 통폐합에 따라 분교 재학생이 입학 당시 분교 해당학과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학칙에 규정하고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귀 대학에 편입학 및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집니다.

○ 아울러, 분교에서 제적자로 인한 여석은 분교에서 학교가 법령에 의거 자율적으로 모집단위별로 배분할 수 있으며, 본교에서 미충원여석 및 제적한 자의 여석을 활용하여 분교로부터 본교로 전과를 허용할 경우 본교의 여석을 전과 학생수만큼 감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대학 재학중 한국대학교 편입이 가능한가요?

질의

○ 필리핀에서 공등학교를 나와 현재 UP에 재학중입니다(1학년). 그런데 한국대학으로의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필리핀의 학제가 한국과 달라 필리핀대학교 재학중 한국대학으로의 편입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6. [대학지원과]

○ 먼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학제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대한민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6-3-3년(12학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교육제도와 같습니다.)

▷ 필리핀 : 사립과 공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만 6세에 초등학교 과정을 시작하여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즉,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초등 과정을 마치고 고등 과정으로 바로 이어지며 고등 과정을 마친 나이는 16세나 17세가 됩니다. (국제 학교인 경우는 대부분 미국의 학제를 따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33조 대학입학자격에 의거하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12년학제를 졸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의 경우 국내와 필리핀에서 취득한 학력은 통합 10학년과 대학1학년으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12학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학력인정 심사를 받기 위해 거주지 시도교육청에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대상 자격을 문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희망하시는 대학입학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 질문

질의

○ 중국정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의 개교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입니다. 중국정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귀국해서 교육을 계속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간혹 중국쪽이나 영미권으로 진학할 수업을 받다가 귀국하는 학생의 경우 수업일이나 교과과정이 한국 교육과정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력인정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70조에 의거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동등한 학력 인정여부는 대학이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등 고려하여 대학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력인정 확인 및 편입학 자격확인

질의

○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전문사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편입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2(편입학) 동법 제 51조(편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 70조 1항의 2(외국 ~중략~대학 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력인정 여부 및 국내대학 으로의 편입 가능한지의 문의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명의의 학력인정확인 및 편입학 자격이 있는 학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8.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외국대학은 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설립하는 사항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일본의 교육관계법에 의거 고등교육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2년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으로 사료되나, 학력의 인정은 해당 대학의 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학력인정 절차 및 확인기관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해당국의 학위증(전문대학에 준하는) 및 주재국 공관의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위과 동등하다는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하다면 입학자격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학력인정의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하고 있으므로 편입코자하는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력 인증에 대한 문의

질의

○ 중국에서 대학졸업 후 한국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중국교육청을 통해 인증서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졸업증과 성정표를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 서류들을 어디에 어떤방법으로 제출을 해야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6. 8. [대학지원과]

○ 외국 대학이 수여한 개별 학위를 정부가 그 학력을 인증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외국대학의 수여학위를 국내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학교육협의회 학위검증팀(T:6393-5233)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 동등 자격에 대한 문의

질의

○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 2년(4학기)을 수료하고 캐나다의 대학으로 편입학하여 4학기를 끝내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학사 편입할때 “학사자격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라는 조건이 붙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학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3. [대학지원과]

○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학위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말하며 외국대학을 인정하는 제도나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해당 국가에서의 대학과정의 인가(인증) 여부, 국내대학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 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우리나라에 편,입학 등을 하려면 해당 대학이 수요기관이 되어 검토, 판단하며 외국 교육제도의 다양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학교육협의회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말

씀드리겠습니다.(전화, 02-393-5200/구내 2번)

학점인정에 대한 문의

질의

○ 정원외로 입학하는 외국인 신입생이 동일 대학 내 한국어학당에서 들은 수업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내국인 재학생이 동일 대학 내 언어문화센터에서 수강한 수업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대학지원과]

○ 대학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 (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 · 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 · 편입학, 휴 · 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 · 자퇴 · 제적 · 유급 · 수료 · 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당의 경우 통상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학점인정에 대해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의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내용은 정규학기가 아닌, 방학중 해외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성적도 학점인정이 가능한지요? 어학연수 수료증만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5. [대학지원과]

○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3.28〉

1. 국내 · 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어학연수 등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점인정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 및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개정 할 수 있는바 각 대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대학교에 대한 문의

질의

○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편입을 하거나 취업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 대학중에 한국에서 학력 인정이 되는 대학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이면 어떤 대학이라도 한국에서 학력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한국에서 학력 인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야 할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대학지원과]

○ 필리핀 대학 및 해외대학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서 별도로 학력인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학점인정여부는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서 정한 각 대학의 학칙 및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개정 할 수 있는바 각 해당 대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3.28〉

1. 국내 · 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제23조의2 (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1. 국내 · 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한의학과 학사편입 관련 문의

질의

○ 한의학과 학사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편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인지, 계속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8.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편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집전형 및 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편입학전형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사편입학은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사편입의 경우 입학정원의 5%,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동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학칙 및 편입학전형계획에 의거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규모 및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편입학은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사항이므로 모집단위별 편입학 인원 및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코자 하는 해당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대학 졸업 인정에 대한 문의

질의

○ 영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면 인정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5.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은 해당 국가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므로, 국내법 교육과정에 미치지 않는 학위에 대하여는 인정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외국에서 정식 설립인가 받아 대학의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도 동등 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교원이 심사한 학위논문의 효력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의 정관에는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휴직 상태에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점이 있는 강의를 하고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하여 학위가 수여된경우 학점및학위의 효력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7.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은 휴직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며, 휴직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시정조치하고거나 복직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정관에 휴직중인 교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정관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휴직을 하고도 해당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등은 해당대학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 성적인정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대학 휴학생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휴학생이 자비로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올 경우 성적인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군입대자 성적인정이 가능하게 됨에따라 휴학상태에서도 성적을 취득할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휴학상태에서 소속학교 계절학기 수업참여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7. [대학지원과]

○ 대학의 휴학생 성적인정 여부는 학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으며, 학칙에는 입학, 복학, 휴학, 수료, 졸업 및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는 학칙에 따라 학사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 바, 해당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1. 국내 · 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①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 ·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공익수의사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 · 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휴학생의 학정상태 질의

질의

○ 학생이 휴학을 한 상태에서 복학을 하지 않아 휴학연장원 제출 및 복학 안내를 하고 이때 학생의 학적상태를 미복학생과 휴학생 중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5.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학생의 학적상태를 미복학생과 휴학생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하여 해당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자의 학력인정 여부 문의

질의

○ 회사에서 직원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에 '전문대졸 이상이라' 하여 4 학년 1 학기를 마치고 2008년 8월 26일 부터 2009 년 8 월 31 일 까지 휴학중인 자가 서류를 접수 하였는바, 이 자의 요건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시한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학년 1학기 과정을 수료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동등학력이 있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기업의 직원모집 공고의 자격기준 "전문대졸 이상" 이 전문대학 이상의 동등학력이 있는 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업에 판단해야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교육과학부 인정 기관 여부 문의

질의

○ 한국폴리텍대학(구.기능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국내정규 대학인지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0.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이며,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은 노동부에서 인가한 기능대학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입니다. 기능대학은 학위과정인 다기

능기술자과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교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실시에 대한 문의

질의

○ 지방의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몇 년 안 월급이 오르지 않아 학교에 문의한 결과 임그피크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 등의 필요에 따라 기업체에서 도입한 제도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준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임금피크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6. 12.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교의 정관 및 임금피크제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이사회 의결,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립대학교 교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급여지급방식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결여부 질의

질의

○ 사립대학에서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 예·결산도 중요하므로 교비와 법인회계 예.결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비와 법인회계를 제외한 기타회계(예를 들면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 특별회계 등) 예.결산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4. [사립대학지원과]

○ 산학협력단 등은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은 그 내부에 이사회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므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한 별도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연계하여 볼때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 학교의 장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학교법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회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 대한 문의

질의

○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이사회의장에게 캐스팅보트를 인정하는지 여부? 가부동수인 경우에 헌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부결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와 이사회의장의 경우에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4.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18조에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가부동수인 경우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이사회 의장은 이사중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게 되며, 이사와 동등하게 투표권이 있으며, 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사회의에 관한 질의

질의

○ 학교법인 이사회 인원수가 8인입니다(이사장 포함) 학교 정관에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사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때 ② 항을 보면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때 이사회의를 개최할 시 과반수 찬성한 이사들로만 개최하는가?

○ 또는 8명 전원이 이사회의를 개최하는가 ? 반대한 이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그리고 찬성한 이사들 중 이사장이 없을 경우는 누가 이사장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3. [사립대학지원과]

○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때 이사회의를 개최할 시 과반수 찬성한 이사들로만 개최하는가? 또는 8명 전원이 이사회의를 개최하는가 ? 반대한 이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대상이며, 이사회를 소집한 과반수이사의 이사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재적이사 전원에게 이사회 개최 목적 일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찬성한 이사들 중 이사장이 없을 경우는 누가 이사장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가? =〉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이사들 중 호선으로 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이 기본재산포함되는지?

질의

○ 통상적인 임차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사학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기본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이 절차가 까다롭다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이 기본재산포함되는지요? 이 경우 이사회결의 하여도 귀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요? (임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부분의 부채성 보증금)

회신 회신일 : 2008. 12. 28.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건물, 토지)과 학교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종료하면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하는 일종의 부채로 대차대조표 상 기타고정부채(2220) 및 임대보증금(2221)에 해당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7조 및 별표1 참조)

○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부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이사체제의 대학교 학교회계 사용에 대한 문의

질의

○ 직원 간의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교직원의 징계권이 법인에 있다 보니 법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이 내려져 해당직원이 감봉3개월 처분은 받아 이것이 부당하다고 학교법인(임시이사장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와 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 학교가 정상적인 법인이 아닌 임시이사체제이고 법인 전입금이 전현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인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시 변호사 및 노무사 관련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3.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분되며,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 가능여부 질의

질의

○ 외국의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받아 교지를 매입하고 교실 등을 건축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오다 관할기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이 교지와 교실 등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9. [사립대학지원과]

○ 재산처분에 따른 학생교육활동 및 관계법령의 교지 및 교사 기준에 문제가 없을 때,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처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독지가가 성금을 기탁할 때 교육용으로 한정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성금이 당시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되었다면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타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는 바, 재산의 처분금은 교비회계로 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이사가 연임을 원치 않을 경우 후임이사 선임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2009년 6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현재 재직이사가 연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후임이사의 선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8.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학교법인 정관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본인을 제척하고 있음(이사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문의 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제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

전문대학원설립에 필요한 조건

질의

○ 현재 조그마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가를 받아 신학전문대학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신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3. 27.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요건 및 절차는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정보자료실, 학술연구정책실, 번호 4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이사 선임 관련 문의

질의

○ 학교법인 00학원은 이사정수 21명 중, 정이사 3명, 임시이사 14명으로 현재 재적이사 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이사 구성상태에서 정이사의 선출이 가능합니까? 과거 임시이사가 정이사에 비해 현저히 적을때에는 정이사 선임을 하였으나, 지금과 같이 대부분이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체계에선 정이사 선임이 어떻게 되는지요?

○ 만일 현재의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한 후, 추천된 후보중에서 개방이사를 현재의 이사회가 선임한다면, 이사선임이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정이사 선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이사 및 정이사 동거체제의 이사회에서 후임 정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이전이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 생겨서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일부 또는 전부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특별법 제17조 2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적용받지 않으면 4년제든 2년제든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

○ 또한 고등교육법과 다른 법에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못하게 하는 규제는 없습니까 ?

회신 회신일 : 2009. 2. 17. [사립대학지원과]

○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특별법은 학교이전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배제하기에 지방대학의 반환공여지역으로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 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관한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고 대학 이전의기본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 교사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커피전문점을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서 말하는 교육연구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교사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1.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용기본재산 중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교육용기본재산 중 학교급식시설 등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라든가 구내매점 등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용 기본재산 내 임대 운영사업의 허용 기준은

1.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될 것.
2. 학생 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3.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 가능할 것 이라고 할 것인 바,

○ 학생 복지 및 후생 편의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설립 과정에 대해 문의

질의

○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0. [사립대학지원과]

○ 질의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조항은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제2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고등교육법 제55조 (목적)

○ 관련 법령은 한국법령정보센터에서(http://www.law.go.kr)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공사 관련 후원금 법인회계접수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

질의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비는 정책 상 국가와 수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시공되고, 시공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전문기업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는 개인일수도 있지만 기업 또는 학교 등 대규모 조직인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시공예정 설비의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통은 입찰제도를 활용합니다.

1. 수혜자의 전문기업 선정과정에 대하여
   - 신재생에너지설비 수혜자가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시공계획을 수립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업을 선정할 때 내부 규정 상 명시된 입찰 등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2. 전문기업의 후원금에 대하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혜자인 해당 사립대학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여건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동일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고 해당 전문기업으로부터 약6억원에 이

르는 후원금(발전기금)을 접수하였습니다. 발전기금액수는 수혜자 부담금(50%)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후원금을 접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비 전체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의 시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시공할 때마다 접수한 후원금이 적법한지의 여부

3. 후원금의 법인회계 접수에 대하여

- 수혜자의 부담금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고, 전문기업에서 납부한 후원금은 법인회계로 납부되어 결과적으로 교비가 법인회계로 건너간 꼴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교비의 법인전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30. [사립대학지원과]

○ 수혜자의 전문기업 선정과정에 대하여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칙에 규정하지 않니하는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기업의 후원금에 대하여 -〉 후원금(기부금)이 출연자의 순수한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 또는 대가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 적법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후원금의 법인회계 접수에 대하여 -〉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에 따라 이의 적법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수가 없어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업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질의

○ 학교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학교기업이 일반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 처리가 가능합니까?(교육과학기술부 승인사항인지요?)

○ 법인 수익용재산(토지)을 대학에 임대가 가능한지요?

○ 교비회계의 10% 이하 투자의 범위는?

- 학교기업 출범년도에 10%를 넘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

- 만약 초기시설 구축비를 몇년으로 나누어 분할 지급한다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08. 12. 3.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의무부담의 주체는 학교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의 부속시설인 학교기업은 융자 등 의무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수익용재산을 대학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는 회계간 전출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10%를 넘는 시설 구축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설립시 시설공사 발주 관련 문의

질의

○ 학교법인 설립 전에 시설공사 발주는 임의로 할 수 있고, 학교법인 설립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적용을 받는다하는데 이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개원 전후에 따라서 발주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5.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33조에 의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6조는 학교법인의 계약담당자가 법인 이사장임을 밝히고 있고, 학교법인의 계약은 동 규칙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제4절 '계약'이 적용되며, 각 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 전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설립 후에는 계약 체결 및 공사의 발주 등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 및 개별조항에서 준용을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 매각 관련 문의

질의

○ 본인은 부동산개발회사에 근무하는 중 학교법인 소유의 통지 매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 대상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학교 건물 또는 운동장, 주차장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다 보니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이사회 등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적지아니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6.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 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사립학교법' 제16조)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일부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 처분('사립학교법' 제28조)하고, 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증자 후 보유현황을 보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5조)합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및 임원과 관련하여 문의

질의

○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의 기산점은 이사회의 결의 시기,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시기, 학교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시기 중 어느 것으로 기산하는가?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임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임기가 상이한 경우 즉, 이사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임기는 2005. 6. 8.~2009. 6. 7.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임기는 2005. 7. 21.~2009. 6. 7.인 경우에 어떤 것이 유효한 임원의 임기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인데 학교의 장이 이미 임원으로서 교과부의 임원승인을 받은 임

기가 정하여진 경우, 다시 말하면 2009. 6. 7.까지 임원으로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 임원의 임기 중에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여 학교의 장의 임기가 2009. 8. 31.까지이어서 당연직 이사로서의 임기가 2009. 8. 31.까지인 경우에 학교의 장으로서 위 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지요.

○ 학교법인 임원중 과반수가 찬동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사회 소집승인을 신청하여 00년 1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회소집승인을 받은 후 이사000외 4명이 00년 2월 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승인을 받은 위 이사000외 4명은 일회적인 이사회 소집권한 만을 부여받은 것인지 아니며 이사회 소집승인 이후 모든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 받은 것인지 여부

○ 만약, 위 00년 2월 1일의 이사회 개최 이후에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위 00년 2월 1일의 이사회가 무효라는 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사 000외 4명이 00년 1월 1일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이사회소집승인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는 누가 되는지?

○ 법원의 결정으로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된 이사회의 결의 내용 중 임원의 해임에 관한 안건에 있는데, 해임된 임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권한(의결권등)이 회복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3. [사립대학지원과]

○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합니다. 따라서 임기는 관할청에서 승인한 기간입니다.

○ 학교의 장으로 선임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정관에 당연직이사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기간입니다.

○ 관할청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은 한차례의 이사회에 대한 소집승인입니다.

○ 이사회소집승인을 받고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더이상 이를 근거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 이사장직무대행자입니다.

○ 무효인 이사회에서 해임결정된 임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임원으로서 모든 권한을 회복합니다.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관련 질의

질의

○ 등기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임원취임승인 신청 시에 첨부서면 관련하여 학교법인에서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임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낙서, 신원조회회보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취임승낙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첨부서면에 취임승낙서 등이 반드시 요구되는지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임원취임승인에 대한 심사에 관련하여 첨부된 이사회의사록 심사 시 의사록상의 의결정족수와 결과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는지와 이에 대한 진정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하시는지요?

○ 또한 임원의 취임승낙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인(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으로 임원취임승낙 의사의 확인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2. [사립대학지원과]

○ 임원취임승인 신청 시에 첨부서류(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으로 취임하며, 관할청에서 임원 취임승인시 확인 서류로 각서, 이력서, 취임승낙서, 신원조사회보서, 이사회회의록, 기타 증빙서(교육경력증명서, 겸직동의서 등)를 제출 받고 있음. (근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현재 증빙서류로 제출 받고 있지 않으며, 취임승낙서의 경우 임원을 위촉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취임 승낙서를 제출 확인하고 있음 (현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중 일부 사항은 잘못기재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 함)

○ 임원취임승인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 관할청의 승인, 인가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결정족수,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간혹 대리 서명등은 종전의 서명과 달라 서로 확인 검증할 수 있을 뿐임.

-〉 임원의 취임승낙서의 경우 사인(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고 있으며, 도장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과 대조하는 등의 확인은 하고 있지 않음. (기본적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취임승인하는 것임)

학교법인 임원 해임에 관한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 조항이 있는데 반해 사립학교법에는 당연 퇴직 조항이 없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입니다.

1. 현 학교법인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직이 당연 해임된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2. 현 학교법인 임원이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3. 현 학교법인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유효한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2.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상에 임원의 당연 해임 규정이 없음

○ 사립학교법 상에 임원의 당연 해임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이 자진사임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의결을 하여야 함

○ 해임 및 사임하기 전까지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다는 것이 법률가의 다수 의견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여겨짐.

* 참고로, 만약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사임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에서는 법인이사회에 시정(자진사퇴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22조 제5호에 "4급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수 없다" 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4급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자가 퇴직을 하면 학교법인 임원을 당연퇴직하여야 하는지?

○ 사립학교 교장으로서 당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자가 퇴직을 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을 당연퇴직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5. [사립대학지원과]

○ 4급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사립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의 대학 차이

질의

○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약(위탁운영)을 체결한 후, 해당 학교법인의 대학교 총장으로 계약위임이나 승계(?)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다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법인 대학교 총장을 별도의 계약(위탁운영) 주체로 보는, 제3자로 보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 가능하지 않다면, 계약(위탁운영) 체결 후 학교법인 이사장의 위임장(예시. ○○대학교 총장에게 본 계약 건의 회계처리를 위임한다)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해당 법인의 대학교 총장 명의 계좌로의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2.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내지 제40조에서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동 규칙 제60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 주체와 법인인감 사용에 대하여 문의

질의

○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과 모든 이사들이 임기 만료가 되었는데, 임원들간의 이해관계.사표.사망 등으로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미성립으로 정상적 이사회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는 학사업무 파행 우려, 경영악화 우려 등 염려되는 부분이 적잖은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누가 학교를 운영해야 되나요?

○ 임시이사를 교과부에 신청(추천)하면서 그 신청 승인 서류에 학교법인 인감 직인이 반드시 날인이 되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3. 10. [사립대학지원과]

○ 대법원 판례 1996.12.10 선고 96다 37206 판결에 따라, 후임이사 선임시 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사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됨

○ 통상적으로 문서에는 그 발신기관을 증명하는 관인(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학교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

질의

○ 학교의 교육용재산(개발제한구역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려합니다. 골프장운영은 수익용재산으로 운영계획이므로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데 변경 시점은 언제해야하나요?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등의 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난 뒤 공사착공전에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도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0.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은

- 재산 취득재원에 교비의 유입이 없어야 하고
- 교지교사 확보율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 용도변경에 따른 교육활동상의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타부처의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착공전에 우리 부에 기본재산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이 추진될수 없게 되므로

○ 먼저 우리부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부동산 매입에 대한 문의

질의

○ 우리 대학은 항공.예술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학부의 경우 공군ROTC가 있고 항공조종사를 양성하기위해, 예술학부(디자인/영상)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및 취업을 위한 일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에 미국 거주 독지가로부터 부동산(건물)을 증여받아 동 소재지에서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학교는 학생들의 해외연수 및 교육확대를 도모하고자 기숙사를 교비로 매입하였고 점차적으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1. 교비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항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다른 대학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6.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지, 회계의 구분, 교비회계 수입의 다른 회계 전출·대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각 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비회계 수입으로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므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취득할 때에는 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떠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우리 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임과 사임의 차이점 및 절차와 효과에 대한 문의

질의

○ 해임과 사임의 차이점 및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5. [사립대학지원과]

○ 해임은 이사회에서 별도 의결 절차에 따라 해임하는 것이며, 사임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사임의 경우 본인의 사임의사가 법인사무국에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된다할 수 있음

현직 사립대학교 교수의 법인경영 관련 문의

질의

○ 현직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인의 대주주로서 (등기상 사외이사로서) 법인을 경영할 수 있는지?

○ 법인 경영이 가능하다면 근 근거(법 규정, 학칙등)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 교육 공무원법의 적용은 안 받는가요?

○ 만약 법인 경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 [사립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를 금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전임강사 이상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무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립대학 교원의 겸직허가 및 위반에 따른 조치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대학의 장이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 지도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 문의

질의

○ 저희 학교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시는 동영상을 올려 일반인들이 볼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것으로 인한 수입은 전혀 없고 홍보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그 강의를 중국인들도 볼수 있도록 중국어로 번역하여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번역비, 편집비, 도메인 등록비 등 여러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떤 계정으로 지출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사립대학지원과]

○ 위 사례에 대하여 현행 특례규칙 계정상 지출금액이 과다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집기비품”으로 하고, 지출금액이 소액으로 비용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타학생경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1. 특례규칙상 집기비품(1315)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이상의 전산프로그램 등
2. 학교 내부적으로 “ ~○○금액 이하는 비용처리 할 수 있다”라는 회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 용어 및 의미 해석에 대한 문의

질의

○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과반수”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인지요?(이사정수가 6명일 때) 사전적 의미나 관련 사례를 보면 절반이 넘는 수 즉 1/2의 이상이 아닌 초과로 보고 있고(4, 5, 6명), 저희 관할청 이사정수대비 의결정족수 예시에는 1/2을 포함하여 과반수(3, 4, 5, 6명)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의결 정족수가 “소수점”으로 나왔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1. [사립대학지원과]

○ “과반수”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인지요?(이사정수가 6명일때) =〉 이사정수가 6명일 때 과반수는 4명 이상 임(3명은 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함)

○ 의결 정족수가 “소수점”으로 나왔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하는 것인지요? =〉 의결정족수의 경우 사람을 소숫점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통상 절상하여 처리함 예 : 3.5 인 경우 4인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3항에서 이사전원이란?

질의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3항의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때는 예외로 한다”에서 이사 전원이란 재적이사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관에 명시된 이사정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2. [사립대학지원과]

○ 재적이사 전원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감사의 직무에 관한 문의

질의

○ 감사의 보고는 어떤 절차로 이사회에 보고 하는지 아니면 이사장에게만 보고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또 이사회에 보고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 감사 결과가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한 관할청에도 동 사항을 보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감사 결과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면 되고,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호선의 의미

질의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장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호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호선을 의결행위로 보아 투표 결과 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투표 관례상최다수 득표자가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사립대학지원과]

○ 이사장 선임을 정관 상에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호선의 의미는 위원들간에 서로 투표하여 위원들 중에 어떠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후보로 추천되는 자를 제척 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방식에서 반드시 표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표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 : 과반수 이상의 찬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사장에 대한 안건상정시 이사회 소집권자의 건

질의

○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사장에 대한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도 이사장이 소집권자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3.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 만약,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장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연명으로 이사장의 회의소집에 대한 기피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임원(이사)의 해임 의결 관련 문의

질의

○ 학교법인임원(사립학교 이사)이 불법행위로 처벌받고 사임서를 제출하고 장기간 이사회에 참석치 않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이사회를 거쳐 해임의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임서에 의한 자연해임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5.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대법원 판례('92.7.24, 선고 92다749 판결)로 볼 경우,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문서)가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함으로 사임서 제출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의 해임 절차는 보완적 행정행위임)

산학협력단 운영 문의

질의

○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과 별도의 정관이 필요한지요? 정관의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귀 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사립대학지원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에 의거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으며, 동법 제26조 각호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

질의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를 반드시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립학교의 계약업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데 제4절 계약편을 보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즉 2천만원~5천만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된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0.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60조에서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용자산(부동산)를교육용자산으로 전환에 대해 문의

질의

○ 우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2001년 이전하면서 기존 교육용시설이었던 부동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건물을 양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명도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이전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시 항소하여 계속 명도이전 분쟁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건물을 명도이전을 받을 경우 교육용시설로 전환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바 있으나,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아직 교육용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분쟁중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상태에서)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 이미 교육시설은 100%이상 확보하여 김포로 이전하였는데 서울(안암동)에서 교육(대학원 등)을 할 수 있는지요?

○ 정규수업이 아닌 교양과정개설 또는 대학원과정 일부개설(특수대학원등) 가능한지요? 가

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교육용 시설로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요?

○ 교육용시설로 수익사업(임대 등)을 하였을경우 수익금은 대학회계인지 아니면 법인회계로 처리해야 하는지?

○ 대학회계일 경우 별도 수익사업규정이나 사업자 등록증의 수입사업명시 등 주무관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세금납부주체도 대학인지요?

○ 교육용시설로 전환 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1. [사립대학지원과]

○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 대상 재산이 학생 교육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다면 임차인의 유 · 무와 관계없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관할청의 위치변경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시설을 100% 김포로 이전하였는데 서울에서 정규수업이 아닌 교양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일부(특수대학원) 개설이 가능한지? =〉 관할청에 위치변경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교육용 시설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 교육용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 시설등으로 활용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 수익사업이 가능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교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의 대여료 및 사용료(5322)에 계상하고,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수입(2221)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교육용으로 용도변경시 절차는? =〉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학교법인 재산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용재산(토지)의 교육용지 전환 관련 문의

질의

○ 학교법인에서 보유중인 수익용재산(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대학의 교육용지로 전환시 대학에서 토지대금(구입가:감정가의1/3)을 법인에 줄 수 있는지요?

○ 현재 수익용재산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 교육용지로 전환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사립대학지원과]

○ 교육용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모두 학교법인이 소유의 주체입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에 의한 용도변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교육에 직접 활용 되는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에 직접 활용 되지 않는 기본재산은 법 28조에 의거 관계법령의 제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신학교 설립 및 절차 문의

질의

○ 교단 또는 교회차원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이 아닌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립 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신학교 자체에서 등록금을 산정하여 입학생들에게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4. 14.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학교법인 설립허가, 대학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술연구정책실〉번호 4번에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안내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 이전 건 문의

질의

○ 이미 준공되어진 건물을 인수하여 학교용도로 이용하고자 할때 학교이전에 문제가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이 이전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지, 교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예정지가 학교로 도시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면적은 학생수와 학생들의 계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사선임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의

질의

○ 학교법인 이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의결 정족수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7. [사립대학지원과]

○ 이사회 의결 정족수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결정족수의 예외규정을 둔 사례는 보지 못하였으나

○ 예들들어, 법인 정관으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아닌 이사정수의 2/3로 강화하는 규정을 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사회자 지정?

질의

○ 재적이사 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이사장 및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소집 승인 신청을 하여 관할청에서 승인하였을 경우

○ 이때 이사장 자신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서

1. 제척대상자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2. 제척대상자인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면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자가 되는지?
3.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정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2. [사립대학지원과]

○ 만일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정관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의 의장일 될 수가 있다고 보며, 통상적으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제척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참석이사들이 논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전원 폐지 움직임에 대해..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주요대학들이 의전원 폐지로 의예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의 꿈이 직결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되며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대학원지원과]

○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민원인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병행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의료인력양성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안정'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수대학원에 대해 문의

질의

○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와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사회적 인정도나 국가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점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2. 2.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 종류 및 학위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도적으로 분류됩니다.

가. 대학원의 종류(고등교육법 제29조의2)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나. 대학원 종류별 수여학위의 종류(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 및 제46조)

1) 일반대학원 : 학술학위(석사, 박사)

2) 전문대학원 : 전문학위(석사, 박사 가능)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3) 특수대학원 : 전문학위(석사)

○ 또한, 국가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점 등은 각 수요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학사 교육부 인정 여부

질의

○ 대학은 학과에 따라서 학사학위가 3년, 4년, 5년 등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과는 학사학위가 모두 3년제로 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3년 학사는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아무리 학사 학위라도 4년제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호주 교육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학교며 졸업장인데 정말로 대학원 입학이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입학이 불가능한데 학교측의 착오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하여 석사학위까지 받았다면, 그것도 모두 취소가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9.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학원 입학절차에 관한 답변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해당 대학이 학사학위 및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무 입학자격 자의 석사학위 취득 처리에 관한 답변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당해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석사학위를 당연무효 처리한 판례(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더22671 판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협동과정)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에서 2항과 관련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8. 6. [대학원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협동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교육과정 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기준 등에 대하여 매년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통해 각 대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정계획에서 정한 기준 충족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바,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 자료(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술연구정책실->'2010학년도 대학원등 설치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 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차별적인 로스쿨(law school) 입학요강 문제..여자들은 모든 로스쿨 지원가능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이 내년에 개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특정 대학 한곳에서만 특정 성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특정 성별을 지원조차 거부하는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다 보통 여대의 경우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 과정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많이들 뽑고 있다. 특히나 로스쿨은 하나의 직업선택과 사법부와 행정부 담당 공무담임권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이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이 선발되어지는데 로스쿨을 나와야만이 변호사가 될수 있고 사법부의 판사가 될수 있고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검사가 될수 있는것이다. 여자들은 어떠한 로스쿨도 지원할수 있지만 남성은 지원하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런 근거없이 명백하게 남성에게 불합리한 입학정원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차별적인 로스쿨의 입학요강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6.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의거,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바, 해당 대학은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은 해당 교육기관의 법학 교육과 관련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해당 대학이 여대라는 이유로 이를 심사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의무를 강제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 관련 문의

질의

○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대학들이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칙상 학과별/계열별 입학정원이 아닌 일반대학원 총입학정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일반과정, 학연과정, 학과간협동과정으로 분리하여 정원관리)이와 관련하여 매년 4월 1일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조사시 일반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열별 입학정원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정원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입력되면 학생선발도 이 일반과정의 경우 계열별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만 선발 가능한지 아니면 대학원이 학칙상 자체적으로 총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한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이 있더라도 학연과정이나 학과간 협동과정을 제외한 일반과정 대학원 총정원만 넘지 않는다면 위에 교과부에 보고한 계열별 입학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요?

○ 대학의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일반대학원 일반과정의 경우 총정원제로 운영(학연이나 학과간 협동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열별 입학정원을 정하는데 어떤 지침

이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운영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31.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위과정별,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열별 입학정원 구분은 별도의 지침이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교육여건 및 사회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통계)」 조사는 매년 학생 선발 이후인 4.1.자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각 학교의 학생정원 조정 및 그에 따른 선발 결과가 보고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질의

○ 학부의 전공이 없을 경우, 일반대학원 내에 석,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는지요? 예컨대, 사회적인 신규 수요로 A라는 전공의 석,박사과정을 대학에 개설하고자 하나, 학부에 A와 관련된 전공이 없을 경우, 일반대학원 내에 석,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학부과정이 없음에도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대학교에서 일반대학원 내에 석,박사과정을 설치 운영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혹은 학연산 협동과정 등을 통해 정부출연기관 등과 함께 석,박사과정을 개설하면 학부에 전공과 상관없이 신설 가능한지와 정원을 확보하려면 기존 일반대학원의 정원 내에서 신규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교원수나 교육시설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요? 요컨대, 일반대학원에 신규 전공의 석,박사과정을 개설할 때,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학부에 전공이 반드시 있어야만 석, 박사과정의 전공개설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융합학문 등 학부에 전공이 당연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5.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 신규 전공 과정 개설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제2조의3(학과 · 정원 등의 증설 · 증원 기준) 등에서 설치기준 및 조건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조의2제1항 관련 별표1의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서 일반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학과(전공)신설 시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박사과정 학과(전공)신설 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로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학부에 전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대학원 신설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일반대학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전문대학원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대학원 학위 표시와 관련하여

질의

○ 특수대학원의 학위표시는 해당 대학원별로 지정되는지 아니면 각 전공별로 지정되는지 또는 각 학교별 규정에의거해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경영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라고 한다면 석사 학위가 경영(학)석사 인지, 경영컨설팅석사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6. [대학원지원과]

○ 학위표기는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에 의거 법령의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학위표기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원대학교 관련 내용

질의

○ 대학원대학교와 관련된 법률. 제가 “고등교육법”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학원대학교 인가시점과 인가 배경 및 2008년 대학원대학교 현황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대학교 관련 법률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대학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에서 명한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제29조), 제30조에 의거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 대학원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사학위과정을 두지 않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항은 1995년12월 신설(당시 교육법 제109조의3)되어 실제 대학원대학은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었습니다.

○ 현재 통계법상 개별학교의 정보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학원대학의 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이전게시판->정보자료실->‘2007학년도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정원’ 자료 중 대학원입학정원 파일 중 ‘대학원대학’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생긴 대학 법대 재입학

질의

○ 학교공지를 보니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따라 폐과된 법학과의 경우 합격 공지 전 교육과학기술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시 재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던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별도 지침를 알고 싶고 법대재입학을 못할수도 있다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3.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법과대학 재입학 가능 여부에 대하여 우리 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의 법학과(부) 운영과 관련하여, “‘법과대학’ 명칭 사용 및 조직 유지는 2008학년도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 말까지만 가능하고 학사학위과정 폐지 전까지는 법학과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통지한 바(’09. 9. 2.)있습니다. 아울러 각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를 통해 당해 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의 법학과 운영 계획 및 법학과(부) 운영 기한을 설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편입, 재입학 등을 제

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정책에 관해 문의

질의

○ 로스쿨 정책에 관해 법무부에서 로스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이트에서 로스쿨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료와 정책시행하기에 앞서 정책계획안 같은 보도자료 내보내지 않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7.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과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 및 제도 안내->인재정책실->법학전문대학원'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대학원의 우리부 보도자료는 '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에, 정책연구자료 등은 우리부 디지털도서관(http://library.mest.go.kr)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검색하시면 관련자료를 찾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질의

○ 로스쿨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보면 대부분 신체적 취약계층의 지원자격을 장애인 1~3급으로 제한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며 문화적 취약계층이라는 명목으로 농어촌, 탈북자, 난민전형까지 존재합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 유독 장애인에게만 지원자격을 좁게 한정한 것 아닌가요? 저는 청각장애 '5급'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1~3급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특별전형의 취지는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특별전형에 포함된 다른 계층 중 상당수는 장애인4~6급보다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농어촌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는 것이 귀가 들리지 않는 것보다 직업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더 큰 핸디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집요강에서 2가지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1) 장애인4~6급도 로스쿨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과

(2)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인영어시험의 듣기영역을 제외한 부분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2.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특별전형은 관계 법령에 의거(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하여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따라 운영 되는 사항인 바, 실제 개별 대학에 따라 특별전형 대상자의 인정 범위는 차이가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시 확인한 사항입니회신일회신일

다. 따라서 우리 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특정 계층을 특별전형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어학 시험에서 특정 영역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9학년도 입시가 마무리 되면, 입시 주관 기관인 각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력하여 발견되는 제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스쿨 특별전형(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입시에서 차상위계층 여부을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로스쿨 특별전형에서도 역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로 차상위 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이 로스쿨 전형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상위 계층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9. [대학원지원과]

○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구분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과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확인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그 구체적인 선발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하여는 각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학대학원 특별전형시 우리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인 방안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선발에 대한 지원자격 및 지원서류 등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모집요강에 관한 사항은 지원코자하는 법학대학원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박사과정 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

질의

○ 박사과정 마지막학기에 등록한 학생으로 지난 5학기까지 11과목 33학점을 이수하고 이번 마지막 학기에 1과목 3학점(세미나)을 신청(총36학점)하여 논문지도를 받고 있으며, 논문심사를 받기위해 신청한 결과 대학의 규정에 따라 지난 5학기까지 모든 학점(36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논문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저의 경우와 같이 마지막 학기 논문지도 3학점은 인정안되니 다음학기에 논문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인 대학의 경우는 마지막학기에 논문지도 과목이 있어 당연히 학점을 인정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타대학 사례를 수집중)

1. 재학기간중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으로, 박사과정은 36학점을 평균 B학점이상으로 취득한 자(끝)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의 제1항에 의거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정한 학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사논문 제한 기간이 교육법에 명시되었는지요?

질의

○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데 제가 2003년 8월에 00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그 동안 준비해 온 자료와 학습을 토대로 올해 논문을 쓰려고 하니 학교

측에서 수료 후 5년안에 논문을 써야 한다는 국제지역대학원 규정 때문에 영구수료자가 되어 논문 쓸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원 규정은 박사수료 후 10년도 있고 무제한도 있는데, 이런 학교 규정이 교육법에 있는지, 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부할 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평생 교육으로 가는 요즘의 추세에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여겨지며, 또한 5년으로 논문연구 시간을 제한 한다는 것은 박사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연구기간을 인위적, 제도적으로 속박하는 처사라고 여겨지고 박사과정 입학 당시 생긴지 1년도 채 안되어 규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이런 사정을 학교와 계속 이야기 했지만 결론은 안된다여서, 상급행정기관인 교육부에 문의 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8. [대학원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및 논문제출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석사 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려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 사료되므로 해당 대학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질의

○ 교육부고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는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자녀 정원 내 특별전형 시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 폐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이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특별전형자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3호에서 15호에 해당하고 소득계층이 6등급 ~ 12등급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라고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대학원지원과]

○ 우리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학부 입학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기본계획이 대학원 입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원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대상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민의 자녀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방법

질의

○ 서민의 아들의 장래희망이 의사되는 방법이 교육 제도는 고졸후 의대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4년제대학 해당학과 졸업 후 보통 군복무를 마치고 4년제 의대 대학원에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데 약 15년 정도 소요되니 서민의 자녀가 전문의 의사의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현행 의치한의 대학원 제도는 부자의 자녀를 위한 특별코스로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한 제도입니다. 대안으로 입학정원을 없어진 학과 학생수와 참고적 비률을 감안하여 입학정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2. [대학원지원과]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폭넓은 소양을 갖춘 학부졸업생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고교졸업 단계의 지나친 경쟁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할 당시부터 해당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양성체제는 의과대학체제, 의학전문대학원체제 및 양체제 병행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과대학체제로 남아있는 14개 대학과 병행체제로 의과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12개 대학은 여전히 "고교졸업+의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인원 수위조절

질의

○ 교육부에서 석/박사 인원을 매년 정하여 각 학교에 정원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비 석/박사 인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유학파 석/박사 졸업생이 급증하는데 따른 공급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석/박사를 해서 청소부를 하면 큰 손실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큰

낭비입니다. 이러한 점을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께서는 너무나 모르시는 듯 합니다. 석/박사 일자리를 감안하시어, 외국계박사, 국내박사가 적절히 취업할 수 있는 선에서 석/박사 정원수의 수위조절이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2.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알고계신 것과는 달리 우리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각 대학이 환경변화에 스스로 대응하여 적정한 정원조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등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이 정원조정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학원 교육의 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 퇴학없이 석사학위 수여 가능 여부

질의

○ 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있는 바와 같이 석.박사통합과정 도중 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졸업절차를 거친 후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석.박사통합과정 도중에 퇴학하지 않고 필요로 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석사학위를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석.박사통합과정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외국대학에서는 시행되고 있다고 하고, 고등교육법 35조 3항의 통합 과정 중도 퇴학 자에 대해 석사학위 수여할 수 있음에 대한 것을 퇴학 자에 대한 언급뿐이므로 통합 재학 중 석사학위 수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2.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분리로 석사학위 논문 작성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시험 준비 등으로 연구의 계속성을 침해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라고 일부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불가피하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학하는 일부 학생들에 한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 자격

질의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학력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면,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등에서 어느 학위 이상이 있어야 하는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다는 규정이 있는데, 고졸이하로 학위가 없어도 되나요? 또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 3명의 심사위원중 지도교수가 있는데, 석사학위 지도교수는 학위(박사, 또는 석사)가 있어야 하나요? 고졸 이하등 학위가 없어도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6. 4. [대학원지원과]

○ 기재한대로 논문심사위원의 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릅니다. 다만, 상기 법령에서 교원이라함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임강사 이상을 지칭합니다. 또한 학계의 권위자는 해당대학의 대학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논문심사는 학위의 종별과 상관없이 위 사항을 참고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질의

○ 약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력자가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교 3학년 이수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4년 과정을 마친 졸업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약대 편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대학원지원과]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약학대학교 학제개편에 따른 약학대학교 전공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인 학제를 '2+4' 형태로 도입하였습니

다. 2009학년도 부터는 약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학부)로 입학하여 대학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을 치룬 후, 그 성적 및 선수과목 이수 등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후 대학별 전형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011년 2월 수료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1, 2번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동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약학전공교육 대상자 선발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외에도 대학별 선수과목 이수 등 대학별 전형과정에 따라 이루어 지므로, 자세한 전형과정은 대학별로 공지될 전형요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학위인증 문의

질의

○ 2009-전기 신입생중 외국대학 졸업생이 있어 학력조회를 하던중 학생이 졸업한 대학이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지만 학력인증대학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석사학위 입학자격으로 적합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8. [대학원지원과]

○ 해외학위검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 학위검증신청(우측) 〉 공지사항 〉 6,7번을 참고하신 후 회원가입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학위검증팀(02-6393-5235, 5237)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교육부 등록 증빙서

질의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 교육부 등록 증빙서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교육부 등록 증빙서를 함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Oregon State University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7. [대학원지원과]

○ 민원인께서는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종합정보시스템(www.doctorinformation.or.kr, ☎3460-5500) 〉 2.외국박사학위신고에서 관련자료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검증을 했다거나, 해당 신고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이 해당학위의 검증서 또는 인증서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 석사 학위와 논문에 관하여.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전문 석사학위수여의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논란이 되었던 학위 문제가 전문 석사학위 수여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면 학위 논문을 쓰지 않아도 전문 석사학위가 취득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술" 석사학위가 아니라 "전문" 석사학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위 수여에 관하여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 별로 서로 다른 학위 수여 학칙이 존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의학전문대학원 학칙에 의해 논문을 써야만 전문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전문 석사 학위 규정이 신설되고 공포가 되면 상위법이 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논문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논문 의무 학칙이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는지, 상위법이 논문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어도, 각 전문대학원 학칙에서 의무로 한다면 이에 대학원생이 따라야만 하는지, 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2. [대학원지원과]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오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에 관해서는 다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칙을 통해 논문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석사학위의 경우, 학칙에 따라 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복수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두 가, 나군으로 분할모집을 하는데 모집요강에 '동일 군 내 타 대학원 복수지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복수지원이 금지되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대학원지원과]

○ 질의하신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학입시 정시모집의 경우 군별지원시 복수지원은 제한하고 있으나(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대학원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 등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군별모집 또는 복수지원 제한 역시 각 대학에서 모집요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지원코자 하는 대학원에 복수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질의

○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정원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정원을 다시 박사과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특수대학원 석사입학 정원 3명을 일반대학원 석사 3명으로 전환하고 다시 이를 박사 2명으로 변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일반대학원 석, 박사 전환 케이스는 보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특수대학원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요? 만약 특수대학원 정원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교육과학부에 정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매년 주기적으로 전환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언제이고 어디다 제출을 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8.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총입학정원 범위내에서 대학원별로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학원간 또는 석·박사학위 과정간 정원 조정은 학칙에 의거 가능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학칙 개정시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14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는 등 자체조정시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3항에 의거 자체조정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에는 최소 7명 이상의 관련분야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중 1/2이상(7명중 4명이상) 은 일정수준 연구업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최근 5년이내에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2편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 이상의 논문발표 실적)

☞ 연구업적 인정기준등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술연구정책실에 게시되어 있는 「2010학년도 대학원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을 참조바랍니다.

학위 확인

질의

○ 동 단체의 주요멤버의 한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자칭하는데 2000년 무렵에 국외로

출국한 사실도 없으면서 느닷없이 미국 모 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본 단체 경영상 학위취득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전기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9. 23. [대학원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 논문 등을 등재토록 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명예박사학위는 해당 대학의 학술발전의 공헌 등을 이유로 개별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수여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명예박사학위 사실을 확인코자 하는 경우 취득하신 해당 대학에 수여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위인정관련

질의

○ 저는 한국에서 대학(학사)을 마치고, 이탈리아에서 국립음악원(CONSERVATORIO)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신 분들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이탈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학교육협회, 대사관, 교육기관(예:대학교) 등에서는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졸업장이 석사학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석사학위 인정은 각 기관 권한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만약 없다면 학위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10. 10. [대학원지원과]

○ 세계 각국의 학제, 학위제도가 다양하여 각국의 학위를 우리나라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학위를 국내의 동등한 학위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은 해당국의 학제, 교육과정 내용,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사가 되기위한 방법

질의

○ 로스쿨을 통해 검사가 되는 되는 과정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7. [대학원지원과]

○ 로스쿨이란 다양한 학부전공자와 사회활동을 한 사람을 뽑아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체제로 3년제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07.7.3.)함에 따라 2007년도에 시행령 제정, 총 입학정원 결정 및 인가기준 마련, 2008년도에 법학적성시험 시행 및 인가심사를 거쳐 2009년도 3월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총 입학정원 2,000명) 현재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년간 연수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임용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 현행 법조인 양성 체제와 비교할 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전공과 학과를 불문하고 장기간 1회성 시험인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미성년기인 대입단계에서 우수인재가 특정학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년기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부과정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기초학문 분야에 우수인재가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과정

국립(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저렴하게 운영 요청

질의

○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나눔이라는 기치아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무언가 봉사를 하고 싶다면 일반 서민들이 정말 저렴하게(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 학원(음악, 미술, 도예, 논술 기타등등)수강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5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원의 수강료 등에 대한 사항은 대학 측에서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 시간제수업 관련사항

질의

○ 평생교육원 학점인정(시간제수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처럼 직장인들은 시간제수업의 편리성 때문에 대행업체(교육원)을 통해 시간제수업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시간제수업자는 40%의 오프라인수업을 참석하라고 미참석 시 학점인정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진흥원은 2009년 2월 27일자로 원격교육 학점인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이 기준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일부 학습자께서 기준의 고시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음을 말씀 드리오니 학습자께서도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째, 시간제등록제로 운영하는 대학(오프라인) 등에서 원격교육 허용에 대한 요청이 있어 '09년 1학기부터 일부 원격교육(40%~60%)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둘째, 일부 대학은 원격수업을 위한 시설 및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등록제의 근거 법령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학습자를 모집하고, 부실한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시간제등록제는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을 위해 개설한 강좌에 학칙으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학습자를 모집,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하고 심지어 일부 대학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컨텐츠 및 교육운영 자체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대리수강, 성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그간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하여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히 학습하여 학위를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위의 질까지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현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 측에 시간제 수강 현황을 보고받아 이 중 시간제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수업 시간 중 일부는 출석 수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본 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차례 대학담당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본 기준이 무리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현실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임을 공지해 왔습니다.

○ 본 기준은 학습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이행해야 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시가 지연되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나 본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공문 시달과 구두 권고 등을 통해 본 기준이 시행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 본 기준으로 인해 그간 세워두었던 학습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기준이 엄격히 시행됨으로써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성실하게 학업을 하시는 학습자에게는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학업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9년 1학기 수강인원 제한 및 등록금인상 안내

질의

○ '09년3월2일부터 진행되는 전국 대학교 시간제 수업에 대하여 시간제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수강신청 시는 1학점에 45,000원 수강료가 6만원으로 인상되고 그것도 정원이 90% 감소되어 수업 수강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4. [평생학습정책과]

○ 학교 수업료(시간제등록제 포함)는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정하고 있어 수업료가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을 줄여 수강료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 우리부는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를 법령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료를 올린다는 것은 사설업체에서 수수료를 올려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설업체에서는 알선만 가능하지 수업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소득공제, 환불시 불이익을 받게 됨)

간호학사 취득을 위한 요청

질의

○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간호사 입니다. 3년제 간호대학을 나와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학점은행제 제도 입니다. 하지만 간호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00대학과 **대학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수여방법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인정기관의 사이버 강의 수강 및 국가공인 인증자격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직 간호과는 사이버 강의 및 시간제 등록 수업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간호과도 사이버 강의나 시간제 등록이 어느 과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생교육원을 통한 수업일정을 평일 오후가 아닌 주말 오전이나 주말 오후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7. [평생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료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간제 등록생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분야인력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제나 사이버수업을 통해서는 학점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참고로, 대학의 경우 교원 또는 의료인력 등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교원수급상황과 전문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매년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을 확정하도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교습시간은 평생교육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직접 간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평생교육원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대학 증명서

질의

○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미국오기 전에 00방송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교육기관에서 학사과정 중 1년을 마치고 왔습니다. 현재 다니는 미국 대학에서 한국에서 받은 학점을 트랜스퍼 하도록 요구를 받아서 한국에서 가져간 성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 측에서 00방송아카데미의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인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 00방송아카데미 재학 당시 이수한 학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교양과목의 경우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미국대학교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 제출할 한국방송아카데미의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증명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 [평생학습정책과]

○ 수강하신 내용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과정으로 사료되며, 그럴 경우 이에 대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영문으로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https://www.cb.or.kr) 사이트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질의

○ 최근 대학재학중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에 등록하여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대학 재학 중에도 가능한지요? 타 대학에 사이버로 등록해서, 한개 대학도 아니고 여러개 대학에 자기 전공도 아닌 분야 인데도요. 이런 상황은 평생교육 진흥 또는 학점은행제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7.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 재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해 현재 재학생이 아닌 자(일반 성인학습자)와 대학재학생을 별도로 차별할 근거는 없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공인회계사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 및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시간제등록제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재학생은 학점은행제로 학점취득을 못하게 한다면, 일반 성인학습자만 학점은행제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학습자와 달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하여 해당 시험이나 자격증의 준비를 하여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의 방법으로 재학 중에 취득하신 학점은 자격증 등 각종시험 응시에 필요한 관련 학점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재학 중인 대학의 졸업학점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독학사 및 자격증 시험 일정

질의

○ 독학사 시험은 전부 일요일이고, 자격증 시험도 일요일인 것이 많습니다. 저는 독학사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나 일요일에는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노는 토요일도 생겼으니 공평하게 토요일에도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 [평생학습정책과]

○ 독학사 시험은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일요일을 시행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아 부득이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관 소급 학점 인정 여부

질의

○ 저는 1999년 현재는 ○○대 평생교육원 소속 연기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단지에는 이듬해부터라도 학점 인정제가 확실히 도입되어 편입학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전 수업의 적지 않은 약 3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한학기당 신청하여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할때까지 학점인정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만 말할 뿐 저는 아무런 학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직 고졸자로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점인정제 허가를 그 후에 받았더라도 그 전에 학점인정을 위해 수업을 받았다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평가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평가인정기관은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에서 수학하신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해당 교육과정이 동 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훈련기관)이어야 합니다.

○ 해당 기관이 동 법 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대상이긴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평가인정대상인 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평가인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평가인정기관으로 인가되기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소급하여 학점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질의

○ 이번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 외의 사회복지학과 과목을 부전공으로 했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에 사이버대학 사회복지 2급 이수에 필요한 부전공을 제외한 12학점을 이수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학습자 이수 신청만 해도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지. 아님 학점인정신청과 학습자 이수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2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0. [평생학습정책과]

○ 학부 때 관련과목을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은 총 14과목(필수 10과목+선택 4과목)입니다. 민원인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만을 목표로 한다면, 재학중에 이수한 관련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시간제등록 혹은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 받으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은행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로 증빙하고, 학부에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학습자등록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됨)

* 학점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등(시간제등록으로 학점 이수 : 시간제 성적증명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 전산 확인 가능)

보육교사 자격증을 위한 학위취소

질의

○ 현재 보육교사2급 자격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였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즉 학위 취소 후, 보육실습을 재이수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7.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과목(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자는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하며, 이 요건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자격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자격증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주관기관인 보육자격관리사무국(http://www.ctcm.or.kr, ☎ 1577-5654)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사설업체 환불

질의

○ 직장을 다니면서 학사를 취득하려 "학점은행"이란 곳에 90만원을 들여 등록하였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려 했지만, 강의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에 등록 후 2주정도 꾸준히 하다가 환불하려고 문의하려다 이왕 손해 보려 했습니다. 이제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 기관이란 곳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을 위해 우리부에서 지정한 평가인정기관이 아닌, 원격대학 등에 개설학과 등을 안내해 주고 시간제등록을 대행하여주는 일종의 대행업체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을 통해 강의개설 등 관련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관계없을 것이나, 우리부에서는 동 위탁대행업체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우리부의 지도·감독권이 없고, 소관청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원격대학 학사운영의 내실화와 시간제등록생의 보호를 위하여 사설 위탁대행업체 등을 통한 학생 등록을 금지토록 각 대학에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시간제수업 축소에 대해서

질의

○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자격증 학점이 축소된다고 했던 것들이 확정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한학기 시간제수업을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하다고한 점, 그리고 사이버, 원격대 등의 총 정원의 10%만 시간제생들을 모집을 한다고 한 점 현재 학점은행제도를 사용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0. [평생학습정책과]

○ 1. 자격증 학점 축소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08.2.28자로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내용은 학점인정이 가능한 전체 국가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등급 하향 조정,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개선, 감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국가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이 하향조정되었으며, 2009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 기술사 : 45학점-〉 45학점
- 기능장 : 39학점 -〉 30학점
- 기사 : 30학점 -〉 20학점
- 산업기사 : 24학점 -〉 16학점

○ 다만, 민원인께서 2009년 3월 이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언제 신청하여도 '제9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내년부터 한학기 시간제수업을 최대 12학점까지 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간제등록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현해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으로 정형화 됩니다.

3. 원격대 총 정원의 10%만 시간제등록생을 모집

-〉 10% 시간제등록생 모집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해당되며, 원격대학의 경우 기존대로 시간제등록생 모집인원은 당해연도 편제정원 이내에서 모집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만을 편성되는 모집단위를 신설하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이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여 시간제등록제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확대시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인정범위

질의

○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기관 이라 하면 여기에 학점은행제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학력 인정과 함께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는 부여되는 것이 맞지요? 그럼 고등교육기관에 해당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7.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 이에 따라 동 법령 1항에 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동등학력으로 인정이 되오며,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급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해

질의

○ 저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1급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2급정교사로서 교사 경력도 14년임)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양식과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5. [평생학습정책과]

○ 구 평생교육법에서 1급 취득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자격취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1 "평생교육사 1급"의 2~5호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참고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1급 자격 취득요건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

생교육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재발급 문의

질의

○ 사회교육전문요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 [평생학습정책과]

○ 자격증 발급업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은 2000년 3월 13일자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공포로 평생교육사로 자격증 갱신발급이 가능하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에게 발급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졸업한 대학에 관련 증빙서류(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학교에 비치),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를 갖추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며, 발급에 있어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발급 소요기간은 증빙서류 확인 후 바로 발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교원은 동 자격증을 취득하신 당해 대학 또는 임용기관인 시도교육청에 방문 접수하여 신청 후 2-3일내에 발급이 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격증 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므로 두 자격증에 대해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재학하셨던 대학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활용

질의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자격증과 2급정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그리고 혹시 이런 자격을 소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9.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공포되어 2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이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으며, 동 자격증 발급 업무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평생교육사(前사회교육전문요원)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관리, 네트워킹 및 지원, 교수 학습, 학습상담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기관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하는 것은 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된 문의

질의

○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이 양성기관으로만 해당되는지 학교의 교육과정도 해당이 되는지
2. 정확한 면제 요건(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면제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는 바에 따르면 실습기간이 4주로 나와 있습니다. 4주가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 건지, 꼭 4주를 해야만 하는 건지(4주를 넘기면 안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점심시간포함/불포함)가능한지
4. 발급신청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내야하면 내는 시기는 언제인지
5. 2006년 6월 24일자 받은 공문대로라면 자격증 양식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인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가야 한다면 직인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 [평생학습정책과]

1. 양성과정은 지정양성기관과 학교 교육과정 둘 다 해당됩니다.

2. 평생교육시설에서 종사한 증명서류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단, 2008학번까지 적용이 되며, 2009학번부터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시설의 설립근거법령, 신고증(또는 허가증 등)을 받아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단, 개정법에서는 현장실습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해설자료집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평생교육실습은 법 개정이후 기간이 4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이전과는 달리 하루 8시간 주5일(토·일 휴무) 4주를 연이어 실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실습을 몇 번에 걸쳐 나누어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주 동안 하루에 8시간 이상 주5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2008년도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운영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하여 공지한바 있습니다.
4. 자격증 발급업무는 각 대학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5. 지금까지 직인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실습을 위한 기관 확인

질의

○ 저는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평생교육법 제2조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평생교육법 제2조2호다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의 비전

질의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 시,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의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현 평생교육사들의 활동상태, 자격증만 취득 시 평생교육사로 바로 될 수 있는지,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하는 곳 등을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6. 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나뉘어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각 등급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시설 제외), 학점인정 등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1명 이상

○ 평생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법시행령 제17조)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무

평생교육사 1급 승급에 대하여

질의

○ 평생교육사(2급) 입니다. 1급 승급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곳에

서 5년 이상 근무'라고 하셨는데, 교과기장관이 정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며, 평생교육학습장으로 인정받은 곳에서 근무하면 승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승급 교육(210시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8.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문의하신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아래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 개발 · 평가,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교수업무 등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합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또한 현재 승급과정 운영에 대해 우리부가 위탁기관으로 정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사 승급연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lll.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급과정은 주로 주말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3급 실습 면제 가능 여부

질의

○ 전문대학 졸업자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도 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학점이수 후 지금 현재 근무부서에서 3주이상의 현장실습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4.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의 경우 내년도에 평생교육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면제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법령에서는 문자해득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평생교육법」제19조~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되므로 경력증명서로 실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평생교육실습(4주간)은 3학점 필수과목입니다.

평생교육사 3급 자격 취득

질의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 후 실습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데요. 시청 평생교육관련부서에서 실습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은 질 높은 평생교육사를 양성함으로써 현직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정된 양성기관(7개)별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수강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서에서 실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시하고자 하는 양성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양성기관 현황

- 대구대 부설평생교육원
- 동의대 부설평생교육원
- 백석문화대 부설평생교육원
- 이화여대 부설평생교육원
- 인하대 부설평생교육원
- 전북대 부설평생교육원
- 제주대 부설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양성과정 모집 관련

질의

○ 저는 평생교육사 3급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양성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려고

했는데 수도권과 중부권지정대학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 대학모두 2급과정만 모집을 하는데 3급 과정도 모집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한 자격취득은 현직종사자 중 자격증 없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분야 현직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양성과정 이수를 통해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현직종사자라 함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성인대상으로 평생교육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 자격등급별 양성과정은 평생교육사 2급 및 3급 양성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사 2급 또는 3급 중에서 한 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은 양성기관별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대상조건과 이수학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2급 : 450시간(30학점, 10과목)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졸업생

* 3급 : 315시간(21학점, 7과목)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졸업생
- 평생교육업무 2년, 1년(공무원, 교원)

평생교육사 배치 및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제1항의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1. 제가 알지 못하는 법규정중에 위의 평생교육법 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미배치 하여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가 반드시 전일제(09시부터 18시까지)이어야 하는지, 또는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등의 형태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38조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은 설치·폐쇄 시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사의 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평생교육사의 채용 및 해임변동에 대한 사항이 의무신고임에 소홀히 했다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2. [평생학습정책과]

○ 1. 평생교육사의 의무적 배치가 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통해 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 3월 이후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 신고 또는 교과부에 보고 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평생교육법시행규칙 서식 참조)

2.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평생교육사의 채용 및 해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채용되어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관리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채용하지 않는다면, 평생교육법 제42조 제2호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질의

○ 평생교육사양성을 위한 6개도 양성기관의 등록조건에 평생교육업무 담당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자격증 따려는 건데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8.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2000년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도시 등 유관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현장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평생교육사의 폭발적인 수요급증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임시사업입니다. 즉 신규인력양성이 부족하거나 신규채용이 어려운 기관의 재직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시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25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

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식은 교과부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동안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정규학과 출신에 비해 교육받은 기간이 적으므로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동시에,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자 양성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2만7천여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출되어 과다공급되고 있는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양성기관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법령에 일몰규정을 두지 않았었고 2008년 하반기 양성기관을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았으며,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개정법의 평생교육사 의무배치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실효적인 배치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2년간만 운영하고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한 자격증 취득 기회가 어렵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제도운영상 위와 같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 널리 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강생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유무

질의

○ 저희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은 1. 학부과정(학점으로 인한) 2. 양성자과정(시간 이수)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은 평생교육학과가 있어 두 가지 다 해당 됩니다. 하지만 양성자과정은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강자들의 수강료를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1.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비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문의 입니다.

질의

○ 저는 ○○대학교 교육과를 졸업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습을 하지 못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교원이 3년 이상이면 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현직교원은 아니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교원입니다. 공립유치원교원 경력 3년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실습을 면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5.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실습 면제 조건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1 비고 3호에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타법령에 의한 시설(문체부-박물관, 보건복지부-복지관 등)을 의미하며, 종사한 경력이란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하신 경우를 말합니다.

○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현장실습 면제조건이 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구)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1 평생교육사 2급 7호, 3급 3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 저는 ○○대학교 2009졸업자입니다. 청소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평생교육사 자격 관련하여 구법에 의거하여 8과목을 이수하였고, 2009년 시간제로 2과목을 이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실습면제 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내야 하는지, 자격증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6. [평생학습정책과]

○ 귀하께서는 구법 적용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각 대학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평생교육법」 제77조) 원래는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자(구법 시행규칙 별표1)가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나, 1~2과목 이수하지 못한 학습자 배려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 대학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할 근거는 법령에 없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는 자격증 발급업무가 한 기관으로 일원화되지 못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자격증 취득은 각 대학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기관

질의

○ 평생교육사 자격 학점 이수는 마쳤으나, 졸업 후 최근에서야 평생교육현장실습을 했습니다. 학교에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졸업한 대학교담당자는 졸업생은 학교에서 취급하지 않고 교과부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일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1. 6.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자격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실습을 이수하였다면 관련 증빙서류(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평가서 등)를 갖추어 대학교에 자격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의

질의

○ 저는 2005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데요, 양성기관은 내년 가을이나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

간제등록으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아무리해도 시간제로 실습을 받는 대학을 못 찾겠습니다. 시간제등록으로 실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는 없나요? 그러면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으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8. [평생학습정책과]

○ 먼저 귀하께서 구법 적용자이신지 신법 적용자이신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학교 때 교육공학을 이수했다고 하셨으나 교육공학은 평생교육관련과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법 적용자이신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학들이 시간제로 평생교육실습과목이 개설하지 못한 이유는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이 2009년 3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실습과목이 개설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개설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은 2008.2월부터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 관련과목이 모두 개설된 것은 아니고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대학 편입을 통한 방법, 편입이 아닌 시간제등록을 통한 방법 모두 가능하며, 귀하께서는 4년제를 졸업하셨으므로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3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으로 관련과목을 이수하시면 해당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로 이수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평생교육사 취득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의

○ 대학교 내년3월 졸업예정자 입니다. 02년도부터 평생교육사 관련 수업을 수강하다가 03년 군입대후 05년 제대해서 복학을 하였는데, 이후 관련 수업이 개설이 되지 않아서 혹시 개설될까 휴학했다가 복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현재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프로그램개발, 경영학개론 이렇게 6개를 수강하였고 실습도 마친 단계입니다.

○ 시간제를 통하여 이수한다는 것이 졸업 후에도 수강했던 수업을 인정해주고 남은 4과목을 시간제로 수업 이수 시 인정해주어 2급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졸업한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계속해서 개설을 안 해 준다면 타학교에서 시간제를 통하여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고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0. [평생학습정책과]

○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관련 과목을 평생교육사 자격 중 취득에 필요한 학점가운데 일부만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전문대학 및 대학)는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나머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 등록을 통한 나머지 과목 이수는 타대학도 가능하나, 학교별로 학칙에 의해 정한 바를 달리하므로 관련 과목 시간제 등록 이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경과조치에 의해 민원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께서는 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동일 과목의 인정여부는 담당 전문가 즉 해당교수가 교과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학교에서 인정할 경우에 과목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질의

질의

○ 저는 ○○학교에 2005년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2008년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필수3과목, 선택3과목 합계 12학점을 이수하였고 전적대학인 ○○대학교에서 경영학원론 3학점을 이수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5학점을 이수 하였습니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제18312호)[별표 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5조제1항관련]의 평생교육사2급 7호을 보면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평생교육사 2급자격 신청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필수과목 14학점을 이수 못했기 때문에 전체 학점은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로 되어 있지 필수 과목이

냐 선택과목이냐의 구분도 없고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8. [평생학습정책과]

○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비고 제2호 "필수과목은 14학점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해석하여 유추하여 볼때 제7호의 14학점이 필수과목인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수과목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즉, 14학점이 필수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은 평생교육사 2급 제1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실습(학습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질의

○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 운영 길라잡이 60P, Q2 맨 아래단락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학습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실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서 과거에 평생교육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평생교육기관에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도 학습계약서로 실습을 대체할 수 있나요?

○ 구법적용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만이 실습면제대상이었는데, 개정법의 학습계약서 적용대상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업무 직접 담당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련기관 종사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학습계약서의 내용을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습기간동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과제물 제출로 실습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습계약서에 대해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종사자들이 업무시간을 평생교육실습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실습담당교수와 학습자 간의 계약서입니다. 즉, 현직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가 아닌 분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기서 관련 종사자란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구법과 동일합니다.

○ 또한 학습계약서는 실습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통해 실습을 받겠다는 의미이며 학습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평생교육 업무를 통해 실습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현직 종사자가 학습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실습시간

인 4주 동안 근무하며 실습일지 등을 작성하고 지정한 실습운영 담당자의 관리를 받아야만이 실습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법 적용자의 경우 과거 근무 경력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실습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습계약서는 현직 종사자에게만 유효합니다.
- 구법과 신법 모두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이여야 합니다.(사업주, 기관 대표, 단순 업무담당 등은 제외)
- 학습계약서는 현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통해 실습을 받겠다는 의미이며, 프로젝트나 과제물은 평생교육 담당 업무와 무관하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4주간(160시간) 근무하며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실습운영 담당자의 관리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이상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평생교육실습 면제 가능 여부

질의

○ 제가 일하는 곳은 직영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방과후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평생교육사 실습이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실습 면제 조건은 (구)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1 비고 3호에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타법령에 의한 시설(문광부-박물관, 보건복지부-복지관 등)을 의미하며, 종사한 경력이란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하신 경우를 말합니다.

○ 민원인께서 해당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구)평생교육법 별표1 비고 5호 바에 의하여 실습면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했다는 판단은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임을 참고바랍니다.

평생교육사실습 면제조건

질의

○ 평생교육사현장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교원일 경우 평생교육현장실습의 면제조건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4.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실습 면제 조건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1 *비고 3호에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타법령에 의한 시설(문광부-박물관 및 미술관, 보건복지가족부-복지관 등)을 의미하며, 종사한 경력이란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하신 경우를 말합니다.(사무직원, 학교강사 등 제외)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현장실습 면제조건이 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일부조건입니다.(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1 평생교육사 2급 7호, 3급 3호) 따라서 귀하의 부인께서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평생교육정책 관련

질의

○ 여성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및 여타 다른 곳을 살펴보아도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보기 힘듭니다. 여성의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자료 및 내용 관련 싸이트를 혹여나 알고 계시다면 여성의 평생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으로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알 수 있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 부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귀하의 민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참고가 될만한 자료 및 사이트를 안내 해 주셔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 연구(장서영, 한국고용정보원, 2007)

- 지식기반사회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발전 방안(김미숙, 직능원, 2007)
- 제4차('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노동부 등 부처합동) (www.molab.go.kr)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부 등 부처합동)(www.moge.g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www.krivet.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www.kdwi.re.kr
- 한국고용정보원 : www.keis.or.kr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시간제 모집 관련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내용 중 시간제 지원자격 (다)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대학(전문대학)에 재적 중인 자는 시간제 등록생 지원자격에서 제외되었던 바, (다)항의 신설과 함께 해당자들의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수, 학점인정 기준(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13. [이러닝지원과]

○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 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서 신설된 내용이 아닙니다.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등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등록할 경우에는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합니다.

예) 2007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 등록 학점(18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재적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 추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경우 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 내에서만 인정(이 경우 12학점은 불인정됨)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의 BOARD의 주의사항(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임교수 시수 부족에 따른 교원수 인정여부 문의

질의

○ 사이버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겸임교수는 6시수 이상을 해야 는데 한 과목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이분은 시수부족으로 겸임교수가 될 수 없는데 해결방법이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5. 27. [이러닝지원과]

○ 전임교원 확보율은 원격대학의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해 산정을 합니다. 전임교원은 통상「고등교육법」제14조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의미합니다. 겸임교수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임교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우리 사이버대학에서는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 제6조 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6학점이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그 수는 전체 교원의 1/5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대학은 학칙에 따라 정한 학부 또는 학과 등에 소속된 교원을 전공별로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보해야할 교원의 총 수는 편제정원 또는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별도정원 중 등록학생+(시간제등록인원/3)]두 값을 비교해 큰 값을 2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확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겸임교수가 6학점을 담당하지 못해서 전임교원 수에 산정되지 않더라도 위 확보율이 충족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교육법 인가 12곳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이번에 사이버대학교(고등교육법 인가 12곳)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최근 편입학 정보를 알아보려고 입시설명회를 갔었는데요. 입시 1:1상담을 했는데요. 담당자 말로는 입시설명회를 한 학교 측에서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1위라고 하더라구요. 근거자료도 없어서 혼란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5. [이러닝지원과]

○ 우선 지난 2008년 10월 31일「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인가된 12개의 사이버대학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사이버대학에서는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수상내역을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부에서 시행한 사항이 아니므로 편입학 대상교를 선택하실 때 참고만 하

시고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분야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부합하는지 등을 위주로 고려하여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중 사이버대학이 포함되는지요, 어떤 사이버대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31. [이러닝지원과]

○ 우리부는 작년에 이어 2009년에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 및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를 하고 2010학년도 3월에 개교한다고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기관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 같은 학위 수여기관입니다. 특히 「고등교육법」 부칙 〈제8638호,2007.10.17.〉에 의거 전환이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이미 수여된 학위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 올해 전환 인가된 대학 4개교를 포함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된 학교는 15개교이고, 사이버대학으로 설립 인가된 학교는 올해 인가된 1개교를 포함하여 2개교로써 지금까지 총 17개의 사이버대학이 인가되었으며, 해당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 3. 1. 개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 (2010. 3. 1. 개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2년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참고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영남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총 2개교입니다.

공인 인증서 관련 문의

질의

○ 교과부의 의무화 방침에 따라 공인 인증서가 원격대학들마다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무료) 공인 인증서 / (범용) 공인 인증서에 있어 헛갈려 하고 있고, 학교들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비용부담 문제로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바 교과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이러닝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 22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8638호, 2007.10.17)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을 새로이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원격교육설비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신분인식 및 인증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 :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 민원인께서 제기한 범용공인인증서의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이버대학 (이하 사이버대학이라 칭합니다)은 일반 대학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e-Learning을 주요 매개체로 교육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 2007년 사이버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 출석관리 및 부정시험 방지는 교육목적의 구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관리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반 대학도 대리출석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대학에 비하여 대리수강과 부정시험이 훨씬 용이한 사이버대학에 대하여 인증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고 가급적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인증시스템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사이버대학이 인증시스템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을 선택하여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학생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정부의 이용 등으로 많은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정부 등 타 업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사이버대학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인증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방송대에 박사과정 설치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직장에 다니지만 박사과정을 하고 싶은데 국립대학인 방송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이 생겼다고 하여 반가운 마음에 살펴보니 석사과정뿐이더군요. 방송대에 박사과정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이러닝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 설치는 제외되어 있으며 석사학위과정만을 둘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고등학교 출석수업 관련

질의

○ 현재 방송통신 고등학교 출석 수업일수 24일 모두 일요일에 출석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내용은 요즘은 주 5일 근무 적용 회사가 많은데 토요일 반 신설하여 늦게 배움의 길을 택한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8. [이러닝지원과]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 제4조에 의거 출석수업은 매 학년 2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일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40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매달 격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출석수업은 현행법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토요일 또는 다른 날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미 40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사정을 반영하여 대부분 매월 1.3주 일요일에 운영되는 출석수업을 일부 자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수학과 개설요청

질의

○ 현재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에 수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빠른 시일안에 수학과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 특히 이공계의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학문을 방송통신대학교에 개설하는 것이 이공계육성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1. [이러닝지원과]

○ 대학의 학과 신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단지 학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만 있을 뿐입니다.

○ 동 민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답변하고 있사오니 해당대학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도감독 차원에서 방통대에 '수학과 개설'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대학교의 수학과 개설에 대한 답변내용 전문) *

학과 신설은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방식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교과과정 개발, 교재개발, 교수정원 확보 등 국가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이수를 받으면 학사학위로의 인정을 법적으로 확인할수 있는지?

질의

○ 학사학위를 사이버대학에서 이수를 받은 다음 석사 과정을 이수할 때 일부 대학원에서는 학사학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대학원에게 제재를 하거나 학사학위를 국가가 인증을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7. [이러닝지원과]

○ 2007.10.17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의 개정・공포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추가되었고, 이는 일반 대학과 같은 학위수여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3조, 제5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현재 학사과정 15개교, 전문학사과정 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10.31일자로 이 중 11개교가 위에서 설명한 사이버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고, 사이버대학 신규설립 인가를 받은 1개교를 포함 12개교가 2009년 3월에 사이버대학으로 개교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09학년에는 6개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존재합니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므로, 대학원 진학 자격은 동일하게 가지게 됩니다.

사이버대학원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국내 사이버 대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8. [이러닝지원과]

○ 원격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2에 의거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되어 대학원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전문학사, 학사학위과정만을 운영),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2007년말)하여,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사이버대학이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경

우 대학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격대학의」 시행령 제29조 제2항 3호 관련 문의

질의

○ 본교는 입학정원 1000명으로 모집단위 2개 학부 신입학 600명, 3학년 편입학 400명(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3학년 별도정원은 당해 대학 입학정원 범위내로 학칙에 정함) 학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3호 3학년 편입학(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까지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그랬을 경우 본교 입학정원 1000명중 3학년 편입학(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른 3학년 별도편입학임) 400명일 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3호에 따라 400명에 따른 20%를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0명에 따른 20%를 정원외 로 모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0. [이러닝지원과]

○ 3학년 별도정원은 당해 대학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의 3학년 편입학 정원 외는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귀교의 경우 학교자체 학칙으로 정하여 3학년 별도정원 400명을 운영하고,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시 3학년 편입학 정원 외로 1,000명의 20%인 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유사 학교명칭에 따른 답변요청

질의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한국디지털대학교 및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유사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귀 부처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이러닝지원과]

○ 교명의 앞자리 한국과 서울은 고유 명칭이고, 디지털은 학교종류를 의미합니다. 학교종류

를 떼고 나머지가 같은 경우를 유사명칭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국디지털대학교와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유사명칭이 아닙니다.

○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존중에 따라 기존 사용 중인 교명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록 교명이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분쟁 및 혼돈의 우려가 있어 우리부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해서는 등록을 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등록하여 기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이공계 대학설립에 대한 문의

질의

○ 현재 이공계 대학과정을 정부주도로 사이버대학을 운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학, 건축학, 토목학 등 이공계 과정을 국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연계 국립 사이버대학 설립을 통하여 이공계의 어려운 학문에 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상호 비교와 비판의 장을 만들어 놓는 다면 자연과학에 대한 국가적 역량이 한층 새로워 질 것이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산출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교나 사설학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발생할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0. [이러닝지원과]

○ 국립학교 설치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국립학교의 종류에 있으며 사이버대학은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 현재 사립의 학교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이 2001년부터 개교하여 운영 중이나 이공계열을 설치하거나 특성화한 학교는 없습니다.

단지 정보통신학과와 같은 IT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이공계열 특히 공학계열이 아직은 사이버 교육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 한편, 귀하께서는 국가에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이공계 육성을 위한 보조기관의 설치를 건의

하셨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형태의 설치 유형은 근거 법령이 없는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현재 대학에서는 수업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러닝 콘텐츠로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강의도 공개하도록 독려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여러가지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제언하신 내용은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사이버대학에서의 영국식 영어로의 영어강좌 개설 등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의 콘텐츠가 모두 미국식영어에 치우쳐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빼더라도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는 미국식과 영국식 영어는 다 콘텐츠에서 적용되어져야한다고 봅니다.

○ 어느 원격대학의 콘텐츠가 잘 제작되어있는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3. [이러닝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사이버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각 사이버대학의 현실은 재정 여건, 교수 확보, 콘텐츠 제작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 현재의 사이버대학의 발전 추세로 보아 머지않아 귀하께서 바라시는 영국식 영어로도 영어강의를 제작하는 시기도 곧 도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부에서는 각 사이버대학에서 직접 개발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격대학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원격대학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로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문 최우수 대학(3개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 종합부문 우수 대학(6개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 종합부문 보통 대학(5개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

- 종합부문 개선요망 대학(3개교)

  세계사이버대학(전문학사), 영남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舊 한성디지털대학교)

해외 외국정규학교 수업영상 국내 온라인 서비스 관련 문의

질의

○ 당사는 해외의 정규학교 교과과정 수업을 현지에서 촬영, 편집하여 국내에 온라인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 되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확인 바라오며

○ 국내의 수강생이 해외학교가 제시하는 수강/과제/테스트 등의 조건을 충족 하였을 시 학점을 부여 하고 해당국가나 학교로의 유학/입학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인데 이 또한 관계법령에 위배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당사가 준비 중인 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이러닝지원과]

○ 먼저 학점을 목적으로 “해외 정규학교의 교과과정을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시고자 하나 귀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근거 법률은 없습니다.

○ 국내의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인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동등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도 인가사항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학점의 인정 또는 편입학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과정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은 얼마여야 하는 것이죠?

○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설립이 수도권지역에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도 그 제한사항에 적용 받아서 지방에 캠퍼스를 두어야 하는 건지요?

○ 사이버대학설립 계획서 승인 이후에 학교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작업은 심사이전에 다 완료해야 하는 건가요?

○ 현재 운영 중인 (학원사업등록)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자본금 2.5억, 2006년 11월 출범, 2007~2008 학원사업 진행 중]

회신 회신일 : 2009. 01. 30. [이러닝지원과]

○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 확보 계획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하여는 관련 법에 의거 교사(校舍) 구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원격교육설비 구입자금, 교직원 인건비, 기타 시설·설비구입비... 등의 소요자금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이버대학 설립에 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 상단→ 실국마당 → 평생직업교육국 → 정보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사이버대학설립요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지역에도 설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학교법인으로의 전환 포함)인가의 경우는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거 기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기 설립·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학원사업등록)법인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제등록생 관련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내용 중 시간제 지원자격 (다)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항의 신설과 함께 해당자들의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 학점인정 기준(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학생모집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적 중인 자

회신 회신일 : 2009. 04. 13. [이러닝지원과]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 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서 신설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부에서는 2006. 12월에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공문(지식정보기반과-625 (2007.01.29),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 보완 알림)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등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등록할 경우에는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 예) 2007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 등록 학점(18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

추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경우 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 내에서만 인정(이 경우 12학점은 불인정됨)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의 BOARD의 주의사항(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기준에 설비현황 관련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설립 기준 한글 문서에 보니 서버 설비 기준이 CPU 7,500tcmC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인텔 쿼드코어 제온 3.0Gh 이런 식으로 표기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사양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동영상 서버의 수치가 가장 높으니 해당 내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04. 13. [이러닝지원과]

○ 설비기준에서 CPU의 용량단위를 tpmC와 OPS를 사용합니다.

○ 통상 CPU의 성능을 표기하기 위하여 MIPS가 사용되어 왔으며 1초에 100만 개 단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MIPS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컴퓨터의 기계어 명령들의 수행 속도가 명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기종에 따라 하나의 명령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서버의 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세계적 공인기관의 벤치마크 지표인 tpmC와 OPS를 용량지표로 사용합니다.

○ tpmC는 트랜잭션 처리 성능 평의회(TPC)에서 제정하여 발표하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OLTP)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표준 규격의 C모델을 의미하며 OPS는 SPEC(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Cooperative)가 정한 JAVA Business Benchmark로 Java 플랫폼의 실제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2008년 현재 JBB2000은 JBB2005로 변경되었으므로 최근 출시된 서버의 경우엔 JBB2005로 수치가 표시되지만 함께 혼용 가능합니다. (JBB2000 과 JBB2005는 벤치마크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두 수치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단지 시스템의 성능과 규모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혼용은 가능합니다)

○ 서버의 tpmC, 또는 OPS를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부분의 메이저급 서버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에 대해 벤치마킹 시험을 하므로 서버를 공급한 제조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tpmC 는 되어 있으나 OPS는 안되어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pmC와 OPS의 수치 환산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tpmC와 OPS는 서로 개념이 다른 벤치마크 지표입니다. tpmC 수치와 OPS 수치를 서로 환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시스템이 완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성능지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문서에는 성능지표 산출에 필요한 사항과 시스템의 구성방법, 벤치마킹 프로그램 소스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www.tpc.org/tpcc/spec/tpcc_current.pdf
http://www.spec.org/jbb2005/

튜터를 조교로 볼 수 있는지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에서는 튜터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오프라인 대학의 조교처럼 학생관리 및 수업관리 콘텐츠 검수 등 담당 교수의 강의 수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 튜터 인원을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의한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에 포함이 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08. 31. [이러닝지원과]

○ 튜터제도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대학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튜터를 고등교육법상의 조교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상기의 관련 법규상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대학 학사편람((2008.9, 38p)에 따르면,

· 튜터는 대단위 강좌에서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학습동기 유발, 학습격려, 채점 및 성적산출 등 교원 강좌 운영 지원을 위해 둘 수 있고

· 튜터의 자격은 해당학과(전공)과 동일 내지 유사분야 전공자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가 원칙이며,

· 전임조교와 같은 근무시간(예: 주5일의 경우 40시간)으로 환산하여 사이버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조교의 수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튜터의 경우 고등교육법상의 조교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지만, 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 의거 근무시간을 주 5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조교의 수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교과부의 인가받은 곳인지

질의

○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1. [교직발전기획과]

○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학점은행 운영기관이며, 해당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의 의미와는 조금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회복지 원격대학인지 확인차

질의

○ 상기 원격대학(kstudy)에 등록하여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상기 원격대학이 정식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해당과목 42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4. [교직발전기획과]

○ KStudy의 정확한 명칭은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관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알려면 평생교육원 학점은행(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1600-0400)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02-786-0190)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상업실기교사자격증 취득

질의

○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했는데 당시 교육학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딸경우 실기교사 자격이 나왔는데 교육학을 이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학을 학점은행 등의 방법으로 이수할 경우 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4. [교직발전기획과]

○ 대학 졸업전에 무시험검정기준(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교직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추지 못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한 이를 보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취득한 학점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중등임용시험 복수전공 가산점 관련

질의

○ 군휴학 기간은 징집기간으로 해석되어 차후 3년간 복수전공 가산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복무기간만 해석하면 2년이라는 말도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2004.10.15)에서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군휴학기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안내

질의

○ 1급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은 비학위과정과 석사학위 연계과정이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9월 모집 대학의 경우 2010년 8월 종료시까지) 운영하며, 석사학위연계과정은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문의하신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우리부에 별도 자료가 없으므로, 민원인께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사이트를 접속·확인 후 입학을 결정바랍니다.

○ 참고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 중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해당대학 사이트에 접속하여 몇 개 대학을 찾아 알려드립니다.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1급) 운영 대학 현황

연세대, 건국대, 백석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그리스도대, 단국대, 덕성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국외대, 한성대

1급 정교사 자격증에 관한 질의

질의

○ 특수학교 초등부 교사로 임용되어 있으나 실제 수업은 현재 중등부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달 취득하는 중등특수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석사학위로 지역 교육청에 신청하여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하지 않고 중등특수교육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중등특수교육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면 초등특수교육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꼭 초등특수교육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는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면 자격연수를 통한 취득이 아니므로 인사기록의 연수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1급 정교사 자격증의 경우 점수는 대학원 성적의 최대 90%까지 인정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원 성적의 평정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이렇게 평정된 성적은 어디에 기록이 되는건지, 아니면 특별한 기록없이 수 십년 후 진급시 점수로 활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1. [교직발전기획과]

○ 1급 중등교사자격증의 경우 무시험 검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재직중인 학

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비학위과정 이수자 :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석사학우 연계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교원의 자격연수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자격연수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학원 성적의 평정기준과 범위는 당해 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에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통산 평정된 성적은 나이스에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교육청의 평정업무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원의 임용권한이 해당 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질의 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답변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급정교사 자격증 소유시 교육대학원 졸업시험 교직이수과목 통과 여부

질의

○ 현재 초등 1급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로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과에 진학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교육대학원에서 졸업시험 교직이수과목을 통과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 졸업시험시 교직이수과목의 시행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특수교육 자격검정과는 무관함을 설명드립니다.

2009년도 편입자의 구법 또는 개정법 적용건

질의

○ 전적대학에서 구법과목으로 필수 7과목을 수강하고, 선택 2과목을 수강한 자가 2009년에 편입한 경우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구법에 해당되는 과목을 일부 수강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이정해주되(2학점) 개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복되지 않은 과목으로 30학점(21학점)이 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개정법 대상이지만,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이 3학점 짜리여도 2학점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2) 만약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이 2학점짜리로 총 9과목 18학점밖에 안된다면 위 학생은 다른 과목들을 수강하여 30학점을 이수해야 2급을 취득할 수 있나요? 즉, 위 학생은 필수5, 선택5과목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8. [교직발전기획과]

○ 답변1) 말씀하신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2) 학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법에서 적용하는 필수 5, 선택 5과목은 무조건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0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사 관련 문의

질의

○ 2010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사 가산점과 관련하여, 영어 가산점이 토익스피킹으로 바뀐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토익스피킹이라는 것이, 어떤시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교직발전기획과]

○ 임용시험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채용시험시 어학가산점 등은 교육청 교육감이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현행 2단계에서 3단계 전형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 동법 24조에 근거한 교사신규임용전형관리협의체 즉 임용시험의 실시권자인 해당 교육감을 위원으로 하는 전국적인 협의체에서 임용시험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알려드리오며 영어가산점에 관한 변동 여부는 임용시험 예정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우리부에

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급 준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질의

○ 1978년 2급 준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현재 그 자격증은 분실된 상태입니다.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2급 준교사 자격증의 재발급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에 의거하여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출신대학 민원실에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2급 중등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질의

○ 3년째 현직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에 관심이 있어 교육대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초.중등 교육법(21조2항)에 따르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기준중 제 8호는 교육대학및 전문대학 전임강사로서 2년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자라고 하고 있는바 일반대학의 현직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인사규정에서 교원 자격 기준의 구분이 별도로 없는데 왜 일반 대학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지요? 그러면 기능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제가 속한 대학은 2008년에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공과 경력이 교사 자격증 과목이 일치한다면 일반대학 전임강사 경력도 2급 정교사 무시험 검정 심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급정교사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9.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자격기준에 8호에 의한 검정시 현직교원도 무시험검정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격검정은 강의하였던 대학이 소재한 교육청에서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격을 발급하오며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

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1급 자격 역시 '강의한 과목'의 총 3년 이상 강의한 경우이며 비연속 강의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발급요건은 해당 교육청 교원인사담당부서의 별도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범대 가산점 폐지

질의

○ 사범대 가산점 폐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또 헌재에서 가산점 합헌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헷갈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2. [교직발전기획과]

○ 지역사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법개정 당시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신뢰보호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 한시적으로 2010년 공고되는 시험까지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임용시험 전반적인 변경사항은 응시 시행청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 교원임용고시 가산점 부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 사범계지역가산점 : 06학번부터 폐지
나. 복수전공가산점 : 06학번부터 폐지
다. 부전공(자격)가산점 : 06학번부터 폐지
라. 어학 정보처리등 기타 가산점 : 시도교육청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임용공고시 해당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간호학과 교직이수 문의

질의

○ 학사편입으로 00대 간호학과에 학사편입한 학생입니다. 제가 **대 환경학과에서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간호학과에 교직이수가 되는데 00대 편입시 편입학지원자 유의사항 란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보건교사자격증 취득하는

학과에 편입시 정교사자격증 취득 불가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건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간호학과에서는 4학년때 임용시험을 칠 수 없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자격기준 7호에 의한 검정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교원자격취득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보건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간호학과에서는 동자격표시과목 보건교사시험의 응시대상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명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재교부

질의

○ 개명을 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한 이름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은「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변경승인에 대한 질문

질의

○ 저의 자격증은 농업, 부전공은 한문입니다.(특수학교 교사자격도 있습니다) 부전공연수를 받고 현재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윤리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과목으로 1정 연수를 신청했는데 제가 소속하고 있는 재단에서 발령한 표시과목이 농업이기 때문에 연수신청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교과목 변경승인은 어떤절차로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2. [교직발전기획과]

○ 1정 자격연수는 해당과목을 가르친 경력을 인정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과목을 가르친 경력은 발령과목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담당했는지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가르친 과목이 아닌 발령과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으로 1정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과를 하여야 하며, 전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1정 자격연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립학교라면 전과에 관한 사항은 재단과 교육청에 동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대통폐합 반대

질의

○ 통합하는 교대에게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지원한다는 소리는 또 뭔지요. 다 통합시키기 위한 계획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대 종합대 통합은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교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초등교육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등교원 양성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므로 통합으로 인해 타 대학 학생들의 초등교육 복수전공 확대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대 통합을 비롯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향후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련 교사 자격증

질의

○ 1999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과목은 교련입니다. 현재는 교과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격증은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련과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전과 건강'이라는 과목으로 변경되어, 2011년부터 점차적 적용되오며 새로 바뀌는 '안전과 건강' 과목은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011. 3. 1 : 고등학교 1학년
- 2012. 3. 1 : 고등학교 2학년
- 2013. 3. 1 : 고등학교 3학년

○ 이에 따라 안전과 건강 과목을 가르치는 자격증은 교련 표시과목이며 따른 새로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부대학에서는 발급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우리부에서 발간한 '2006.2007 교원양성기관현황'에서 현재 교련 표시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 국.공립대 : 국군사관학교,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 사립대 : 조선대, 경희대, 고려대, 세명대, 연세대

○ 다만, 교원의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시.도 교원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자격증 관련하여 문의

질의

○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특수교사입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은 중등2정(국어)과 초등특수1정 입니다. 중등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일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받은 자격증입니다.

1. 중등2정과 초등특수1정을 가지고도 공립의 중등 특수학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2. 중등2정 자격증을 활용하여 중등특수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9. [교직발전기획과]

○ 초등 특수1정을 가지고 공립의 중등 특수학급에서의 임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표시과목에 의하여 임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등특수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 하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사자격증 유효확인서 신청방법

질의

○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제출하고자 교사자격증 영문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6. [교직발전기획과]

○ 영문교원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 발급기관 :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 발급대상

- 당해 시·도에서 발급했거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수록된 자 : 시·도교육감
- 당해 대학에서 발급한 자로서 발급대장에 기재된 자 : 대학의 장

○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 영문교원자격증 교부원을 비치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록 제출 받음
- 수수료 : 1부 당 200원
- 발급기한 : 접수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교부

○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교사자격증 유효확인서(영문서식)」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서식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통대의 교사자격증발급 여부

질의

○ 사범대를 졸업하였으며 정교사 2급 식품가공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대 식품영양학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가 식품영양을 전공하게 되면 그 과목에 해당하는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한지요. 국어나 다른 과목을 지금이라도 듣게 되면 부전공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이 발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5. [교직발전기획과]

○ 편입하려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부전공으로의 식품영양관련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반드시 졸업 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강사 경력자에 교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질의

○ 전문대학에서 강의전담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가 전문대학 이상 전임강사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교사자격증 2급을 교육청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경력이 2년 이상이 있는 자에 한하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하는 표시과목의 일치여부등을 판단하여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하여 교원자격증 2급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 가능여부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문의하여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생실습 면제

질의

○ 현재 다니는 교육대학원에서 마지막 논문학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교생실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 측의 판단에 따라 면제여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7.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시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생실습과 관련하여 질문

질의

○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는 사범대학생입니다. 대안학교로도 교생실습을 나갈 수 있다고 하던데 모든 대안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 실시가 가능한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4.「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5. 타 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6.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받을 수 있는 학교

○ 따라서 대안학교에서의 실습은 가능합니다. 인가된 대안학교 현황은 첨부파일에 탑재하며, 교생실습에 있어 협력학교의 선정 및 실시학년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학중인 대학측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문의

질의

○ 이번에 교육대학원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입니다. 00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교직이수 못해서 교사자격이 없습니다)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으로 입학시험을 고려하던 차에 대학교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교직과목 이야기는 제외하고,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

수해야하는 항목 중에서):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을 포함해서 교과내용영역 42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이수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 교육대학원에서는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필요 학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30. [교직발전기획과]

○ 학부에서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과 교육대학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학부에서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그리고 교육대학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 전공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5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 인성검사
  -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충족해야만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부과정 학점은 사범대학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이며, 00대 영문과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대학원 입학시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받아 해당 전공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교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자격증 문의

질의

○ 기술·가정이 가정이나 기술에 비해 임용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서 제가 나중에 가정교육과를 나와서 기술·가정으로 임용을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2.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에 의거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을 취득한 교원자격증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가정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교육과의 경우 표시과목은 "가정"으로 표시되어 가정과목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대학 졸업 후교원 자격증 취득

질의

○ 제작년에 필리핀에서 영어교육학 학부를 졸업했는데 한국에서 교원 자격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8. [교직발전기획과]

○ 국내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해 우리부 지침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97에 의거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승인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외국대학(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졸업자의 경우 외국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참고로 교육과정이 국내 대학과 상이하거나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이 불허합니다.

○ 따라서,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공증서를 제출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한후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고시에 대해서

질의

○ 중등 특수교육(체육)정교사2급 취득 예정인 학생입니다. 시각장애 6급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전형 시험에 지원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9.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임용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장애인 교원을 정원의 100분의 2(전체교원모집의 5%이내)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교원임용시험(장애인)으로, 과목별 모집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은 해당지역의 과목별 필요 선발인원은 해당청에서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모집하며 교육청별 정원에 따라 비율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 교육청에서 동일적용합니다. 이외에 과락에 관한 사항 및 임용시험의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응시예정교육청에서 공고하는 임용공고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문의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관련 별표2에 의거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중 4호에 대한 검정시 1년이상 교육경력범위가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8.4) 45-46쪽에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일반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한다고 했는데 법개정이 되지 않았어도 특수학교 정교사(1급) 무시험 검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자격증을 교부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1.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기준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에서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해석한 업무처리지침 성격의 "교원자격검정 업무편람"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이런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그 대상으로 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 개정없이, 해당 실무편람 수정을 통해 동 자격기준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 표시과목

질의

○ 생물교육 전공 교육대학원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예정증명서를 보니 ‘중등2급 생물’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생물)이렇게 표기는 안되는건가요? 중학교 과학교사로는 갈수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표시과목에는 2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물교육 전공자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생물’로 표시과목을 부여하게 됩니다. 과학(생물)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2000. 1. 28)’에 의거 종전의 과학(생물) 과목이 공통과학, 생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물 표시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과학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은 ‘공통과학’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공통과학으로는 중학교 전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 검정이란?

질의

○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하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무시험 검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5. [교직발전기획과]

○ 무시험 검정의 신청이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전공 및 교직) 및 표시과목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기술분야별 등급 및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기교사의 경우 졸업한 대학에서 발급하오며, 해당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간(약 1-3회)에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아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는 정교사2급 및

실기교사 자격 등이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연계전공의 뜻

질의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부분에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분명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연계전공은 무엇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9. [교직발전기획과]

○ 연계전공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개설하여 관련 표시과목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학과 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사회, 역사, 지리, 기술, 가정, 교육학, 철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관련학과의 전공자(사범대학에 재학중인 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해당 연계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 연계전공 설치가능 학과
- 공통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공통사회 : 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가정 : 기술, 가정
- 도덕·윤리 : 교육학, 철학

○ 그리고「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공설치(연계전공 포함)와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며, 반드시 대학의 학칙에 교원자격 수여와 관련하여 설치된 연계전공 및 연계전공 허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련규정 및 교육과정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계전공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 가능할지?

질의

○ 4년제 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을 휴학중입니다. 교육대학원 휴학 중 타사범대학에 편입학하고 졸업하여 교육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편입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육대학원 화학교육으로 복학할 할 예정입니다. 복학 후 교육대학원 졸업을 할때쯤 "정교사2급 화학"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위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을

받기위한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포함)과 교직20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 졸업할 때 즈음에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포함)을 이수하고 교직20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이미 취득학 교원자격증으로 인정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 졸업대학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하나, 민원인의 경우처럼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입학한 사범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교육대학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 가능한지

질의

○ 한국에서 이공계의 학과로 학사학위를 받은후 미국에서 TESOL(영어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전문대학에서 4년째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이수는 미국의 대학원에서 학과과정의 일부로 인턴쉽을 포함하여 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7. [교직발전기획과]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8호'란의 '교육대학·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에 '현직 교원' 뿐만 아니라 '비현직 교원'을 포함하도록 재결(2008.11.18)함에 따라 다음요건을 충족시 해당 교육청에 신청,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발급합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요건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비현직 교원 포함)
-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함.
- 위에서 '강의한 과목'이란 1급의 경우 총 3년 이상, 2급의 경우 총 2년 이상 강의한 경우에 한함(비연속 포함)

○ 제출서류는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경력증명서, 강의증명서, 최종학위사본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교원자격조건에 대하여

질의

○ 92년에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94년에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를 입학하여 졸업을 했는데 초등특수교육과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교사 자격을 갖고 초등특수교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0.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관련 전공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초등특수교육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자격증 관련

질의

○ 현재 국어과목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을 국사로 바꾸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교육대학원을 가면 다른 과목(국어가 아닌) 을 부전공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부전공으로는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몇년도 시험부터 부전공으로 시험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까?

2 그래서 아예 3학년으로 학사편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대 국사교육과가 아닌 일반 문과대 국사학과를 나와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이미 국어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맞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1. 먼저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대상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

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직교원의 신분은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합니다.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문의하신 부전공으로의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거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선발교과목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부전공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24개) 중 '국사' 표시과목은 없습니다. 아마도 민원인께서 역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거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역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관련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역사교사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원자격증 관련 제도는 중간에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입학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 관련 문의

질의

○ 대학교때 독일어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부전공으로 영어 자격증도 같이 받았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영어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고자 할때, 2009년도 바뀐 교육과정에 맞게 다시 수강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교과교육영역이 3과목으로 늘어났는데, 이미 교원자격증을 영어로 취득하면서 이수하였던 교과교육영역을 재수강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교육봉사도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 과목 또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부전공을 학부에서 27학점만 이수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에 나와 있는 데로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요?(학부와 교육대학원 전공학점으로)

회신 회신일 : 2009. 2. 24.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원자격실무편람을 근거로 2009학년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경우

1)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2)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6학점(3과목)이상으로 상향

○ 또한 교직과목의 면제의 경우 교직이론 영역은 면제가 가능하나 교과교육 영역은 면제가 불가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전공 50학점과 교직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양성위원회의 무시험검정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관련

질의

○ 전적대학 환경공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1999년 졸업과 동시에 표시과목 환경공업으로 중등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후 환경공업 과목 임용시험도 없었고, 또한 법이 바뀌어 산업체 현장실습 4주를 해야지만 자원/환경 과목으로 교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학사편입을 하여 일반대학의 교직이수를 하는 역사학과로 진학할 시 전적대학의 이수한 교직과목을 승계받을 수 있고, 전공(40학점)과 교직 2과목을 이수한다면 중등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이럴 경우 졸업전 산업체 현장실습 4주를 해야지만, 중등교사 2급 (역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지 않아도 그 전 중등교사 2급 (환경공업)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인정받아 중등교사 2급 (역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역사과목 복수전공을 위해서는 전공과목은 40학점이 맞는 것이며, 교직 2과목은 정확히 무슨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편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이 아닌 사범대 편입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0.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변경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말씀하신대로 환경공업은 자원.환경의 자격증으로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변경된 표시과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전에 산업체 현장실습 4주를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전 표시과목인 중등교사 2급(환경공업)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자격검정령 7호기준에 의한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

에 편입이 가능하며 해당과목인 역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점은 전공 42학점과 교직 4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 관련하여 문의

질의

○ 2급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심리학과에 학사편입했을때 교직관련 과목만 들으면 심리학 정교사 자격증도 발급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리학과에 학사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에도 심리학 정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때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였음을 설명드리며 해당 입학예정 대학원의 교원자격발급처에 귀하의 취득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에 한하여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심리학과가 승인된 연도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자격증 명칭변경(교도교사 자격증) 문제

질의

○ 본인은 1988. 3. 2 발급된 교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려면 교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되었는데 이후 명칭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현재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동일한데 사회에서 교도교사는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자격조건인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그러하오니 여타 과목의 경우 동일한 내용일 경우 변경된 자격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고 있는데 교도교사 자격증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으로 명칭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경기도교육청 민원 회보를 받고 난감합니다. 실제 자격은 있는데 단지 명칭이 달리되었다고 과거의 자격증을 못쓰게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0. [교직발전기획과]

○ 교도교사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 상태에서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증 재발급시에는 최초의 자격증 그대로 재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하였듯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문의

질의

○ 학부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에 진학하여 가정과 교사 자격증(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독일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2. [교직발전기획과]

○ 독일어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및 교직학점을 졸업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표시과목 일어 자격취득은 가능하지 않으며, 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 7호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독일어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독일어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추가적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질의

○ 학부에서 지구과학과 환경학을 전공하고(복수전공), 교육대학원에서 지구과학으로 중등 2

급 교사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직 교원은 아니며, 이번에 일반대학원(환경 교사 자격이 발급 가능한 전공)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교원자격검정 편람을 보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함. 다만, 교과교육영역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교직과목은 하나도 듣지 않고, 전공과 교과교육영역의 기준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환경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인가요? 특히 2009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원자격검정에서는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과 ‘교육소양영역’이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교직과목 면제’에 포함되는 것인지 ‘기존의 교원자격 발급 기준에서 이수한 과목을 제외한 추가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7. [교직발전기획과]

○ 이미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이 면제가 되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추가되는 ‘교육봉사활동’과 ‘교육소양영역’ 또한 교직이수과목으로 간주하므로 ‘교직과목 면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원자격증 취득후 편입학 관련

질의

○ 사범대 컴퓨터 교육과 졸업을 하였는데 일반 4년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편입하여 졸업하면 영어교과 임용 시험 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영문학과를 가서 교생실습은 나가는 겁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2. 3. [교직발전기획과]

○ 이에 2008년도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이 강화되어,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졸업성적이 75점 이상 되어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실습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과정 편성 기준 강화

- 전공과목 42학점 → 50학점

- 교직과목 20학점 → 22학점
- 교육실습 2학점 → 4학점

○ 마지막으로 편.입학시 해당대학에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를 반드시 상담하신 후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통합교과 표시과목 변경의 건

질의

○ 2004년에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입학을 97년도에 하여 졸업때 받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통신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기간제나 시간강사를 구하고 있지만 표시과목이 전기전자통신이 아닌 통신으로 되어있어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자격증이 아니고 같은 과목을 배웠으며 같은 과목을 가르킬수 있는 자격증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표시과목이 통신으로만 되있어서 전기전자통신 기간제나 시간강사 자리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표기과목 통신을 통합교과인 전기전자통신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8. [교직발전기획과]

○ 소지하신 통신자격증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761호, 2000.1.28〉 제4조제2항에 의거 전기전자통신 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고사나 기간제 교사에 같은 자격으로 지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를 관리하는 시·도교육청에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의 표시과목 변경은 일반적으로 임용된 이후 소정의 연수(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자격증의 정정발급 신청을 통해 재교부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 통합교과 표시과목 변경의 건

질의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통신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전자통신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일반 학교에 기간제나 시간강사로 지원을 해보면 전기전자통신이 아니 통신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수나 교육 이런 방법들로 단순히 표시과목 변경

을 위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7. [교직발전기획과]

○ 재학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1997-11호(97.12.9)에 의거하여 표시과목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오며, 연수나 교육 등의 방법으로 전환의 경우는 임용된 후에 해당 교육청의 전과 또는 전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임용된 후에 인사발령으로 처리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교원자격증(부전공) 취득 문의

질의

○ 특수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5년 9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상담교사 합격 발령받아서 현재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시 주어지는 자격이 전문상담교사1급이거나 중등2급정교사(상담)이라고 들었는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두 주어지고 있으나, 중등2급정교사(상담) 자격증은 대학에 따라 주는 학교도 있고, 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2급정교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할 2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연구방법론)을 이수하면 부전공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이왕이면 졸업시 부전공(상담)자격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 자격이 대학자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지, 필요과목을 이수하면 어느 대학에서나 주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현직교원으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부전공 과목을 표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교육대학원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소정의 학점이란 전공 2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과교육 4학점 총 28학점 이상입니다. 대학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때문

질의

○ 전문대학에서 유치원정교사 2급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교원자격증에 전문대학이름이 명시되어있고 현재 제가 다니는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니 현재의 교육대학원이름이 명시된 자격증을 가질 수 없는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4.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 수여권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시 · 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수여합니다. 민원인께서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유아교육관련 전공 학점을 인정받아 교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자격증 발급 시 대학원 이름이 아닌 대학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의 추가 취득

질의

○ 4년제 정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을 통하여 공통사회 및 역사 중등교원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편입하고 졸업한 뒤,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게 되면 영어교사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은 교원양성기관으로 인가된 대학 및 대학원이 자격검정기관으로 법에 정한 검정합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당해 대학의 장이 무시험 검정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을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범위는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이 인정가능하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자격 취득 가능여부는 대학원 입학전에 해당 대

학원에서 정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를 제출하여 인정 학점 확정를 통하여 정해질 사항으로 진학코자하는 교육대학원에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과목의 학점의 인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취득에관하여

질의

○ 1983년 대학을 졸업하여 과학(화학)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학점은행으로 영문학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혹은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5.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에 의한 자격취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7호기준 대상자는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7호기준 대상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편입학자

- 전공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교직소양 4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일정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육대학교 심화과정 질문

질의

○ 교육대학교 심화과정이 원래는 중등2급 자격증을 받는 '전공'과목의 요건이 못되어 인정을 못받았었는데, 앞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2009년 교육대학원 입학생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2. 교대에는 심화과정 외에도 전공과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악과 교육1과 2, 음악실기1과 2 등이 있습니다. 이 전공과목들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정확히 심화과정 21학점만 인정이 되는겁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1. 2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 중 교육대학에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근거로 200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오며 2009년도 해당됩니다.

○ 교육대학원의 입학자의 관련학과 및 학점인정에 관한 판단은 해당대학원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판단하므로 심화과정과 전공과정 과목들의 인정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원의 입학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교육대학교 유아교육 졸업 자는 유아교육2급 정교사 무시험 검정 대상인지

질의

○ 00교대 유아교육과를 다녔으며, 졸업시 초등2급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유아교육과 이수 학점은 2009년 현재 26학점으로 00교대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는바, 저 역시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무시험 검정 요건에 보면 대학에서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시험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검정 대상인지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0. [교직발전기획과]

○ 귀하께서 이수한 유아교육관련 26학점은 유치원2급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 42학점에 미달

됩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졸업자는 초등교사자격증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시 어린이집근무교사(유치원정교사 자격자)에 대한 차별

질의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보육하고 어린이집에 5년간 근무한 현직교사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알아보던 중 교육대학원에 입학자격이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유치원에 재직하는 교사는 입학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격자는 입학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자격을 가지고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기회의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은 설립목적이 유초중등학교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주로 합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의 현직교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보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 유치원이 아니며, 보육시설 근무자는 유치원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마다 교육대학원 입학자격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유치원 교원만을 한정하지 않는 교육대학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교사자격증 발급가능

질의

○ 00대학교에서 특수교육관련학과 학부졸업생이라 졸업 후에 중등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입학전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도 땄는데 이런 경우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유아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제외됨을 설명드립니다.

교육대학원 교생실습

질의

○ 교육대학원생입니다. 교생실습을 마쳐야 졸업이 되는데요, 직장인은 4주를 빠진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학기중에 수업빠지고 실습하는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요. 야간수업을 진행해도 인정해 주거나, 졸업과 별도로 자격증제를 두어 하루정도 강의하는 것을 평가받고 자격증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의 경우 교육실습 대상학교 선정은 교원자격증 발행기관인 해당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의 경우 소정의 학점(전공,교직 및 교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근무여부와는 별도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과의 교육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실습의 기간동안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지급

질의

○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국문과 복수전공을 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 교육대학원에 진학 할 예정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석사를 전공해도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9. [교직발전기획과]

○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부는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현직교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는 교원자격 취득(1급)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학점의 강화를 통해 좀 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다만, 일반 교육대학원편입학 대상자가 학부에서 교직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학부와 동일한 계열에 입학하여 학부 때 학점을 일부 인정받아 대학원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가 발표한 2008년도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을 강화한 내용에 2009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토록하였으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이에 학부에서 교직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학부와 동일한 계열로 입학하여 학부때 학점을 일부 인정받아 대학원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96년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대학은 입학후 자격증이 부여되나, 이후에 승인된 대학은 입학자격이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하시기 전에 '96년이전에 승인된 대학인지 여부와 학부 때 성적표를 제출하여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얼마나 이수를 해야 하는지, 학점 이수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대학원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입학하셔야 합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설명이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아래 해당 양성기관을 검색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학원)양성기관 현황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검색명:양성기관 〉 교대원(전공별)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부전공 교원자격증

질의

○ 학부시절 사범대학에서 과학(물리)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1999년 2월에 졸업, 3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3월 교육대학원 환경교육과에도 입학하여 2002년 2월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졸업을 하면서 부전공 자격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대학교에 문의해 보니 그 당시 규정을 찾지 못하여 당장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교직발전기획과]

○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교원자격검정령과 동 시행규칙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전공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의 운영을 대학에서 하였는지, 그리고 귀하께서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실습에 관해 문의

질의

○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4학기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비정규 영양사로 초등학교에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실습 면제가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에 다른 교육실습면제에 지침의 변경으로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습을 면제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교육실습의 면제 및 대체 기준의 적용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대학원에 다시 한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자격에 관하여

질의

○ 중국어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상담심리학과)진학하려고 하니 자격요건이 현직교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3년 5개월 동안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6.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시 교육대학원의 '양성' 및 '연수' 기능에 관한 교육부 지침으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에 한하여, 현직 · 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입학하도록 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으나, 2000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반드시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각 전공의 설치 인가된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직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표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전공(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대학원 입학시의 현직 교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 타 법령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제외)

☞ 단, 조교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 총정원령」제2조제2항제6호 및「국립학교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속하는 자만 해당하며, 사립대학의 정규직 조교가 아닌 대학원에 재학 또는 일반학과에서 일정액의 대가를 받거나 무급으로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 조교는 정규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교대원 입학 전에 지원자는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여 해당 전공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인지 판단하게 한 후 석사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받아 추후 무시험검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입학하고자 하는 교대원에 학부 성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학점 인정 및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입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문의

질의

○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출신은 이제는 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영양교육 교직이 2005학번부터 생긴걸로 아는데 그 이전 학번은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7. [교직발전기획과]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시 교육대학원의 경우 '양성' 및 '연수' 기능에 관한 지침으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에 한하여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입학하도록 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으나, 2000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반드시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각 전공의 설치 인가된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입학전형 시 이를 반드시 공지하며, 표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997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에 입학전형을 참고하여 입학가능여부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시 학점인정 관련

질의

○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A대학 국문학과를 2학년까지 이수한 후 B 대학 언어치료학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학점 인정: 졸업대학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함(p.9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언어치료학과와 국어국문과는 동일 전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동일이 아니라도 A대학에서 받은 전공과목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언어치료학과와 국어교육전공을 동일계열로 볼 수 있는지요.
4. 동일 계열이 아니라도 B대학에서 받은 전공과목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학과를 졸업해야만이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학과 판단기준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학이 장이 결정합니다.

○ 또한 교대원 입학전에 지원자는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여 해당 전공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인지 판단하게 한 후 석사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

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받아 추후 무시험검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입학하고자 하는 교대원에 학부 성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입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자격에 대해서

질의

○ 교육대학원 현직교사의 범위를 다른 기타학교 선생님(대안학교, 직업학교, 어린이집)을 포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안학교의 경우 학력인정 학교 근무자와 비인가 학교학교 근무자 일때 둘 다 교육대학원 입학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0.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의 일반기준 중 현직교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2008년도 부터는 타법령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기관)에 근무 중인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년원학교 근무 교원 등)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자격연수를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학력으로 무시험검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연수지명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 다만,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외에는 안타깝지만 자격에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조건에 관한 문의

질의

○ 저희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육과정과 상담학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원의 입학 기준이 현직 교원만 입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8.4) 95페이지에 보면 교육대학원의 '양성' 및 '연수' 기능에 관한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교육부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각 전공의 설치 인가된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직 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입학전형 시 이를 반드시 공지하며. 표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전공(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등)의 경우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1. 교육과정전공이 위 사항 - 표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전공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요?
2. 상담학(전문상담교사1급 운영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요? 표시과목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현지교원이 아니더라도 학생 모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교직발전기획과]

○ 현직교원이 아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자격종별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2급(자격기준 21-2-2)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는 비교과과정이므로 표시과목이 별도로 없으나, 중등 과목인 "상담"자격증이 발급될 경우에는 1997년 이전에 승인설치된 교육대학원 학과에 의해 학생모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전공개설 문의

질의

○ 현재 영양교육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교육대학원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교정책국〉검색어 "양성기관"을 입력하시면 전국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학과 및 개설현황을 엑셀파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입학관련 문의

질의

○ 2009학년도를 끝으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입학을 생각하고 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지원 자격이 교육 경력 3년이상 근무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을 넘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모든 입사 시험이나 임용 시험이 차후 년도 3월 1일이나 졸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면 왜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 걸까요? 어느 대학(타지역 및 수도권)은 차후 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던데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8.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에 의하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의 교육경력에 미달하는 교원을 양성과정에 합격시켰으나, 양성과정 개시이후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휴직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한데 양성과정 모집은 통상 11월에서 2월사이에 실시되나, 기간제의 계약은 다음 해 3월1일자로 체결되므로 기간제 교사로 계약예정인 자가 양성과정에 지원하겠다고 할 경우 대학의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양성과정 이수자를 선발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부여관련

질의

○ 학부에서 지리2정과 공통사회2정을 받았으며 특수교사자격증은 둘중 한개만 신청하라고 해서 특수지리로 교원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교사자격무시험검정기준에 보니까 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부여와 관련하여 복수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복수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수공통사회자격증을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과 관련하여, 복수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복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부여는 소급 적용하되, 반드시 교육대학원 졸업일을 기준으로 소지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에 한하여 각각의 교사자격증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선생님의 특수공통사회자격증의 발급 가능여부는 졸업하신 교육대학원에 당시 설치전공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 여부가 정해질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졸업하신 교육대학원에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실습 면제 가능 문의

질의

○ 1993년도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역사)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하여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을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만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교육실습 면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시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실습 면제대상 범위 문의

질의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8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현재 교육대학원 4학기를 수료하고 금년 1학기에는 교육실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시점에 제가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혹시 교육실습은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의 면제에 관련하여서는 2008학년도 교육실습대상자부터 현)교육인적자원부고시의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07-161호(2008.1.8)

교육실습 면제에 대해

질의

○ 2008 교원실무편람의 교육실습 편에서 2)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지침을 보니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직교원이 아니고 일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과학(생물) 자격증을 가진 제가 2007년 교육대학원의 중등특수교육 전공에 입학하였습니다. 내년 2월 졸업으로 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교육실습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리 교육대학원은 아직 예전 지침을 따르는건지 교육실습 면제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실습 면제대상: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교사,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 자격증이나 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1년이상 교육경력(기간제교원포함) 을 가진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교육실습 대체 가능.

○ 동일한 자격종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했으니 교원 자격종별이 달라서 인정이 안되는게 아닌가 얘기를 하더군요.

회신 회신일 : 2009. 4. 7. [교직발전기획과]

○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의 특성상 실습을 요구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학교에서 실습을 요구하는데도 일로 무시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실습 문의 드립니다.

질의

○ 현재 유아교육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5월이면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 유치원에서도 실습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으로 인정이 가능 한 학교는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호치민 시한국학교는 재외한국학교로 교육실습 인정이 가능한 학교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원 임용 결격사유

질의

○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 사람에게도 임용고시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선생님의 자격이 부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4.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전공

질의

○ 대학에서 교육학과 졸업(부, 복수전공 없음)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 하면 교직 자격증 취득 후에 어떤 교사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은 해당 전공과목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 당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표시과목을 부여받습니다. 질의 내용상으로 볼 때 교육학을 전공하였을 것으로 중등2급 교육학으로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직과목 관련 질문

질의

○ 전문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교직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이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하면 보건교사나 구강보건 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 [교직발전기획과]

○ 보건교사 자격취득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종별로써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거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보건교사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에는 전문대학에서 발급하는 보건교사나 구강보건교사른 제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만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학에 교육부에서 승인된 학과인지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교육교사자격 취득 방법은

질의

○ 공립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소지 자격은 특수학교 1급 정교사(치료교육)입니다.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입학하였는데 졸업을 할 때는 중등자격에는 교과가 표시되어야하는데 교과도 없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이 동일계열자격이라 중등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석사학위만 받았습니다.

○ 올해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치료교사들은 모두 자격전환 연수를 통해 유·초·중등 교사자격으로의 전환연수를 500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동일계열이라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하여 중등특수 자격도 못받았는데 저희를 특수교육과 동일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저희가 이미 배운 대학교육과정과의 중복된 내용을 시간, 경제적으로 투자하다니요.

○ 제가 여쭙고 싶은건

1) 00대에서 표시교과가 없어 중등특수교사자격을 줄 수 없었다면 초등특수교사로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2)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격전환을 통해 2급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관련전공으로 이미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으므로 1정 연수를 따로 거치지 않고 바로 중등특수나 초등특수의 1정자격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0. [교직발전기획과]

○ 2007년 10월 이후 교육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교육대학원의 졸업학력으로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재활복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초등) 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향후 연수를 통하여 자격전환을 할 경우라도 현재 재학중인 교육대학원의 졸업학력으로 1정 자격연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직이수 과목 설치 및 사범대학 학과 설치 제한에 관한 문의

질의

○ 현재 중국어의 경우 어느 대학에도 "중국어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00사범대학에서 89년 입학생까지는 설치되었다가 90년도 입학생부터는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중국어의 경우 학부에서 교직을 이수하던지 아니면 교육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직이수를 설치하지 못한 대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이수 과정의 추가 설치도 언제부터인가 제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중국어교육학과 폐지의 정확한 시기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정의 신규설치 제한은 1984년부터이나, 중국어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직과정을 승인

하여 금년도에도 신규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기준은 전공 전임교원 2명 이상, 교직과목 전임교원 2명 이상,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실습협력학교 증명서 등이며, 관련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동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중국어나 일본어 등과 같은 제2외국어 관련학과는 1997년도부터 일반학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직이수가능 대학

질의

○ 전국 비사범계 학과 중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교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9.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가 승인한 교원양성기관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검색어:양성기관(교직과정 국공립, 교육과정 사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대상자 관련

질의

○ 우리대학에서는 2학년 말(11월)에 전부(과)를 실시합니다. 이전에는 특수체육교육과에 전부(과)인원이 산출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학년도에 2학년 재학 중에 제적처리된 학생이 특수체육학과 2명, 특수체육교육과4명 총6명의 제적처리자가 발생되어 전부(과)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특수체육학과는 폐과된 상태이고 특수체육교육과에 정원이 30명입니다.

○ 전부(과)를 실시할 경우 특수체육교육과로 전과되는 학생에게 교직을 이수하게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특수체육학과는 폐과가 된 상태이지만 전부(과)때는 특수체육교육과의 티오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2명의 인원도 특수체육교육과의 티오로 받아 교직을 이수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정리하자면 특수체육교육과 제적으로 인한 결원 4명을 일반학과 학생중에서 특수체육교육과로 전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다면, 특수체육과(현재 폐과) 결원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전과 가능인원으로 산출해도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사범계학과로의 편입학 및 전과는 승인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 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이수에 관하여..

질의

○ 저희과 입학정원은 50명으로서 정원내 10%인 5명이 교직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등이었는데 동점자가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점과 이수학점 그런것을 다 따져봤을 때도 똑같아서 전공과목 평점이 제가 좀 낮아서 교직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 동점자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았을 경우에는 동점자 까지도 교직이수를 인정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6. [교직발전기획과]

○ 교과부에서는 교직과정이수자 10%선발만 지침으로 내려보냈고, 동점자 처리규정은 대학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교직과정 이수대상자가 10%(5명)가 선정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직자격검정에 대해

질의

○ 04년도에 입학하여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 사범대학내의 학과가 아닌 교직이수과정이 설치된 과를 복수전공 하려고 하는데 “교직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복수전공 이수인원제한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정원의 20%로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은 06학번 입학자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교직발전기획과]

○ 복수전공 이수인원 제한의 경우 교직과정설치학과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하오며 2006학년도 이전입학자는 입학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함을 설명드립니다.

유치원교사의 상담심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질의

○ 유치원 교사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를 졸업하면 상담심리 1급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졸업 시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자격 대상자 중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종전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8577호, 2007.8.3)에 따라 모든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에는 비학위과정과 석사연계과정이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현직교원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권자의 연수지명을 받은 자이며, 석사학위연계과정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석사학위연계과정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인 3년이상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 입학전과 졸업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합니다.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문의

질의

○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교육과를 졸업하여 중등 2급 정교사(가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1. 기술교육과와 유사한 과에 입학하여 예를들어 기계공학과이라든지 건축학과라던지 기계·금속교육, 화공, 건축 등 비슷하게 교원자격증이 나오면 이를 기술·가정 교원자격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직이수를 해서 교원자격증에 “기술”로 표기되는 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2. [교직발전기획과]

○ 승인된 표시과목으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교육과와 유사한 과에 입학하였을 경우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교원자격증 "기술"로 표기되는 과가 개설된 학교의 검색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교정책국〉검색어:양성기관 검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가정연계전공

질의

○ 기술·가정연계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 가정교육과, 경남대 가정교육과, 조선대 가정교육과 등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상기 연계전공을 하려면 기술교육과와 가정교육과 둘 이상 설치되어야하는데 어떻게 상기대학들은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3. [교직발전기획과]

○ 연계전공은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2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공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가정 연계전공의 경우도 가정 표시과목 관련학과와 기술 표시과목의 전공을 제공하는 학과가 연계한 전공을 설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교육과가 없는 경우라도 기술 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을 제공하는 학과들과 가정교육과가 기술·가정 연계전공을 설치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대학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특수교육과

질의

○ 00사이버대학 특수교육과는 현재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지만 00사이버대학에서 특수교육과에서 교직과정 설치 신청시에는 교과부에서 심사후 승인하여 교직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 00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었을 경우는 기존 졸업생은(학과가 교직과

정 승인 받기전에 졸업한 사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교직과정이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난 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직과정 승인난 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정이 신설된 경우 승인된 해에 입학한 학생들(신입생)부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되며, 이수예정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 표시과목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학점 이상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자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교직과정이 개설된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학점을 이수하시는 방법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질의

○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매년 학과명칭 변경 등을 보고할 때 교직과목 담당 전임 교원 2명의 명단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직과목 담당 교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전임 이상으로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실질적으로 학위증에 "00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세부전공에 따라 자격이 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세부전공이란 "00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 - "교육심리학", 또는 "유아교육학"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 아니면 세부전공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존의 대학 교원이 전공전환을 하여 교직과정이 필요한 학과를 개설하고(영유아보육과를 개설하기 위해 전공전환을 함. 00대학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세부전공은 유아교육학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교직과정을 개설 승인 인가를 받을때, 기준이 전공과목 담당교원 전임 2명이상, 교직과목 담당교원 진임 2명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위의 전공전환한 교원이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모두 담당교원으로 배정을 받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목 전임교원의 범위는 일반교육학 전공자(교육심리, 교육행정 등)에 한합니다. 유아교육학 전공자는 교직과목 전임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이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전임교원으로 중복하여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대학편입학시 교원자격증 갱신여부

질의

○ 학사학위 취득자로 중등교원자격증(정보컴퓨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대학의 수학과로 학사편입을 한다면 교원자격증을 수학으로 갱신할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자격증을 가진 자가 '수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수학과 관련된 학부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수학교사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용실기교사 취득방법

질의

○ 미용실기교사 취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대학에서 상업과목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원에서 향장미용을 전공하여 향장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만, 꼭 관련 전문대학을 나와야만 실기교사를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2.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21조 별표 2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이에 대학원에서

향장미용을 전공하신 귀하께서는 실기교사 자격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중등교원 임용

질의

○ 년초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소정교육을 이수한 후 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제도의 진행 과정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3.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 중 제8호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행정심판위의 판결에 대하여 우리부가 수용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을 수정하여 각 교육청에 이미 시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9호에 의한 검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1)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비현직 교원포함)

2)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함(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

- 위에서 "강의한 과목"이란 1급의 경우 총 3년 이상, 2급이 경우 총 2년 이상 강의한 경우에 한함(비연속 포함)

○ 이에 따라 관련근거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이며 구체적인 자격증 신청처리 및 교육대학졸업자의 범위 등 은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담당하였던 강의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과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자격증 발급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별도의 행정절차 등으로 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증발급에 관한 조건과 요건에 관한 사항은 강의경력이 있던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의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교직이수과목 문의

질의

○ 간호과 교수입니다. 교직이수과목 개편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해야 하여 보건교사 교직과목 이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교육실습과목명을 이전에는 '교육실습'이라고 했는데 이제 '학교현장실습'이나 '교육봉사활동'으로 해야하는지요?
2. '교육봉사활동'을 교생실습처럼 학교에 4주간 출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지요?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양식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교직발전기획과]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3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종합법률정보〉교원자격검정령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이라고 하며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오며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시까지 일정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 별도의 양식은「교원자격검정령」별지 8호서식의 5호인 교육실습결과보고서(예시)를 기준으로 해당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의 간호교과(과목) 지도에 관한 질의

질의

○ 2010년도에 간호학과를 개편하고자 학과개편을 신청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자격종별과 자격기준에는 간호교사 자격증이 없으며 2009년 현재 9개 시도에 20개 전문계고등학교의 보건간호학과에서 대부분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간호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상 교원수급이 어려울 때 유사과목 교과 담당 교사에게 교과지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초·중등 교육법상 간호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교사자격을 가진 교사로 하여금 수업지도를 시켜도 아무른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건교사를 간호학

과 유사과목 담당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계고의 경우 표시과목에 없는 과목은 교육감이 유사과목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자격취득

질의

○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편입생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편입학 시 철저히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 한 경우이며 위 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직이수 관련 학과에 이미 시달하였습니다.

복수교직에 관한 문의

질의

○ 지방 사립4년제 아동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며 저희과는 2학년까지의 성적으로 일정 인원의 교직이수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직이수대상이 되어 필요한 강의를 수강케 되면,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자가 학교 내 교직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과(예를 들어 중국학과)를 복수전공한다면 복수전공한 중국학과의 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지요?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자격 대상이 되어 이수하면서 교직설치가 되어 있는 타과를 복수 전공하면 똑같이 복수전공한 과목도 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9. [교직발전기획과]

○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해당 대학의 교직 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주전공에 교직이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과를 복수전공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다시 선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및 자격요건은 해당 대학 교원양성위원회의 무시험검정에 관한 학칙을 확인하여 해당 모집 시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질의

○ 가정 2급정교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용대학에 편입하여 복수전공으로 미용임용을 보고 싶습니다. 교직과정이 개설된 4년제에 편입을 하지 않고 전문대학(전문대는 실기교육방법론이라는 교직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과정을 졸업해도 복수전공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4.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취득에 있어서, 2급정교사를 소지하고 타 대학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복수자격에 해당되며,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자격으로 임용시험의 응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교원자격의 심사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정교사 자격이 아닌 실기교사자격이 주어지므로(자격급이 다름), 해당 과목으로는 정교사 임용시험에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으며, 실기교사 선발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교원의 임용시험 및 과목별 선발규모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있으나, 최근 실기교사의 선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원임용의 수급사항은 지원코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관련 문의

질의

○ 2008년 실무편람의 복수전공 검정기준 중 자격종별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여기서 복수전공자가 들어야하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42학점 중에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전공과목 내에서 복수전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특수체육교육과의 경우 이 전공과목을 반드시 체육관련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 실무편람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이수 시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교에 개설된 기본이수과목(18학점)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수전공자는 교육부의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제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정한 내규를 따라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9. [교직발전기획과]

○ 반드시 체육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준은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이므로 대학에서 18학점을 필수로 지정하였다면 대학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의하면 표시과목을 부여받기 위해서 42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람에 다시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복수전공 유무

질의

○ 대학교에서 가정을 전공하여 교사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부전공(사회) 자격을 취득하여 대학원에서 사회2정 자격을 받은 후 1정 자격연수를 받아 1정 자격(사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과 사회 2과목 복수 전공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교직발전기획과]

○ 복수전공이란 일반적으로 전공이 두 개이상인 것을 말하며 두전공 학과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의 100-200%의 범위에서 복수전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의 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는 사범학부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신청, 승인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졸업 후 자격연수를 통하여 1정자격(사회)를 취득하였고, 가정과 사회2과목의 경우는 복수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질의

○ 지금 독일어과 3학년 학생이며 교직이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경영학과 부전공, 복수전공을 선택하면 교육대학원 진학을 할때, 사회과목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 만약 경영학과의 교직이수표시과목이 사회과목이 아니라면 어떤 과를 부전공, 복수전공 해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사회과목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7. 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 사회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전공분야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시과목 사회는 개정된 표시과목의 담당교과로서 공통사회와 일반사회로 표시과목명이 바뀌어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며 7-10학년과정인 공통사회와 선택과목으로 11, 12학년과정인 일반사회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복수전공을 통한 특수교육 전공시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수 학점에 관해

질의

○ 초등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학년 말에 교직부복수신청을 받아 선발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번에 유아특수교육학과와 재활심리학과를 교직복수신청하여 둘다 합격하였습니다. 교직복수전공을 신청할 당시 2007년도 입학자의 기준에 맞추어 원래 전공인 초등특수와, 복수전공인 유아특수, 그리고 재활심리학과(재활복지)에서 각각 특수관련 전공 42학점과 표시과목관련전공 3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세가지 교원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학교에서 주전공은 특수관련 전공 42학점에 표시과목관련전공 30학점을 이

수하고 이중 최대 15학점까지 두 영역간 중복 인정을 받아 최소 57학점 이수만으로 교원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복수전공학과는 특수관련 전공 42학점에 표시과목관련전공도 42학점이나 이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특수관련 전공과 표시과목관련전공간 중복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 특수관련 전공만 원래전공인 초등특수교육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중복인정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 이 기준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특수교사 자격 무시험검정의 기준인 특수교육 관련 42학점에 표시과목관련전공38학점 이수라는 기준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혹시 대학교측에서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5. [교직발전기획과]

○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복수전공하는 경우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은 특수교육 관련 42학점과 유아교육 관련 42학점입니다. 이경우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이수한 특수교육 관련 42학점은 중복인정이 되므로 유아교육 관련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이수한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중에서 초등과 중복인정되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은 중복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정리해 보면, 특수 42학점 중 초등과 중복되는 15학점을 제외한 27학점은 특수교육 관련 42학점에 포함이 되지만, 15학점이 부족하므로 특수관련 전공과목 15학점을 더 이수해야 하고, 유아교육관련 전공을 42학점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전공교사자격증

질의

○ 2007년에 05학번으로 사범대에 편입한 학생인데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사범대 부전공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학교에서 사범대 부전공을 뽑아 이번에 국어교육과 부전공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문의한 결과 2008년부터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사범대 부전공에 합격한 모든 사람이 부전공 자격증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학교측의 재량으로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기준은 2008학년

도 입학자부터입니다. 그러나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도 가급적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도록 대학에 지침을 시달하였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전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 또는 교직 부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위와 같으며, 학생의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의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 다시한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교원자격증 발급

질의

○ 사립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7학기 이상 등록에 130학점을 듣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면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과는 제가 1회 입학생입니다. 졸업한 학생이 없으면 첫회 학생은 반드시 4년을 다녀야 교원자격증이 나오나요? 조기졸업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7. [교직발전기획과]

○ 졸업한 학생이 없는 학교의 첫회 학생은 반드시 4년을 다녀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취득시 당해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해 무시험검정기간 중에 동검정령에 의한 소정의 학점(전공 및 교직)을 이수하여 충족되었다면 교원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제4조에 기술되어 있는 졸업을 위한 학점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학점과 별개임을 설명드리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 다시한번 학칙 등을 살펴보아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범대 졸업후 간호대 편입하였는데 보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나요?

질의

○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여 기간제교사를 하다가 다시 4년제 간호대를 편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입생이라서 교직은 상위성적30%로 제한하여 1학년성적으로 정해지므로 2학년으로 편입한 교직을 이수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제가 다시금 보건교사자격증을 따고 시험볼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편입생은 교양과목은 이전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데 교직과목은 인정 받을수 없는 것인지? 교직도 인정을 받아서 보건교사 자격증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교직발전기획과]

○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제시한 초중등교육법의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을 보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에 제7호 기준으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될 필요가 없이 소정의 학점만 이수하여도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에는 그와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호학과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는 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사범대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이 가능한지요?

질의

○ 교육대학원에서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학교 영어교육과 편입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1. 이미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편입후에 다시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영어교사 자격이 두개가 되는건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2. 편입후의 대학 영어교육과에서는 영어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냥 학점만 따면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영어교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건지요?

○ 영어교육과에 편입후에 타과 복수전공 하면서, 타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교사 자격은 취득하지 않고 졸업만 하는것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2. [교직발전기획과]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도 타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여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둘 중 하

나의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격한 후 호봉산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학위가 부여되지만, 교사자격증은 본인이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현실적으로는 학과에서 전원을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사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도 취득이 불가합니다.

사범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임용 특례조항 질의

질의

○ 사범대학 상업교육과를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 수학하다 군대 입대 후 1990년 가을학기에 2학년 2학기 복학하여 1993년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최근 변경된 제도에 따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하여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함)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민원인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상업정보)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표시과목 '상업정보'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제도에 따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내용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로서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

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 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상에 명시된 등록기간 중 등록한 자에 한해 특별채용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특별법에 의거 채용하는 제도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서교사 부전공 표시

질의

○ 현직 사서교사로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합니다. 중등 정교사 2급(영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사회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회 과목으로 부전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학하고자하는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중등 정교사 2급(영어)에 부전공 표시가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의한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타전공 중등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부전공 무시험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1.1 개정)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중등 정교사 2급(영어)에 부전공표시인 일반사회자격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교사 자격요건

질의

○ 전문상담교사 자격 요건이 초등/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이 바뀌어 유치원교사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방통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 취득 후 2007년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에 입학했습니다.

○ 입학 당시에는 자격증 취득이 불과하다고 했었는데 휴학했다가 2008년에 복학하여 2010년 2월에 졸업할 때 상담심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은 우리부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용고시 응시 가능한지?

질의

○ 언어치료학과 현재 4학년 학생입니다.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료특수교육이었는데 치료파트가 없어지면서 중등특수(2급) 으로 이수 후 자격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중등특수로 복수전공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언어치료학과에서 교직을 이수만 하고 있는 학생들은 올해가 임용고시 마지막 시험이라고 들어서요. 내년에 봐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실기교사 교직과정은 폐지됩니다. 단, '07년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하고 임용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재활과복지)자격증으로 간주하게 되며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양교사 교생 실습에 관한 문의

질의

○ 내년 5월달에 영양교사 실습을 나갈 학생입니다. 꼭 영양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교생실습을 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해 교사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교직과목(교육실습 포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교육실습의 경우는 학교급식실이 있고 영양교사가 배치된 곳에서 교육실습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영양사(영양교사 미배치)가 배치된 곳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도교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학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학교장)과 그 기관의 관할기관의 장(교육감) 이므로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관련

질의

○ 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한국교원대학교)을 졸업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경력은 6년이고요. 그럼, 유치원 1급정교사 취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와 가산점과 관련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8. [교직발전기획과]

○ 1급정교사 자격취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각 교육청은 교원으로 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한 현직교원 중에서, 1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며, 해당 자격연수(재교육)를 이수하였을 경우 소속 교육청에서 1급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원자격증(2급 정교사)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관련과목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교육대학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하나, 이는 모두 소속 교육감이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검정심사하여 발급하는 사항으로 모두 현직교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상황에 현직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연수지명은 현직 교원에게 교육청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으로 죄송하지만, 소속하고 계신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 교과교육영역에 대한 문의

질의

○ 교과교육영역에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과정'이 '교과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논리 및 논술'은 유아교육과 과목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름의 교과명으로는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리 및 논술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교과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관련

질의

○ 2002년 전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저희학과는 졸업과 동시에 보육교사1급을 주고 상위 20%에 한해 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었구요. 전 20%안에 들었음에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포기를 하고 사회복지사를 취득했는데 졸업 후에 많이 후회했답니다.

○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을 원하는데 다시 학교로 들어가 관련 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 제가 이수한 기존 과목들을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들을 이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8.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 교사자격기준을 보면 유치원 정교사(2급)은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로서 재

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이수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문의에 대하여, 아동복지학과에서 이수한 교직학점은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부 장관이 지정한 유아교육관련 학과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하시어,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교원자격증 취득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이수한 학점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턴교사제, 영어회화전담강사제 반대

질의

○ 인턴교사제를 강행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정규직 증원은 0명이라고 합니다. 법정 교원수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허라는 방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 게다가 인턴 교사는 초 중등 자격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공교육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교육 자체를 보는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과목 이수, 대학에서의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 단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 의견이 어떻게 반영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이지를 듣고 싶습니다. 전국 사범대생들과 임용고시생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도 마찬가지구요. 인턴교사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검토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6. [교직발전기획과]

○ 인턴교사는 부족한 정규교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 역할은 정규 교원의 수업 지원이나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될 것이며, 예비교원의 교직경험 제공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 교원의 확충 문제는 인턴교사와 별도로 관계부처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격전환

질의

○ 특수학교 1급 정교사(치료) 자격 소지자로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치료교사들을 특수학교(유,초,중등)교사 자격으로 전환시키고 치료지원이 보편화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 지난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동일 계열 자격이라면서 왜 저와 같은 치료교사들이 특수교사(유,초,중)으로 자격전환을 위해 도합 500시간이 넘는 연수를 받아야합니까? 또한 저처럼 전공 대학원과정을 거치고 논문까지 썼는데 다시 그 많은 시간의 연수를 받는다는 시간낭비요 예산의 낭비라고봅니다. 현재 치료교사들 중 대학원(전공-특수교육)을 거친 사람을 위한 구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수를 받지 않고 자격전환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을 졸업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경우 특수학교 중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소지한 치료교육 자격증은 그 당시 특수중등의 표시과목이 아니므로 특수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표시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입학 당시 대학측에서 안내를 잘못했거나, 귀하께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자격전환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직무연수만 이수하여도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격증 갱신

질의

○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현재까지 직업을 갖지 않았었는데 다시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치원 2급 정교사였고,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직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5.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 교원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근무하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해당 대학에서 재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갱신

질의

○ 유아교육(2년제)을 전공했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졸업후 3년 정도 법인 어린이집(교육청 등록)에서 근무했고 쉬다가 다시 유치원 일을 하고 싶은데 1급 정교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면 이전의 경력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유치원을 운영해보고픈 마음도 있는데 시설장 자격은 어떻게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3. [교직발전기획과]

○ 1급정교사 자격검정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이 속한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경력 및 기타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지침에 의하여 신청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다면 교육경력(3년근무)조건이 인정가능합니다.

○ 이전의 경력도 100%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원장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및 행정 절차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즉 교육청에서 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후에 원장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원장)의 자격기준은 관할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해당 지역 시, 구, 군청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면 아래의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육시설장(원장)의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의 유치원교원 자격증 인정

질의

○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보육사, 유치원을 4년 공부했습니다. 취득한 자격은 유치원교원1급입니다. 유치원자격은 어디에 의뢰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6. 3.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체계는 교사양성기능을 가진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소정의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시 외국에서의 취득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며, 교원자격증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급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1급의 경우는 해당 교육청)

사범계 유아교육학과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문의

질의

○ 06학번 사범계 유아교육학과 학생입니다. 평점이 B이상이 안되면 정교사 자격증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교직발전기획과]

○ 예비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의 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그 대상은 2009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과정 입학자부터 강화된 학점과, 졸업성적이 75점 이상 되어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편성 기준 강화

- 전공과목 42학점 → 50학점 이상 이수
- 교직과목 20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 교육실습 2학점 → 4학점

○ 따라서 2006학년도 사범대 입학자의 경우 성적기준은 없으며, 전공 및 교직 학점을 충족한다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기타 교원자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전자, 통신 중등교사 자격

질의

○ "전기, 전자, 통신"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먼저, 전기, 전자, 통신 중등교사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요. 사범대학교에 개설된 학과를 보면 전기, 전자, 통신에 관련된 과가 없던데요.

○ 전기,전자분야는 실기교사라는 것이 있던데 그 자격으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중등교사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는지요? 실기교사는 해당자격증만 있으면 별도의 시험없이 신청만으로 발급이 된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자계산기 기사1급, 무선설비기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지방의 산업대 출신이지만 학점은 4.0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전기, 전자, 통신은 중등표시과목 중 실업계열 표시과목으로 주로 전문계고 즉 상업공업계 학교의 교육과정개설 과목입니다. 취득방법은 교원양성기관(교육대, 사범대, 일반대학교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시어 소정의 학점(전공 50 +교직22학점)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실기교사도 해당 학과가 교과부의 교직승인을 득한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전공50학점+교직4학점)을 이수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시험없이 신청만으로 발급한다는 말씀이 무시험검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 귀하가 소지한 자격증만으로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은 안타깝지만 어려우며, 반드시 승인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여야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전문가 및 박사 교사 채용 연수에 관한 문의

질의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소정의 연수 기회를 통해 중고교 교사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지원 자격(연령제한) 및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재교육, 자립형 사립고, 일반중고교를 담당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0.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양성특별과정은 국가에서 상시 설치되는 과정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현재도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산학겸임교사'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계약직에 따른 신분불안과 정규교원에 비하여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분야는 전문계(구 실업계)학교나 예체능계학교에 필요한 영역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애니메이션, 골프, 승마, 무용 등의 전문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을 지녔거나, 예체능분야의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입상경력을 지닌 경우 등에 한합니다.

○ 특별과정의 운영 절차는 전문계학교나 예체능계학교에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제 신분인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한 후, 해당자가 학교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고, 시도교육감은 수요를 판단한 후 교원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즉, 산학겸임교사로 먼저 채용이 되어야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2009년에 관련법령을 개정 시도교육감은 특별과정의 설치기관 지정 및 운영과 특별과정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이수과목과 이수학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여 2010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질의

○ 최근 전문상담교사 TO가 전무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문상담교사 TO확

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과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4.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는 2006년부터 20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정원을 받지 못하면 계획만큼 배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원 확보를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상담교사뿐 아니라 타 교과목의 정원확보 및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 교원의 신규선발 정원은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9월경에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선발하게 될지는 당해연도 10월경에 알 수 있으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부의 요구는 2009년까지 각급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부처에 끊임없이 정원을 요구하고 이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관련부처와 협의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교육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년 양성과정) 자격 취득 건

질의

○ 중등교사로 교육대학원 상담학과 재학중인 학생으로(아직 상담사 자격취득은 안한 상태) 휴학하고 상담분야에 더욱 더 심도있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상담교사(1년 양성과정) 연수이수를 꼭 하려고 합니다. 1년 과정이 2009년도 까지만 운영된다고 해서요. 대신 대학원에서는 학위취득만 하게 되겠죠?

○ 질의 내용은 “교원자격 검증 실무편람 내용 중 유의사항: 이미 1급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과정연수를 이수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 1년 과정 연수이수할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휴학하고 전문상담 교사 1급 (1년 과정) 연수를 이수해도 어떤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7.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실무편람을 근거로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중 이미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을 중복 취득은 불가합니다. 학생의 경우 심도있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학 후 2009년도까지만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으로 연수이수는 동과정 설치 목적상 현직교원의 심화과정으로 2002년부터 반드시 임용권자의 지명을 받아 이수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함으로 전문상담교사 1년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받고자 할때

질의

○ 자격 요건이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과학)을 가지고 기간제 경력이 2년 반 정도 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고 자 하는데 재학기간을 제외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휴학중에 부족한 교육 경력을 채워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졸업한 후에 3년 경력을 채우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자격증 신청을 할수도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4.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에는 비학위과정과 석사학위 연계과정이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운영이 폐지됩니다. 단,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됩니다. 비학위과정 자격은 현직교원으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도교육감의 연수지명을 받아야 하며, 석사학위연계과정 자격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서류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무시험검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민원인께서는 석사학위연계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인 3년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한 것으로,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교육대학원에 휴학 중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경력기간에서 제외되며,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석사학위 연계과정 무시험검정 신청서류 :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원자격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에 대하여

질의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 재학중입니다. 입학할 당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와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에 유치원교사에게도 자격기준이 허용되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학수고대하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입학 당시 사립유치원 현직교사였지만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직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발급이 어려운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9. [교직발전기획과]

○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전공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유치원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007년 8월 3일부터 소정의 요건(교육대학원 졸업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을 갖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경우 비학위과정과 달리 현직교원이 아닌 비현직교원도 이수가 가능하므로 퇴직후에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격증 수여는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에 대해서

질의

○ 2006년도에 초등교사 1년 경력으로 교육대학원 (5학기) 상담심리학과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 때 당시 입학기준으로 3년이상의 경력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1급 자격증만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기준 3년의 경력이 되지 않아도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경력을 채우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1. [교직발전기획과]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인 3년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며, 관련내용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적용된 부분입니다. 이에 석사학위 취득(졸업) 후 교육경력(3년) 충족 시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문의

질의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1급 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 입학 전 경력 3년이상이더라구요. 제 발령일은 2006년 4월 11일이지만, 기간제를 3월3일부터 근무하였으며 만약 2009년 3월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저 기간제 경력도 포함되서 1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7.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비학위과정 자격은 현직교원으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또한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임용권자의 연수지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학위과정에 지원하려면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연수지명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되므로, 비학위과정 지원자격이 안된다면 석

사학위연계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인 3년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산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없어진 후

질의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없어졌습니다. (1급은 2009년까지 한시적)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되고싶어 상담과 관련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있으며 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자격기준 21-2-3)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이미 소지하였으므로 석사학위 연계과정으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대학원 재학기간포함)이 있으면 동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전문상담교사(1급)석사학위연계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대학에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대학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학교정책국〉검색어-양성기관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당해대학의 입학전형 및 자격취득에 관련 된 사항을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임용 자격

질의

○ 전문상담교사 임용 자격과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정학과를 전공하고 교직이수를 하여 중등2급정교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 임용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거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담교사자격증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원양성기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양성"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질문

질의

○ 2급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상담교사 과정을 거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사범대 졸업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에서 얻게 되는 정교사 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은 다른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6.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자격 취득하려면 현직교원의 경우와 비현직교원으로 나누워집니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현직교원들의 경우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자격취득 이후 반드시 임용시험을 통하여 교원으로써 임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에 따라 입학전에 교육대학원에서의 개설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심리학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아마도 해당 표시과목 "상담" 또는 우리부로부

터 승인 받은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대학의 표시과목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심리학과에서 얻게 되는 정교사 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은 다른 것은 심리학과에서 취득하는 정교사 자격증은 중등학교 인문계열의 34개 표시과목의 하나인 “상담” 또는 “심리”이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비교과 계열로써, 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질의

○ 현재 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은 스페인어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 · 산업대학의 상담 · 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거나,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중 석사연계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전과

질의

○ 중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과거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해서 과학(생물) 2급 정교사 자격증과 2006년 양성과정을 통해 획득한 전문상담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임용은 전문상담교사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였는데, 과학(생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내신을 써서 이동할 경우 신청과목을 과학(생물)로 하면 과학교사로 발령이 날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문상담교사인 제가 전과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6. [교직발전기획과]

○ 귀하는 전문상담교사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과학자격증이 있다하더라도 전과할 수 없습니

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과학(생물)과목의 교사가 대거 부족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교육감이 관련자격증이 있는 교사에 한해 전과를 명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시도교육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2급) 문의

질의

○ 대학교 교직원(보건소 직원, 보건교사 자격증소지)으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중입니다. 전문상담교사1급은 경력3년의 현직 교사이여야 한다고 해서 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사자격기준 (제21조2항)관련, 초중등교육법 별표2를 보면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 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받을 수는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30.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 교사자격기준을 보면 전문상담교사(2급) 대상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교원자격증 취득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이수한 학점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상담교사(2급)자격 관련하여

질의

○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그 자격과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심리학과에 편입하여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적대학 졸업 전에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2회의 교육실습을 받았으나 상담실습이 아니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하여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자이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교

사의 경우 해당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교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심리학과에 편입하여 교직을 이수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표시과목 자격증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상담교사 2급 이 발급되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소정의 교직과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당해 학교의 무시험 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실습은 면제가 됩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 휴직 교사는 불가능한가요?

질의

○ 현재 육아 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 입학을 하고 싶습니다. 휴직 중에는 입학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4.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휴직기간 동안 학위취득을 했다면 동 휴직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학위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연수지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의 연수지명권자인 해당 교육청의 교원인사팀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과정(1급 양성과정)을 연장 시행 요청

질의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꼭 신청하고 싶은데 올해는 수업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지침으로 2009년까지만 전문상담교사 과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문상담교사과정은 1년 과정으로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고시에 2009년까지만 운영된다고 하여,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5.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은 일시적인 전문상담교사 양성의 필요성에 의해 개설된 과

정으로 이미 수요를 초과하여 양성이 되어 연장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바,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방법

질의

○ 우리과는 졸업과 동시에 상담교사2급자격증이 나오고 타과목(영어 등)복수전공을 하면 타과목으로도 임용고시를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영문과 복수전공을 해서 영어로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하면 교사생활을 하다가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따서 전문상담교사로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는 제가 전문상담교사로 공립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상담교사로 임용고시를 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7. [교직발전기획과]

○ 우선 전문상담교사가 되려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표시과목(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1급 자격증은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에는 비학위과정과 석사학위 연계과정이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아시는바와 같이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운영이 폐지됩니다. 다만,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됩니다.

○ 석사학위연계과정 자격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서류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1급을 취득하려면 석사연계과정을 통해 취득하시면 됩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질의

○ 교직 2년차때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교육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직 3년 이상이 지나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 상담관련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상담관련 공부를 해왔으나 1년 단기로 공부하고도 받

는 자격증이 없어 학교에서 전문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소급하여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5. [교직발전기획과]

○ 졸업 전에 출신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에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이 개설되어 있었고, 소정의 교육과정(필수 14학점이상+선택4학점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중에서 이미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일한 교육대학원 졸업학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교사 자격증에 대한 질문

질의

○ 경영대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이수를 해서 "정교사 자격증(2급)"을 부여받으면 제가 다른 학교에 편입을 했을 때 편입한 학과의 과목으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경영대에서 교직이수로 졸업 -〉 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편입 했을 때 국어과목으로 임용고사를 볼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0.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문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국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3을 준용하여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함)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편입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국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국어과목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사1급 자격증과 관련한 질문

질의

○ 이번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교육대학원(사회교육전공)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제 전공이 역사교육인데, 사회교육전공인 교육대학원에 진학해도 정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1급 정교사 자격증은 교육경력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연수지명을 받아 이수,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시도교육감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빵 실기 교사는 왜 없나요?

질의

○ 제과, 제빵을 전공하고 교육학도 이수 하였는데 제과, 제빵은 실기 교사가 없어서 실기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조리쪽은 실기교사가 있는데 왜 제과, 제빵으로는 실기교사 자격증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9.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의 표시과목 중 실업계에 해당 하는 표시과목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가 있습니다. 이는 실기교사 표시과목과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 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동법 6조 관련)에 한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제과, 제빵관련 실기교사 자격은 현재까지 각 대학의 학과에서 승인요청하지 않아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기교사가 수용에 비하여 과다하게 양성·공급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의 실기교사의 신규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표시과목 결정승인신청 및 승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설명드립니다.

준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질의

○ 「초·중등교육법」 별표2[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7호] 에서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으로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어디인지 알고 싶지만 관련법령을 검색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된 시행령만 있을 뿐, 부령을 찾기 어렵습니다.

○ 본인은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3학년 소속입니다. 졸업시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준교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또 가능하다면, 위 학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거쳐 자격을 수여받을 수 있을 지도 알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6.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에 대학의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준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으나, 1982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1년까지만 준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며, 이후에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

질의

○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정의 준교사자격검정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0. [교직발전기획과]

○ 준교사 자격증은 자격종별로 중등학교 준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가 있습니다.

○ 어느 자격종별을 문의하는지 몰라 각 자격종별로 안내를 합니다.

▷ 중등학교 준교사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에 한함)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 특수학교 준교사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준교사 자격증 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때 국가에서 시험검정을 통해 부여해왔으나 현재는 준교사자격 검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험검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등 교원자격증 인정에 대해 문의

질의

○ 중등 정교사 2급 영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09년도에 특수교육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전공심화를 들을 경우 중등특수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등특수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영어를 받고자 합니다. 중등특수의 경우 과목이 나뉘게 되는데 제가 영어 교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복수전공을 다시 하여야만 중등 특수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6. [교직발전기획과]

○ 영어교사자격증에 대한 특수자격증 취득시 영어과목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등 '조리'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

질의

○ 중등 과목 중에 '조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조리 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 즉 우리부로부터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되는 학부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리자격증으로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교원양성기관'으로 검색 〉 2009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 교직과정(국공립), 교직과정(사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질의

질의

○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가 교사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00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학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00디지털대학교 미용학과에 편입하여 교사자격 취득에 필수적인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00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미용중등교사자격 취득을 허락할 수 있는가?

회신 회신일 : 2009. 4. 6.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 입학시 입학 전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내대학 졸업도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대학원에 반드시 입학 전에 미용중등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발급

질의

○ 학부에서 철학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간제 교사를 4년간 해왔습니다.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일본어과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일본어과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영역 14학점은 면제 아닌가요? 교과교육영역 4학점만 이수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동종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이론영역 14학점은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신 회신일 : 2009. 3. 5.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시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 이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질의

○ 자격증을 따려고 찾던 중 '직업상담사'를 보게 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9. [교직발전기획과]

○ '직업상담사' 자격은 우리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해 교원양성기관을 통하여 소정의 전공과 교직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며

○ '직업상담사' 자격은 노동부에 의한 순수민간자격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관 법령이

다른 자격제도이므로 2010년이후의 유망직종군으로 속할지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부여된 자격인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교원임용시 채용하여 각급학교 등이 시·도의 교원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배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기교사자격취득 요건

질의

○ 언어치료사입니다.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치료교사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등 일반 치료사들이 학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그리고 실기교사(치료교육)자격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임용을 칠 수 없는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 실기교사 자격기준을 보면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는 같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따라서 실기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 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교직이수

질의

○ 철학과를 교직부전공해서 2010년에 졸업하면서 한문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과 철학과 부전공교

직이수가 나옵니다.

○ 철학과를 교직이수하면 도덕, 윤리 과목으로 임용선발고사를 볼 수 있다고 하던데,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철학과 교직이수를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철학과목만 시험 볼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0.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에 의해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학과를 교직이수하면 도덕, 윤리과목으로 임용선발시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에서 철학과 교직이수를 할 경우 해당 표시과목 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연계전공이 설치된 학과일 경우에는 도덕, 윤리로의 표시과목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의 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문의

질의

○ 특수학교 임용시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문대로, 현재 졸업 후 자격증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치료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특수교사 임용에 지원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치료실기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2. [교직발전기획과]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치료교육 실기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참고로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은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 중 실기교사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대상자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대학 ·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고등기술학교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졸업자로 자격검정은 각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의

○ 05학번 물리치료과 학생입니다. 작년에 졸업해야 하는데 졸업 못하고, 1학기 재등록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치료실기 교사가 2008년에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2008년 이전에 치료실기교사에 필요한 과목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올해 2009년 가을 학기에 졸업 때, 치료실기교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0.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하여 2008년부터 폐지되었으나, 07년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 인정, 임용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기회가 부여됩니다. 2008년도 입학자부터 치료교육 교직과정 혹은 실기교사(치료교육) 과정이 폐지되었으며, 치료실기 교사 자격증 취득은 반드시 졸업 전에 선행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치료실기교사 관련 질문

질의

○ 제가 2007년 2월에 치료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자격증으로도 특수교사 임용고시를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5. [교직발전기획과]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치료교육 관련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다만,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 임용시험에서 표시과목 구분없이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이나,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를 선발하는 시·도교육청 중에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시·도교육청에 한하여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치료실기교사에 관해서

질의

○ 임용고시를 통해서 특수교사, 순회치료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치료실기교사가 자격 및 기타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현직 치료실기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8. [교직발전기획과]

○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학교에서의 치료교육이 없어지고 관련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치료교육교사는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표시과목을 변경하고,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 비현직 치료실기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치료특수교사 정2급 자격 유지

질의

○ 00대학교 재활심리학을 전공하고 2005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교직이수를 통하여 치료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치료특수교육학과가 없어지고,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재학생들은 자동으로 중등특수나 초등특수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졸업한지 시간이 좀 지났고, 임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취득한 교사자격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5.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육이 재활복지로 전환되었으나 치료교육=재활복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용고사를 볼 경우 재활복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활복지로 자격증을 전환하여 발급받을 수 없고, 나중에 교사로 임용된 후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원자격 관련 문의

질의

○ 국립대학교 공대 재료공학부를 다니며, 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일단 중등2급 기계금속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나 특수중등2급 직업으로 표시되어 교원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업특수교육과'가 아닌 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과목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표시과목 대신 '직업교육' 표시가 가능함. 단, '특수학교(중등) 실업계 표시과목'과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할 수 없음

○ 여기에서 보면 실업계 표시과목이라는 것이 중등2급 기계금속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 재료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직업으로 교원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5. [교직발전기획과]

○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우선 민원인께서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등 기본적인 무시험검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복수전공을 통해 [특수교육(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과목, 교직과목 필요학점 외에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학점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업무편람 규정의 내용은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수교육(중등) 직업교육] 자격을 받는 경우 동시에 [특수교육(중등) 기계·금속]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실업계 표시과목의 종류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자격이 동일하므로, 질의하신 기계·금속도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분류는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69p 이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재료기사자격은 금속(재료)기사 자격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기계·금속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직업교육 자격을 위한 학점이수 등 기타 사항을 만족하신다면, 해당 자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만족하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바랍니다.

학사편입과 임용고사에 대해 질문

질의

○ 학사편입과 임용시험에 대해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내년에 심리학과에 지원(학사편입으로)할 예정입니다. 제가 심리학과를 다니면서 역사교육으로 임용고사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사편입과정을 다 마쳐야만 역사교육으로도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에 의해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이 취득하여야 합니다. 학사편입과는 무관하며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족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사 편입을 통한 상담교사 정교사 자격취득 문의

질의

○ 현재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역사교육과를 정상적으로 졸업해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학사편입으로 심리학과에 입학하면 따로 교직과정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면 상담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시에는 교직과정에 선발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 설치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공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영문과를 전공하고 영어과 정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질의

○ 화학공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문과 3학년 편입하여 수업을 듣고 있는데,

1. 영문과를 전공하고 영어과 정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2. 영문과를 전공하는걸로 부족하다면, 이미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이수 과목에 영어과 교직에 필요한 영문과 과목 더 추가하여 다른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필요한 학점만을 이수하면 영어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추가과목 이수로 취득이 가능하다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어느 대학에서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나요?
3. 만약에 위의 두가지 방법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영어과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4. 이전에 교직을 이수하면서 들은 수업은 새로이 영어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교직발전기획과]

○ 영어교사자격증 취득의 경우 현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원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과 또는 학교에 진학하여 전공 및 교직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영어과 정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관련 별표 2의 7호규정에 의해 귀하의 경우 이미 화학정교사자격증이 있으므로 교직과정이 있는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영어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의 교직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 실습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관련 별표 2에 관한 문의

질의

○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 관련 별표 2”에 2.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라는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라는 것을 정의하거나 예로 들어 명시한 문구나 문서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입니다.

○ 관련내용은 '2009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9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실무편람'으로 검색 〉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첨부물

치료교사 관련

질의

○ 치료특수가 2012년 이후에 과목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2009년부터 자격전환(초·중등 특수자격증)을 위한 연수가 열리는데 실기교사는 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저는 현재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졸업(2010년)을 하면 유아특수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신이 임용된 과목과 같은 과목에 대해 상위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상위자격증을 인정한다는 법안을 봤는데요. 치료특수교사의 경우 유아, 초등, 중등특수의 구분이 없어 모든 학생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특수교사라는 직위가 사라지고 유아, 초등, 중등특수로의 전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제가 유아특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치료실기교사의 상위자격증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치료교사 임용요건에 특수교사+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저는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2.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육 현직교사의 자격전환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급 및 2급 정교사와 실기교사의 절차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중등교사로의 자격전환은 부전공연수로 하여야 하는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대상은 특수학교 중등자격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격전환을 위한 보수교육은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다른 자격증과 표시과목 체계가 다릅니다.

○ 자격전환은 정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며 상위자격 취득은 동일한 자격증의 상위자격이어야 합니다. 향후 실기교사에서 정교사로 승급이 되었을 때,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자격전환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고 전직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교사 자격전환에 관한 질문

질의

○ 교육청의 기간제 순회치료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전환 연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치료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치료교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면서 중등특수(재활과복지)로 과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6.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육교사 대상 자격전환 연수는 정규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기존의 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제916호, 2007.10.26)에 따라 별도의 자격증 변경없이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치료교육 교사 (재활과 복지) 연수 관련 및 대학원 문의

질의

○ 09년 특수교육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될 시 수료 후 2014년도 치료교육교사(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4년 특수교사자격연수를 대신해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관련 전공으로 1호봉의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학원 규정에 특수학교 준교사로써 대학원에 진학시 2급 정교사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재활과 복지)의 자격을 가지고서 2014년의 연수를 받지 않아도 전환하여 2급 정교사(재활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교직발전기획과]

○ 현재 재활복지 정교사의 자격전환 연수 추진에서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또는 중등의 타교과 정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소지한 경우 자격전환 연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자격전환 연수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사안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원 자격취득 관련은 대학원별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공휴일 출장시 시간외수당 병급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휴일에 공무(학생 지도 업무)로 인하여 4시간 이상의 출장을 가게 된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득하였다면 출장여비와 함께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8. [운영지원과]

○ 출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립대 정원 내 조교 신분 추가 질의

질의

○ 국립대 정원 내 조교가 중등임용고사를 합격하여 교사가 되었을 경우「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한 경력인정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제1류 제3호(10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2. 제2류(8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①기능직 공무원, ②고용직 공무원, ③「잡급직원규정」및「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임시직, 촉탁, 잡급 등)

○ 만약 1에 해당한다면 10할 적용이 타당한데 연구조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8할 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2에 해당한다면 국립대 정원 내 조교는 제2류 ①,②,③에 속하는 공무원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7. 29. [교직발전기획과]

○ 별표22의 제1류와 제2류를 적용하는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에서 조교의 경력

중 연구경력과 행정경력을 구분하여 경력환산율을 달리 책정한 이유는 업무의 연관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경력은 선생님이 담당해야할 업무와 관련성이 높고, 행정업무는 관련성이 그에 비하여 적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연구경력이냐, 행정경력이냐의 판단은 해당 대학의 장이 인사발령장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행정업무가 아니라 연구성격이 더 강하다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경력증명서가 없다면 행정의 객관성이 저하되고 행정질서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연구조교라는 사항은 해당 대학의 경력증명서에 의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겸임 채용 조건

질의

○ 미용전문학원에서 근무 중이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겸임교수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는데 미용학원강사는 겸임교수자격이 미달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겸임교수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2. [대학지원과]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 대상자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 인정제외자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자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 전임연구원

※ 교원, 학원강사 등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2005년부터 겸임교원으로 불인정 예정하였으나, 2005년 2월 우리부에서는 아래의 공문을 통보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고등교육정책과-553(2004.4.1)

2. 우리 부에서는 산학협력 제고와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등 겸임교원 제도

○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관련호에 의거 2005년도부터 "교원 · 학원강사 등 겸임교원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인정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나, 이는 유치원 · 초 · 중 · 고 교원 등이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이 아닌 실무 · 실험 · 실기 등 산업체 및 교육현장 등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위 관련호의 겸임교원 자격기준 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아울러 겸임교원 제도를 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겸임교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동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행 · 재정 제재를 할 예정이오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겸임교원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순수학문이론이 아닌 실기·실험·실기 등 산업체 및 교육현장 등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위 관련호의 겸임교원 자격기준 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국립대 교수로서 임용 전 공인노무사로 활동해 왔고, 현재에도 복지사협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직에 전념하면서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무보수 비영리로 공

익목적의 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간혹 부당해고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직무개시"를 하여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대학지원과]

○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공무는 아님)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는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대상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 둘째는 비영리업무, 물론 이경우도 행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영리행위업무 금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관련 질의

질의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발췌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질의) 위 ②항의 경우 총장 및 학장이 교원인지 아닌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4. 9.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교직원은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총장 및 학장은 교원에 해당됩니다.

■ 교직원의 구분

- 교원 : 총장 및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행정직원 : 직원 및 조교

※ 사단법인 직원 : 이사장

과거 교육법상 대학조교 경력은 현재 교원경력에 산정이 되는지?

질의

○ 대학 조교의 신분에 관하여 과거 교육법상에는 대학의 조교가 교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법이 폐지된 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조교는 교원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정규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라고 하였을 때에 과거 교육법상의 조교로서 교원의 신분이 2년 인정되었고, 그 후 사립학교 교사로 4년 근무한 사람의 현재 정규 교원경력은 4년이 되는 것인지요? 혹은 과거 교육법의 적용 당시에 조교로서 2년 근무한 것이 교원으로 인정되어 정규 교원경력은 6년이 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3.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상의 교수와 조교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격면에서 정규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거 교육법상의 조교 2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한마디로 정규 교원 경력 5년 이상인자를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도가 조교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 승진자에 대한 계약 임용이 가능한지?

질의

○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가'항에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립대학교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정관 및 인사규정에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되는 교원에 대하여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본인이 원하는 경우” 라는 문구 삭제)”으로 명시하여 교수로 승진시키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교수로 승진되는 교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정년 또는 소정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까?

○ 다시 말씀드리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은 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임용권자가 정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습니까?

○ 아니면 임용권자가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킬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하여 교수로 승진 시키거나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승진 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4. 14.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하면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근무기간은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교수 호봉 산정 관련 문의

질의

○ 국립대학 조교수로 호봉 산정을 할 때 00전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었던 경력을 40%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보면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5. [대학지원과]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결정할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 1 ‘제1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수 있으며, 이때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성 여부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가 관련학문 전문가로 구성한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즉, 전력(재직업무 확인서를 포함한 전력조회)이 대학·대학원의 전공학과, 학위 및 연구논문, 채용 후 담당할 과목과 상통하는지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교수, 조교의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문의

질의

○ 국립대학인 경우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데 교수와 조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국립대 교수 및 조교의 연가보상비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교육공무원이라 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동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겸직 문의

질의

○ 의사가 아닌 사립대학교의 현직 전임교수로써 총장직에 있는 자 혹은 현직 전임교수가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 노인복지 병원 혹은 기타 병원의 이사 혹은 이사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2.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국공립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학교원의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의 겸직은 금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대학교원의 경우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인사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수자격유지(신분)와 총장자격과 학사학위없는자가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인정여부

질의

○ 사립대학에서 교수임용이 되어 강의를 하다가 임기가 만료 되었습니다. 논문, 연구실적 등 일정한 승급과정을 거쳐 재임용을 받아야 하나 이사회 정족수 문제 등 정상적 이사회 개최가 되지 않아 재임용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 때 당사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총장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국내에서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 학위의 인정여부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총장의 자격을 명시한 사항은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거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교수채용 정보사이트 문의

질의

○ 2007년도 초반에 교수를 채용하려는 대학과 교수 임용 희망자를 on-line으로 연계하는 교수채용정보사이트를 구축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현재 그러한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6. [대학지원과]

○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대학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교원초빙정보센터(http://faculty.kcue.or.kr, 02-6393-5284)가 구축되었습니다.

교원 승진 임용 최소 경력년수 적용 질의

질의

○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5년 7개월여를 근무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 교원 인사규정 '제9조(승진임용)'에는 '부교수에서 교수가 되는데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6조(임용시기)'에는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3월 1일, 9월 1일 두 차례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 대학은 한 차례만 승진 임용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2008년도 업적평가에서 2009년 2월 28일까지 5년 11개월을 근무하는 셈이므로 2009년도 정기 승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승진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 해석 및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여쭤 봅니다. 경력년수에서 1개월이 부족한 것 때문에 2009년 말에 업적평가를 받고 2010년 3월 1일부로 승진이 된다면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11개월이나 늦게 승진되는 점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08년에 승진 심사를 받고 6년의 경력년수가 채워 지는 2009년 4월 1일부로 승진하는 식의 행정처리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대학지원과]

○ 승진의 시기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승진소요연수의 인정여부는 승진일시(3.1일)로 정하고 있다면, 3.1일 현재 승진에 소요되는 근무년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3.1일 현재 1개월을 모자란다면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릴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승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3.1 또는 9.1일로 개정하면 9.1일에는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3.1일 승진대상자 명단에 1개월이 모자란 자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 승진규정에 관해 질의

질의

○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로 이번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대상자였으나 탈락되어었습니다. 승진 심사시 연구, 교육, 봉사 등의 업적평가는 통과되었으나 2009년 신입생 모집 실적이 전혀없어 부교수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경우, 신입생 모집 실적이 없다고 하여 승진 누락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승진규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6. [대학지원과]

○ 대학교수의 승진은 대학의 정관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법률이나 지침으로 대학교수의 승진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대학에서 정관이나, 대학인사관련 규정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교원의 임용기간과 휴직기간에 관한 사항 문의

질의

○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명별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사립학교법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면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본 대학에서는 정관으로

교원의 직명별 임용기간을 각각 2년, 4년, 6년, 정년 등으로 규정하고 임용사항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864호) 제44조 6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교원의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임용기간이 당연히 휴직기간 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교원의 임용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 2000. 3 - 2004. 2까지 4년간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이 2002년 1년간 휴직했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과 재임용 시기는?

1번. 2005년 2월 임용기간 만료. 2005년 3월 1일부 재임용 심사

2번. 2004년 2월 임용기간 만료. 2004년 3월 1일부 재임용 심사

회신 회신일 : 2009. 4. 7.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근무기간은 국공립대학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3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여기서 법이란 교육공무원법입니다).

교원확보율 산정시 겸초빙 인정인원 문의

질의

○ 겸임, 초빙교원의 인정인원관련 문의입니다.

1. 전임교원이 교원법정정원을 넘는경우

계열교원법정정원이 13명으로 현재 전임교원 15명, 겸초빙교원 환산인원 3명 있을 경우 겸초빙 인정인원은 법정정원(13명)의 20%인 2명으로 계산되어 총 확보교원이 17명인지, 전임교원이 15명으로 법정정원인 13명을 이미 초과하여 겸초빙인정인원은 산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전임교원 + 겸초빙인정인원 : 교원법정정원 인 경우

계열 교원법정정원이 19명으로 현재전임교원이 17명, 겸초빙교원 환산인원이 3명일 경우 겸초빙 인정인원은 법정정원(19명)의 20%인 3명으로 계산되어 총확보교원은 20명인지, 전임교원 17명과 겸초빙인정인원 3명의 합이 법정정원(19명)을 넘으므로 19명으로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5.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정 즉 100%를 충족하였으므로 그 이상은 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기준이므로 100%를 넘어도 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은 교원확보율이 200-600%를 충족한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경력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 A는 한 대학에서 4년간 겸임교수를 하였고,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동안 매 학기 12시간씩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는 것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임교수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겠지요.

○ 이 경우에 'A는 4년간의 교육경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4년동안 실제로 강의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 시간 만큼의 교육경력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8. [대학지원과]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연구실적 환산율에 의하면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 근무경력

2) 대학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의 교육경력 등은 30%에서 70%의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 규정에 대해

질의

○ 저희 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명의 00대 출신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봄에 00대 출신을 한 명 더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내년 말까지 계산해서 2/3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봄에 00대 출신이 3명째가 되버리면서 2/3를 넘어버리므로 아예 3명째는 뽑을 수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의하면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말까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해석 의뢰

질의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제4조의 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의 1. 1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요? 예를들어 1.1부터, 3.1부터, 채용일로부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기간에 대한 해석 근거가 있는지요?

문의 2. 모집인원과 제1항의 채용인원을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요? 제1항은 채용인원을 기준으로, 제2항은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3. 채용된 교원이 단기간 재직 후 퇴직시 통산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3인 미만인 경우로 채용된 교원 중 일부가 3인 이상되는 연도의 말 이전에 퇴직시 통산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산적용시 퇴직자를 모집인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2.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4조의 3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1년단위로 계산하되, 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이 되는 년도말(12.31)까지의 교원선발인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또한 모집인원과 채용인원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집은 3명이지만 채용은 2명, 1명, 3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채용인원입니다 .

○ 질문3의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년 1월 개정안에는 법개정이후 누적인원으로 계산하도록 개정중에 있습니다. 1월 중순경 통과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문의

질의

○ 국립대학 교원의 경력(호봉)산정과 관련하여

○ 첫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둘째, 00행정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박사급)으로 10년간 재직하였을 경우, 호봉산정과 관

련하여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4. [대학지원과]

○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써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00연구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경력을 10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소속 교수의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소속 변경 혹은 겸임 가능 문의

질의

○ 본교의 교육대학원에는 1개학과(교육학과) 22개 전공(각 교과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수들은 학부의 과에 소속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 교육대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 충원이 있어 2명이 되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현재 소속이 '교육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중복하게되면 교과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들 드리고 싶습니다.

○ 이러한 문의 이유는 학교의 각종 학칙이나 예산 등의 규정이 학부(과)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알고자 함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5. [대학지원과]

○ 교원은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되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 소속을 교육대학원 내의 교육학과로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교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 문의

질의

○ 교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포인트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의 조교와 시간강사, 겸임교수, 영양사 등은 교원이 아닌지요? 교원이 아니면서 어떻

게 대학에서 정식강사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법적규정 정말 알고 싶고 그런 합법적인 법이 있다면 이런 법을 왜 바꾸지 않고 방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7.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는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원격대학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두며,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에는 學長을 둔다.〈개정 2007.10.17〉

② 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③ 學校에는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 등 職員과 助敎를 둔다.

④ 各種學校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 職員 및 助敎(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7조 (겸임교원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 명예교수 · 시간강사 ·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 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정원내 조교의 신분 문의

질의

○ 국립대학교 정원 내 조교의 신분으로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조교는 공무원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7. 28. [대학지원과]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별표/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에 해당 조교의 정원을 기술하고 있는 바, 국립대 조교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국립대학 계약제 전임교원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

질의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규정에는 계약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을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전임교원 3명이 2008년에 부교수 승진을 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 규정에는 부교수의 임용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때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인 효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에는 2009년 3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4월 1일자 재계약 체결 대상인 전임교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중 2명은 2009년 3월 31일자로 총장님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머지 1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4월 1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명의 법적인 신분상의 지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8.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대학의 교원은 계약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직명별 최소 근무년수 등을 대학의 자율로 하도록 지침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질의1)

○ 또한 동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4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에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을 붙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第11條의3 (契約制 任用등)

① 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1.27, 2008.3.14〉

제11조의 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 조교 법정정원 문의

질의

○ 국립대학 조교의 법정정원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들어) 학부에 1명씩 배정되어 있는 조교를, 교수 수가 많은 학부에는 2명으로 인원을 추가할려고 하면, 법률적 근거나, 교원의 법정정원 산출계산법처럼, 조교도 교수 수에 비례하여 계산할수 있는 계산식이 따로 규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부 조교수를 조정하려고 하면 학교 내부적(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8. [대학지원과]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에 의거 국립대학 및 국립전문대학에 두는 조교의 총정원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정원 내에서 각급 대학의 규모에 따라 조교의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의 조교 배정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제15127호〉 제6조에 정한 바 있었으나 현재 폐지되었으며, 국립대의 경우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학부별 조교 배정은 동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별 정원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제15127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부칙〈제15127호〉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교원의"로 한다.

②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대학 및 사범대학의 농·공·의·수의·수산·물리·화학·생물·지질·천문기상·가정 등의 자연과학계 각 학과에 있어서는 교수 및 부교수 각 1인에 대하여 각 1인이상을, 기타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학과등당 1인이상을, 교육대학에는 2학급당 1인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조교를 둔다.

제46조제1항중 "제45조 제1항과 제3항의 학교의"를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교원) ①전문대학에는 학과당 1인 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국립대학교 교수의 사기업 참여에 대한 문의

질의

○ 국내 국립대학교의 교수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투자유치된 국내 신생법인회사에 중역(이사)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국가 공무원법 64조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6.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5 규정에 의해 약간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①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국립대 교수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으면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교 임용시 경력 호봉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시 경력산정이 국립대학교의 경우를 보건데, 어떤 학교는 100%, 어떤 학교는 20%, 또 어떤 학교는 40% 등 일관된 기준이라기보다는, 관할 대학의 교무처에서 대략의 기준을 가지고, 경력을 산정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재직하고 있던 경력의 산정방식에서 상통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동일 전공분야의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면, 기업에 있다하더라도 연구소 경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즉, 기업 경력은 전체 경력의 40%만 인정되지만, 동일 전공분야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상통직의 개념으로 100%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7. [대학지원과]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을 교수 수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그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제6류에 의거 4할을 적용받습니다.

○ 그러나 호봉획정권자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비고1에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하고자 할 경우 위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채용된 교과목의 연계 및 상통정도, 직무분야의 전문성, 타 교수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근무경력이 교수의 담당과목과 상통하고 제반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경력에 대하여 10할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학(교)의 신임교수 임용시 계약제 임용이 가능한 근거는?

질의

○ 대학(교)이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 언제부터 대학(교)이 신임교수를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 계약제로 신규임용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11.11.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의 계약에 의한 교원임용에 있어서,

1-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1항에 의거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1999년.1.29 조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계약에 의거 교원을 임용할 때 동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3. 또한, 동 교원의 임용시 계약조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 겸직 비겸직 구분 문의

질의

○ 대학교에서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 겸직(비전업)과 비겸직(전업)을 구분하여 강사료 단가에 차등 적용하고 타직장에 겸직여부를 확인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가입자 구분상 직장가입자로 표시될 경우 겸직이라고 판단하는데

○ 건강보험자격상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지만 일용직이거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인건비성) 수령자일 경우 단가 차등 적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1 : 겸직과 비겸직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는지요? (겸직의 범위 등)

질문2 : 겸직과 비겸직을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0. [대학지원과]

○ 국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과 달리 시간강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업시간강사와 비전업시간강사(겸직)로 구분하여 단가를 달리 책정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업과 비전업의 가장 쉬운 구분방법은 현 대학에서 쓰고 있는 보험자격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장 명쾌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자격상 직장가입자로 표시 되지만 일용직이거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인건비성) 수령자일 경우 단가에 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일용직이거나 비인건비성 수령자일 경우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에 대하여...

질의

○ 시간강사 (사립대 겸임교수)봉급 **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방학이 되면 그마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속은 텅빈 지갑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대학지원과]

○ 대학 시간강사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학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학기제 또는 1년 단위로 정함으로써 시간강사의 심리적 안정 및 교육연구력 향상
- 시간강사 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시간강사 임용관련 자체규정 마련 등)
- 교육·연구지원시설 제공 및 연수기회부여(교수학습센터 활용 등)
- 국립대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수 정원확대를 위한 노력
- 각종 재정지원 사업시 교원확보율을 평가에 반영 등

○ 다만, 사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인사권자인 법인 이사회에 있어 우리부가 교수임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교원의 연구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별로 연구업적 평가 등을 심사하여 대학에 재정지원시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연구능력 및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임용 등에 대하여 우리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등

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재직중 학위취득에 따른 경력 인정 여부 문의

질의

○ 대학교 전임교수가 재직중 박사학위(2007.3.1.~2009.2.25.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를 취득한 후 임용전 학력인 박사과정(수료) 경력(1989.4.~1992.2.) 인정 여부를 의뢰해 왔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년의 수학기간을 인정하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00대학교 학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하나 재직기간과 중복이 되고, 임용전 학력인 박사과정(수료) 경력은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4. [대학지원과]

○ 대학원의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경우 인정하지 못하며, 학위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경력과 중복되면 둘 중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함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

대학교수의 타대학 비전임교수 겸직 문의

질의

○ 국내대학의 교원이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현재 개정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원소속 대학에서 승인을 할 경우, 대학에 근무하는 전임교수가 국내 다른 대학에 비전임교수로 발령받아 강의나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비전임교수의 경우는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 지침에는 전임교원이 타대학의 전임교원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대학교수의 타대학 비전임교수 겸직 문의

질의

○ 대학자율화 2단계 1차추진계획 중에 국내대학의 전임교수가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국내 대학의 전임교수가 국내외 다른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6.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타대학 겸임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국내대학의 교원이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학술적 연구목적을 위한 외국 대학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전임교원의 경우 타 대학의 겸임의 허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원 임용시 평가의 적정성 문의

질의

○ 대학교에서 교수 공개채용을 위해 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특정 과의 경우 실기가 꼭 필요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어, 실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기평가는 매우 주관성이 강한 평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임용공고에는 실기를 평가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교수들이 임의대로 실기를 평가할 수 있는지요? 만약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

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개정 2001.12.31〉

대학교의 연구조교 경력인정률은?

질의

○ 본교 신규교사 임용전 경력 중 대학원 조교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학총장 발행의 경력증명서, 전력조회를 회신을 받았고 직급은 연구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문의한 결과 유급(매달지급되는 월급은 아님)은 아니고 장학금을 면제받고 근무한 경력입니다.

○ 상근 유무는 장학금 전액면제이면 상근으로(주3-4일)정도 보아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은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원 내 대학조교에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대학지원과]

○ 정원 내 대학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 3항에 의한 교직원(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을 말합니다.

○ 임용전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정원 내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이 인정됩니다. 연구전담 조교로 근무하였다면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10할을 인정하고, 행정조교 등으로 근무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하여 국립대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8할을, 사립대인 경우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대학의 교수명칭과 자격에 대해 질문

질의

○ 겸임교수라는 제도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겸임교수의 자격과 관련하여 학력제한이 있는지요?

○ 학과 또는 전공마다 주임교수가 있던데, 주임교수의 자격은 따로 있는지요?(전임이어야 한다든가 겸임교수나 시간강사, 외래교수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호 및 4호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주임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칙 및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학교마다 자격여부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확보율 산정방식 문의

질의

○ 각 대학의 교수확보율은 대학평가, 입학정원 및 산업체위탁생 모집정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교수확보율 산정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일 비전임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면, 인정가능한 비전임교원의 유형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3. [대학지원과]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각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 등을 운영하는 데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교육통계에 이용하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전임교원 외에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겸임·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까지 산출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의 확보율은 활용 목적에 따라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의 포함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별로 해당과에 그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비전임교원(겸임·초빙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다만,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 / 02-3460-0380)에서 대학교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통계를 일괄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산출방법 등은 동 기관으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겸임교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기타 비 전임교원으로 분류

2. 초빙교원 등

초빙교원, 대우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이하 '초빙교원'이라 함)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자
-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 2006. 4. 1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기타 비 전임교원

겸임교원 · 초빙교원 · 시간강사를 제외한 석좌 · 명예 · 대우 · 기금 · 객원 · 연구 · 강의 · 예우 · 교환 · 계약 · 특임 · 원로교수 등

4. 시간강사

현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임명된 자

명예교수, 석좌교수 임명 근거 문의

질의

○ 각 대학에서 석좌교수, 명예교수 임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7조 4호에 보면 초빙교원등 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9.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호 및 4호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하며, 자격이나 임용방법은 학교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명예교수 관련은 "명예교수규칙"에 명예교수의 자격·추대절차·복무 기타 명예교수의 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문의

질의

○ 구조조정차원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려고 하니 20년 이하 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문제가 됩니다.

○ 그래서 본 대학에서는 20년 이하 근속자일 경우 명예퇴직수당 대신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에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 처럼 대학에서 20년 이하 근속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할 경우 구조조정차원에서 명예퇴직수당 대신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도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8.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에서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상

○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속하여야 하며, 20년 미만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등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요건이 되지 않는 직원을 명예퇴직이란 명칭을 부여하여 법령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대 겸임교수의 아파트 동대표 겸직에 대한 문의

질의

○ 법대 겸임교수라는 신분으로 동 대표직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상 이사람의 직업인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동 대표회장을 겸직 할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하고요, 겸임교수라면 3년 이상 유사경력만 있다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를 안하여도 겸임교수직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겸임교수의 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 이와는 별개로 겸직은 업무의 지속성, 영리행위 여부, 본업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겸임교원은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로서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수 겸직허가에 대해 문의

질의

○ 사립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대학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사단법인의 단체장을 하시고 싶어합니다. 선거를 해야하는 자리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단법인의 단체장직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총장의 겸직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8.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속기관(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대학 시간강사 겸직 여부 문의

질의

○ 사립학교 교사가 대학 시간강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만약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겸직이 가능한 일이라면 사립학교에서의 기관의 장이라 함은 소속 학교장을 일컫는 것인지? 발령권자인 소속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08. 12. 23.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교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재직 중과 휴직 중을 불문하고 교원이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이사장 또는 위임받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대학의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이사장 또는 위임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총장 임기에 관하여 문의

질의

○ 4년제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 총장 선출시 4년 단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현 법을 바꾸어 현 총장님을 연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법을 바꾼 다음에 바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4.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第53條 (學校의 長의 任免 〈개정 1990.4.7〉)

①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개정 1990.4.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敎育機關의 長을 任期중에 解任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1.13〉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강사 비정규직 고용 문의

질의

○ 1주일에 6시간 강의를 하고 있으며 4학기를 강의한 상태입니다. 다음학기 강의배정에서 저는 4학기 이상이 되어 비정규직 고용법으로 인하여 다음학기에 강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강의할 수 없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대학지원과]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동 법령에 의거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강의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법 적용 문의

질의

○ 시간강사의 경우에 학기별로 4학기 이상 위촉하면 비정규직법에 적용되는지, 혹 15시간 미만 강의담당 시간강사는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112008. 11. 13. [대학지원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및 제3항 제6호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며, 동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질의

○ 사립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비정규직법안의 적용을 받아 2년이상의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이 넘어도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지요?

2.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1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 서울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예를들어 주6시간 근무를 하여도 수업준비 시간등을 감안하여 그 세배인 18시간으로 인정해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 2009.3-2012.2까지의 시간강사 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2년이 경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기간이므로 2012.2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2007학년도 1/2, 2008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쉬고 2009학년도 1/2학기를 강의하였을때 누적기간이 2년이 넘게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9. [대학지원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 근로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며, 동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이라 함은 정규직전환을 의미하지는 않고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 2007년 7.1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해야할 의무가 부여되고(합리적 차별은 가능 예; 경력등)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고자 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년에 사업가능 여부 문의

질의

○ 국립대학교수의 경우 안식년이라는제도가 있는줄 압니다. 안식년에 법인회사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해보고져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 서류나 주주명부에 등재는 하지 않고, 다만 투자만 하고 출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5. 14.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서는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 따라서, 안식년 기간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면직과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문의

질의

○ 대학교 교원의 의원면직과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교원의 의원면직시에도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학교 교원의 의원면직과 대학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 (심의사항)에 의하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은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75.9.4, 1996.6.3, 1997.2.25〉

1.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 또는 학장이 부총장 · 대학원장 · 단과대학장 · 부학장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이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의원면직시 대학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실습전담강사 채용에 관하여 문의

질의

○ 4년제 사립대학 간호학과 병원실습에 있어 임상실습전담강사 채용에 대해 임상실습전담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또한 교원이라 함은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말하는데 임상실습전담강사는 어느 부류에 분류되어야 하는지와 대학이 임의로 계약제 채용조건을 만들어 채용해도 되는지? 추후 경력증명서발급시 임상실습전담강사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4조에 의하면 교원의 종류에는 총장,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초빙, 석좌교수, 대우교수등의 명칭은 비 전임교원으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임강사가 아닌 전담강사라는 명칭은 대학에서 정하여 호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교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원이든 비 전임교원이든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원 조정시 교원확보율 요건 문의

질의

○ 자체정원 조정시 교원확보율 확보 기준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을 보면 2009년에는 61%의 교원확보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학교는 정원 내에서 A,B 학과를 통합하여 A'학과로 하고, 일부 학과 간 정원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도 61%의 교원확보율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갖추어야 할 경우 편제정원 기준인가요? 재학생 기준인가요?

○ 또한 자체 정원조정시에는 현재의 교원확보율을 편제가 완성될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재학생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편제정원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8. [대학지원과]

○ 이러할 경우에도 61%의 교원확보율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2004. 12.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포함된 연차별 전임교원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09년 이후 61% 기준을 미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정책 추진의 실효성,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학들의 연차별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동 결과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갖추어야 할 경우 편제정원 기준인가요? 재학생 기준인가요?

⇒ 편제정원 또는 등록학생 수 중 큰 수를 기준으로 확보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 맞습니다

○ 맞다면 재학생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편제정원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 편제완성:재학생 기준, 편제미완성:편제정원

정년퇴임(65세 이상) 교수를 초빙교수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질의

○ 사립대학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를 초빙교수로 임용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만약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된 급여는 회수하여야 하지 않은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7.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교원의 임용 및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교원의 정년 및 계약에 의한 교원의 임용, 보수지급 등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초빙교원의 임용 및 보수의 적정성 여부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할 사항으로 귀 학교법인에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조교 임용시 특수교육보조원 경력 인정율

질의

○ 유아교육과 신규채용 조교가 특수교육보조원(비정규직)으로 공립혜화학교에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데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채용하였으면 경력이 인정이 되고 학교회계 예산으로 채용하였으면 경력이 불인정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학교회계로 채용을 하였더라도 공립학교에서 채용한것이 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2월이상 상근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교육청 지원 예산지원으로 경력이 인정된다면 인정율은 몇 할 적용이 되는지요?

○ 5할이라고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 기초 직무연수를 9일간 받은 후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1년을 상근 근무하였는데 특수교육보조원 교육 연수 이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8할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9. [대학지원과]

○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지침을 살펴보면 통상 국고 및 교육청 예산과목상 상용잡급 또는 인건비로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3호 즉 공무원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 8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예산 즉 각급학교 운영위원 직원 등 채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기초 직무연수로 인한 특수교육보조원으로의 상근 근무는 관련 규정을 갖고 시행하였던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의 시행기간 중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도 설명드립니다.

지침 폐지에 따른 문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293(2009.01.29) '대학교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알림'과 관련하여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1월 1일 재직중인 교원이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하는 경우 계약제 교원과 같이 직명별근무기간과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해서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임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 [대학지원과]

○ 공문으로 시행된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 직명별 근무기간 및 최소 소요연수 기준을 폐지하고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직급 & 재계약 관련 문의

질의

○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국립대학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전 대학에서는 조교수(부교수 승진 직전)로 근무하고 이번에 학교를 옮기면서는 전임강사로 직급을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 대학의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서둘러 서류 준비 등을 하느라 그냥 전임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전임 강사로 계약은 했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조교수로 직급을 조정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6. [대학지원과]

○ 대학교수의 직급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직급은 교수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이 충족되었다 하여 그직급으로 임용될수도 있지만, 그이하로도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직명별 최소근무기간 및 승진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침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사항은 대학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직위해제 및 징계 관련 문의

질의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4호의 규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4항에는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을시 1개월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안 할수도 있는지? 직위해제를 안하고 바로 징계의결 요구만 해도 되는지 여부? 현재 연구교수일 경우 직위해제가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교수를 정지하고 직위해제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9. 13.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4에 의하면 제73조의3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削除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은 아니며,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의 경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자가 직위해제 여부는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또한 직위해제 없이도 징계의결은 가능하며, 직위해제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직위가 해제되면 연구교수의 경우 연구를 계속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빙교원 학력 관련 문의

질의

○ 초빙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퇴직금, 건강보험가입 등 외에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돼 있는데 경력은 풍부하나 학력이 학사학위가 아닐 경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7. [대학지원과]

○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별표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또는 교육경력의 합산이 5년이상이되면 자격요건이 되며, 연구 또는 교육경력의 경우 경력환산율에 의거 경력이 많아 경력환산율을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은 됩니다.

초중등학교 교사 겸임교수 임용관련 문의

질의

○ 초중등학교 교사가 대학의 학부나 특수대학원 등에서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지 중등학교 교사가 교육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사는 보았는데 교육대학원외의 다른 대학원이나 학부 등에도 임용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아니면 조만간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내년 3월 임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대학지원과]

○ 교육대학원 초·중등 교원 겸임교수 임용은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교사 인적자원 Pool]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임 조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고,

○ 동 조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겸임은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대학 등에서도 초·중등 교원 중 고등교육법 규정 등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

나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겸임교수로 임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직무내용 유사성 및 본인 직무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등에 대한 본직 기관장의 겸임동의를 얻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파견, 휴직자 인사발령 문의

질의

○ 대학교원 소속 변경 발령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견중인 교원이 있을 경우 학과 통폐합으로 소속이 변경될 때에는 발령을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 예를 들어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가 공공단체의 장으로 선임되어 파견중에 있고 기존의 수학과는 통계학과와 통합되어 수학통계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인사 발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휴직자에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인사발령을 해야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6.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파견자 소속변경 발령에 관하여 수학과와 통계학과가 통폐합이 될 경우, 소속명칭이 〈수학통계부〉로 발령이 나며, 휴직자도 같은 경우입니다.

○ 따라서, 소속 변경에 관한 인사발령은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할 사항임으로 해당 대학 인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직원 채용시 규제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교 교수 채용시 동일학과 출신교수의 수를 학과 전체 교수의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학과 출신들은 같은과에서 교수생활을 할수 없는 것인지요 또한 학교가 달라도 학과나 학부가 동일하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9.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1항에 의하면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학과의 출신교수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 모집단위별로 특정대학 출신의 교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호봉획정 관련 문의

질의

○ 본교 초임호봉 획정(2005년 3월)시 임용전 3년간 회사경력에 대하여 기능직및연구원(전력조회회보시 기능직및연구원으로 회보받음. 연구원 근무증빙자료 모호함)으로 4할 인정받은 교원이, 초임호봉 획정 후 현재(2008년) 기능직(4할)과 연구원(10할)으로 근무한 시기를 나눠서 호봉재획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호봉재획정이나 호봉정정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8. [대학지원과]

○ 일반적으로 기능직과 연구원을 겸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역활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연구원 근무한 경력으로 10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연구경력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578호)에는

〈1〉

- 연구소법에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 연구기관

○ 법령 또는 정관으로 〈1〉의 연구기관에서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상시근무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동 요건에 해당될 경우 연구경력으로 10할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10할을 인정받을수 없으며, 신청인이 기능직과 연구원경력의 분할을 요구할 경우 전력조회를 통하여 정확히 연구원으로 정확이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지 및 연구원 발령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호봉획정시 상근직의 개념

질의

○ 교육공무원 보수업무등 편람에서 보면 대학 부속시설의 연구원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내 유급.상근'으로 근무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교원중 외국대학의 단과대학에서 연수연구원(researcher)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경력내용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여를 받으며, 주당 20시간을 근무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내용은 '상근직'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상근해서 근무하면 하루 8시간씩 주당 약40시간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다른 것 같아서 명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대학지원과]

○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근직이라 하면 정규직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급, 주급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상근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고용형태가 다르므로 상근직(정규직)인지는 해당자가 증빙하여야 하던가 전력조회시 확인해야 합니다.

A대학 전임교원이 B대학 겸임교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립학교법 상에는 대학간의 겸임교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겸임) 제2항 3호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규정을 적용하여 대학간 겸임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 겸임교수의 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을 결정하는 사항이나, 겸임교수이라 함은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이거나, 대학 소속 전임교원 · 전임연구원의 경우 겸임교원 산정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정부학자금 대출의 연령 제한 문의

질의

○ 학자금대출을 받고 싶어 대학에 확인해 보니 1953년 이전 출생자는 대출이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다고 안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7. [학생학부모지원과]

○ '09.1학기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무상지원이 아니라 이자납부 및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로 졸업 후 취업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동 제도는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하며, 대출신청 현재 만35세 이하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부학자금제도의 대출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55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대출대상)** 소득7분위(연소득 약4,839만원)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상환기준 및 의무상환액)**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

○ **(상환방법)**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한 원천공제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신고·납부
* 양도 및 상속, 증여소득 : 신고·납부

편입생에 대한 기초수급대학생 장학금지급 여부 문의

질의

○ 기초수급 가정으로 원하던 분야의 공부를 하고자 대학3학년 편입지원을 하였습니다. 등록기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8. [학생학부모지원과]

○ 미래로(기초) 장학금은 2009년까지의 대학입학생으로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이며,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 ·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재학생(편입생)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입니다.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하게 될 경우 문의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학금 지원 관련하여 전액인지 아님 몇 퍼센트인지요? 또한 4년제와 2년제의 차별이 있는지요?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다시 4년제로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9.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면제는 신입생일 경우, 대입수능시험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 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이상일 경우이

고, 재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장애인 7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편입도 상관없이 전학기 성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해주며, 등록금 지원금액은 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총 4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국·공립대학 기준)

※ 2010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로 장학금)은 2009학년도 2학기 기준 대학 재적생으로 한정되며, 2010학년도 신입생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200만원을 무상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문의

질의

○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교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학교를 입학합니다. 물론 등록금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시설은 4년전과 같은데 등록금은 올라만 갑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2. [학생학부모지원과]

○ 최근 몇 년 간 대학등록금이 물가인상율의 2~4배 인상되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여건 개선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학 자율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학의 책무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대학이 등록금 책정 자율을 빌미로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정부로서는 일정한 억제정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 예시

- 등록금 인상과 대학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등록금 액수나 인상폭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부과

○ 또한, 정부에서는 등록금 예고제, 대학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 책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급 확대('08년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인문계 장학금 신설 등),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및 국가장학기금의 설치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민간 기부금 등 저원가성 재원을 발굴/확충하는 등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2010학년도부터 이러한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학입장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을 높여 대학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등록금 산정근거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여 대학적립금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사항 문의

질의

○ 며칠 전부터 저희 학교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근로학생 선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본인해당자)
2. 차상위계층
3. 의료보험기준 평균이하
4. 그 외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이라고 인정하는 자

○ 이 의미는 일단 각 학교배정인원 안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을 전원 (신청자에 한해서)을 합격시켜주고 나서 다음 순위 학생을 선발 하겠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 [학생학부모지원과]

○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외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자체기준에 의해 시행(대상기관 및 선발이원이 상이하기 때문)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기관별로 우선 순위자의 지원비율이 달라 나머지 계층학생들의 경쟁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현재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학교 장학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신청 시 대상기관을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비율을 문의해 보신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리의 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자 지원 문의

질의

○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도 저리로 받아서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에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원생의 경우,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대출제도는 무담보 신용대출로써, 학생 대출신청에 있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대출 심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해 9~10등급 해당하는 경우와 6개월 이내의 대출 원리금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문의

질의

○ 국가 과학기술 장학 사업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이 장학 사업은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는 3.25, 저소득층은 3.0 만 넘으면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장학금 지원 기준이 각각 3.5와 3.25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번에 들어서 바뀌게 된 것이 08년도 입학생부터는 저소득층에 한해 성적기준이 충족되면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생활비를 주게 되었는데, 이것은 07년도까지의 저소득층 장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시행계획입니다. 더불어 폐지된 시행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성적이 4.0만 넘으면 교재비 50만원을 따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 항상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해주시는 장학사업인 만큼 많은 학생들을 헤아릴 수 있는 장학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4.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점 상향 조정 관련

학점 요건 상향 조정은 지방대 인문계열 장학사업 등 모든 국가장학사업에 적용된 것으로 이전

의 학점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생활비 지원 관련

'07년도 이전 저소득층 장학생과 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08년부터는 별도로 저소득층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부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07년 이전 저소득층 장학생과 '08년 이후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가 근로장학생 이중수혜에 대하여 문의

질의

○ 현행 국가근로장학생의 취지는 경제위기에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이중수혜가 돌아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준만 되면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줍니다.

○ 실질적으로 곤궁한 학생들은 실질적 형편 곤란으로 인하여 매학기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장학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1,2순위를 내주면 실질적 형편 곤란자는 어떻게 구제 하시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6. 25. [학생학부모지원과]

○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귀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초적인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하다고 입증되어 선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계층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간 관련 질문

질의

○ 현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외부업체에 연계되어 근무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주15시간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학자금대출홈페이지에서는 20시간까지로 나오던데요. 15시간이상 20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한건가요? 또 학자금대출홈페이지에서는 방학기간도 포함해서 1학기로 지정하고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8. [학생학부모지원과]

○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에 있어 주간교육과정(학기중) 근로시간은 20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은 해당대학과 업체간의 계약체결에 의해 20시간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주40시간 이내에 방학기간 중에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방학기간에도 근무하는지?

질의

○ 현재 국가근로장학생인데요. 방학기간에도 근무하는 것이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9. [학생학부모지원과]

○ 근로장학사업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학이라고 해서 일을 그만 두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에 따라서 방학 중에는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 대학의 실험실습실 근무의 경우는 방학 중에 근로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실험실습실 근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요약하면, 원칙적으로 학기 중이나 방학에 모두 근로가 가능하므로, 현재 민원인께서 하고 계신 근로장소가 방학동안에도 근로가 가능한 곳인지를 대학 장학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방학 중 계속 근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4년제 대학교 국가근로장학제도에 대하여 문의

질의

○ 금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국가근로장학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4.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는 대학생(전문대학.4년제 대학)의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과 산업체 근로기회를 제

공하는 2009년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최근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도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수혜대상을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며, 주요방향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인 세대의 학생,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대학별로는 재학생 수, 등록금 인상율, 내부장학금 지원실적(전문대는 전공 산업체 근로실적을 추가)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지원액을 확정하여 2월 중순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 받아 2월말까지 대학별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3월부터 대학별로 근로장학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청요건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4년제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02-2259-2105, 2107)와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02-364-1542)로 문의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http://www.studentloan.go.kr 또는 http://www.kc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의한 등록금 환불 가능 여부

질의

○ 제가 1학기 때 올 F를 받았습니다. 올 F받으면 1학기때 낸 학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6. [학생학부모지원과]

○ 등록금 환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또한 동법 제3조 제6항에 의거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학중인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금이 장학금인지 문의

질의

○ 근로장학생은 왜 노동법이나 근로법,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지요.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근로 '장학생'이므로 노동법 혹은 근로법을 피할 수 있더군요. 거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근로 장학생이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2. [학생학부모지원과]

○ 근로장학금의 목적은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 능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학자금 지원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은 성적이나 소득수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정한 성적이나 소득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은 시간급 지원급액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5,000원, 교외 근로의 경우 시간당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액, 시간급 : 3,770원(적용기간 '08.1.1 ~ '08.12.31)

○ 또한, 실험/실습도우미, 산학협력에 의한 전공관련 산업체 근로, 실습과 연계한 근로 등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이 전공관련 근로를 통해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 학교에서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학제도의 경우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로장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09년 부터 국가 근로장학제도가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까지 확대되고, 추후 근로장학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장학제도 본래의 목적을 더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07년 입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지원에 관한 문의

질의

○ 2008년 신입생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2학년학생 즉 2007년 입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1. [학생학부모지원과]

○ 2008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학생 1인 200만원씩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2학기 장학금은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자금대출기금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다면, 재학중인 대학에서 장학생을 심사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을 감면 처리하여 고지될 것입니다.(학자금 대출신청시 감면 고지)

○ 다만, 2학기에 동 장학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학생 1인당 220만원이며,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심사하여 기금에 통보되는 기간이 각 대학별로 학사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이 말씀하신 대학의 장학금 종류 및 선발여부는 재학중인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관련하여 2007학년도 입학생으로 안타깝지만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외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일반휴학 관련 문의

질의

○ 대학생이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아직 본격 진출하지 않은 경계인으로서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일반휴학이란 제도를 두었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회에 너무 제한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6.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제도로서 해당학생이 휴학할 경우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휴학하는 학기 중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고 향후 복학 시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4년제 대학 일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 학기는 최대 8학기까지 가능합니다.

※ 2010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로 장학금)은 2009학년도 2학기 기준 대학 재적생으로 한정되며, 2010학년도 신입생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200만원을 무상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래로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질의

○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저희 관할 구청에서 정부에서 등록금을 내줬는데, 미래로 장학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래로 장학금을 받을 시에 전액 환불하라고 하더군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3. [학생학부모지원과]

○ 미래로 장학금을 신청하실 때 이중수혜금지 등을 서약하게 되는데 이중수혜 장학금의 범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장학재단 장학금, 교내·교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 등록금에서 미래로계속장학금의 차액부분에 한해 타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중 생활비만을 대출받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여 미래로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부득이 설정된 규정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후에 미래로 장학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역시 타 장학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되나, 매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으로 성적을 유지하실 경우 최대 8개 학기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제외 관련 문의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학교라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평생교육법 대학재학생들도 부디 포함시켜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형편상 모든 기초수급대상자

에 지원하지 못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한정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호에 규정한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등만 대상이 되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편입생 기초수급대학생 장학금 기준 관련 문의

질의

○ 편입 합격통보를 받고, 기초수급장학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적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학생(편입생)의 경우의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3학년 편입이기에 2학년 2학기의 성적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장학금 신청하고 대학에 서류접수를 했는데, 전적대학 최종학기 성적이라고 하시는데, 최종 학기라함은, 마지막까지의 성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학기의 성적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0. [학생학부모지원과]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최종학기 성적으로 판단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장학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학부를 졸업하고 3학년에 편입 시 성적은 4학년 2학기 성적으로 산출합니다. 민원인의 성적기준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대학과 학자금대출기금에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30%)되어 있으니 학교 장학담당자와 동 규칙을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인정 문의

질의

○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본인만 교육지급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장애2급이시라 소득활동도 못하십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150정도의 월급으로 5식구 부양하는 건 무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학생학부모지원과]

○ 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인정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에 의거 동 장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은 본인도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바,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로 함으로써 추가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없애고자 본인증명서로 제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지정하게 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은 수급자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방법 등을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별로 가계곤란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됨)를 위한 장학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소속대학 장학부서에 문의하시어 수혜대상이 되는 장학금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등록금 면제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다자녀 가구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7.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로 대학등록금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1만8천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5만2천명에게 2,22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근로장학금의 경우 작년까지 전문대생 8천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3만7천명이 혜택을 입게 되며 규모도 1천9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대학생학자금 지원예산을 작년 4,673억원의 두배가까운 8,456억원으로 늘렸으며, 5월경에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다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에서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요즘 각종 세금까지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한두 푼도 아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가 불가하다고 하니 귀 부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부모의 편의 제공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과 납부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립대학 '03학년도, 사립대학 '89학년도 자율화

○ 다만, 우리부에서는 그 동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분납·연기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여 왔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 감면 또는 국가의 수수료 지원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수료율 감면 및 연간 125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는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정부차원에서 서울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사례(e-tax) 홍보, 대학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한 카드납부 실시 권고 등을 통하여 각 대학에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교협 및 전문대협의회에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 협조 요청 공문발송('08.8.25)

○ 다만, 카드 수수료는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카드할부 이자(15~25%)로 인해 오히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학(311개)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를 통해 일시적 목돈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휴학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질문

질의

○ 이번 학기에 등록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휴학을 생각하는데 학교규칙에 따르면 수업일수 3분의 1이 초과 했을 때는 등록금이 한 푼도 반환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규정이라는 이유만

으로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의 등록금 환불과 관련하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본인의 원에 의거 입학을 포기, 자퇴하거나, 질병·사망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반환토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처럼 휴학의 경우 동 규칙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학중인 대학에서 학칙으로 반환대상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범위는 재학 중인 대학의 학칙에 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수업료 반환 기준일 문의

질의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반환사유발생일이 반환기준일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반환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반환기준일은 전일인지 익일인지에 대한 답변을 근거법령과 합께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학생학부모지원과]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민법[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2007.12.21〉

대학 정부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1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학자금 원금상환 시작 전에 은행에 제 상황과 설명과 함께 거치기간을 연장시킬 방도를 문의했으나, 사무적인 답변과 거절뿐이었

습니다. 지금 저는 학자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학자금 원금상환을 1년 정도만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4. [학생학부모지원과]

○ 상환기간 설정은 대출받을 당시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출자가 은행과 대출 약정 시 상환스케줄을 통해 권리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 상환스케줄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는 학자금 기금이 대출자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채권을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채무 관련 민법상 계약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따라서 학자금 대출 후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제적시 등록금 미 반환 문의

질의

○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복학을 못해 제적처리가 되었습니다. 반환사유에 없다는 이유로 기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을 할 수 없다는데, 즉, 자퇴가 아닌 제적이므로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4.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 사유로 자퇴(제6조제3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적 시 수업료 반환 여부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5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2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1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교 기성회비 차등징수 규정 문의

질의

○ 기성회비란 수업료 이외의 학교부지, 건물사용, 교직원급료 등등에 대한 비용이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별로 기성회비를 차등징수 하는 건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학교를 많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정이 5학년부터 적용된다는데 있습니다. 1~4학년 때도 사정에 따라 10학점이하의 학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1~4학년 때 10학점이하의 학점을 이수하고 나면 졸업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5학년 때 10학점이상을 신청하여 기성회비전액을 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학점에 따른 차등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5학년은 수업료만 내어야 하는 게 옳지 않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개정된 규정은 2005학번부터 적용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세입세출) 기성회 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 수입과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기성회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 기성회비 징수규정에 의해 수업연한 초과자에 대해 학점별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입니다.

○ 덧붙여 기존에는 수업연한 초과자들까지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수업료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학생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별로 차등징수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개정조항의 적용시점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항의 효력발효 시점에 그 개정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면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혹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들이 많이 이루어 졌는데(수업료 반환 규정, 장학금 의무지급 비율 설정, 수업연한 초과자 학점별 수업료 징수, 휴학기간 중 수업료 면제, 수업료 납부연기신청 등)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대상을 입학연도로만 본다면 종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학기의 대학등록금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대학은 8학기를 이수하고, 9학기부터는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만 신

청을 하고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9학기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8학기때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학기만에도 졸업학점을 거의 모두 채우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학생학부모지원과]

○ 현재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 제7항에서 수업연한 초과자에 대해서는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1~3학점 : 수업료의 1/6 해당액, 4~6학점 : 1/3, 7~9학점 : 1/2), 수업연한 내의 경우는 동 규칙 제4조제1항에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규정상 수업 연한내(8학기)에의 징수방법은 학칙에 의해 학교의 장이 정하므로 이를 강제로 마지막 학기에는 최소 이수학점 규정을 없애고 학점당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학점당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부에서는 향후 '학점당 등록제'를 포함한 등록금 예고제,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금 분납자와 관련한 문의

질의

○ 등록기간에 분납 신청하여 남은 차액에 대하여 완납을 못한 경우, 성적이나 출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적처리가 가능한지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았지만 일부분의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등록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 [학생학부모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제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의 '등록금 분납조항', '등록조항' 및 '제적조항'을 유추 해석하여 학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상고등교육 시행시기 문의

질의

○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차가 있어도 안되고 보험료가 얼마 이상 넘으면 안되고 집이 있어도 안되고..부디 고등교육도 무상교육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8.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여건상 수년에 걸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학교 의무 교육의 경우에는 1985년의 도서·벽지지역부터 2004년의 도시지역까지 20년에 걸쳐 완성되어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5년도에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국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국가 전체의 한정된 예산 재원 때문에 교육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도 매년 다자녀 및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좀 더 많은 학비를 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워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많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동 제도는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하며, 대출신청 현재 만35세 이하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셋째자녀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제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

질의

○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체 일수가 1개월 이상인 것이 3회여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저는 대학합격 취소는 물론이고 내년에 수능을 다시 치르고 대학을 신입생으로 다시 다녀야 하는 지경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2.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이 외부 보

증 없이, 본인의 신용과 정부보증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 대출제도는 무담보 신용대출로 동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학생 대출신청에 있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심사하여야 하며, 동 심사에 필요한 제한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연체 학생에 대한 제한을 하는 이유는 대출금 연체시 정부에서 은행에 학생을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이 신용유의자로 등재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또한, 정부가 대위변제를 실시하면 보증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되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기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부득이 정부에서는 연체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학생 대출신청에 있어서 일정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심사할 수밖에 없으며, 빈번한 연체자일 경우 동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임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기존 학자금대출의 연체기록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자의 외국인 아내의 기초생활자장학금 신청 문의

질의

○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의 외국인 아내도 기초생활자의 대학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신청자격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조손가정만 해당)로 일정성적 및 학점요건이 만족하면 장학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부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본인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제한 문의

질의

○ 이번 학년 1학기를 정부보증학자금을 통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탈락되었습니다. 제가 쓴 휴대전화사용료가 연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했지만 현재, 곧 납부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새 학기 등록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신청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학생에게 학창시절에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나, 최소한의 심사여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신용등급 평가로,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학자금대출이 어렵습니다.

○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에 대해 보증을 할 경우 정부가 대위변제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 보증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되어 다른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기에 부득이 정부에서는 규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보증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보증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을 할 수 없다.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 및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한다)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한다)
3.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한다)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 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빈번한 연체자('08.8.1～'09.1.11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 재학기간 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기존 학자금대출의 연체기록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입생(미성년자) 학자금대출 친권 동의 관련 질의

질의

○ 학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년동안 자식을 돌보지않고, 찾지도 않은 아버지의 친권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엄마인 제가 보증을 서면 안 돼나요? 호적등본에는 제가 생모로 올라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0. [학생학부모지원과]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친권자 중 일방이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시에는 공동명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를 적시하고 친권자 일방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아닌 자를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 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문의 글로만 보아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니 은행이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공적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시어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장학금 지급 여부 문의

질의

○ 현재 학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전교육을 ○○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2주 동안 받았는데 그 기간이 학기중인 상태여서 교육을 받는 동안 근로를 못했습니다. 교육받았던 기간의 근로장학금은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2.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6호) 제10조(지원금액 산정) 제2항에서는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매월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교육기간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사전교육은 귀하가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와는 업무 연관성이 없으며, 귀하와 학교와의 고용관계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

질의

○ 저는 현재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적 문제가 차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처지를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학제도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학생학부모지원과]

○ 외국대학 진학시, 현재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은 어려운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의 재정부족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내 학자금대출에도 1년에 약 4,50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유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기금의 안정화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현재 유학

생에 대한 대출은 어렵습니다.

둘째, 해외의 경우 제도 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제도는 각 대학의 관리에 의해서 운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학점, 성적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추천, 등록금 확인, 이중수혜 방지, 대출학생 신상변동 관리 등) 외국 대학의 경우 이러한 대학 관리가 어려우므로 학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향후 예산이 보다 확보되고, 국가장학기금이 안정화되면 해외유학생에 대한 대출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지급된 장학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질의

○ 사립대학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연히 성적 증명서를 보다 저보다 하위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6.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교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구성원의 협의로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종류도 성적위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장학금 등)과 학교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기타 해당과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있으며, 수혜자 인원 수도 학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매년 학칙으로 결정합니다.

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한 질문

질의

○ 장학금의 취지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장학금 중복수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장학금의 중복수혜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무상)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장학금과 학자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2. 장학금 중복수혜를 금지할 경우 (무상)학자금도 중복수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3.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31.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학비만을 말하며, 학자금은 장학금을 포함한 향후 상환의무를 가지는 학자금 대출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무상)장학금도 중복수혜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액이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중복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위 1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학금, 학자금의 모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적 기준 문의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해보니 실업계에서는 배우지 않은 과목(물리 화학 등)이 있어서 학점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기초장학금은 성적제한을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4.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대학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성적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대학생의 80%이상이 80점/100점 만점이상에 해당이 되었고, 장학금 지급 목적이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생 인문계열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에 배정된 장학금액내에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장학금 선정 성적기준이 B학점 이상이 됩니다.

장학제도에 관해 문의

질의

○ 정부 어떤 부처에서든 상관 없이 어떠한 장학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2.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에는 미래로장학금,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금, 이공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과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에 대해 정부보증으로 학자금에 대해 대출해 주는 학자금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미래로 장학금은 학부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 발급해야 함)로써 입학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 성적요건

  - 신입생의 경우 : 대입 수능시험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내신 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 이상

  - 재학생의 경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지방대학 인문계열장학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신입생 및 재학생(2~4학년)에 대해 각 대학별 자체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장학생으로 선정·추천받은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 온라인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기금측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후 최종대상자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은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을, 사립대학은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 4년제 대학생에게 대학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대학이 제공하는 산업체,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공공기관 등 교·내외 시설에서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주 2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2009년도 지원계획은 2월초쯤에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자격요건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하였고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이 지

원이 가능하며, 최소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춘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이공계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08년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및 지역대학 우수학생지원,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사업 등을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장학금에 대한 사항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http://scholarship.kosef.re.kr)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지원자격, 절차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미래로장학금, 지방대학 인문계열장학금, 학자금대출은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동 제도는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하며, 대출신청 현재 만35세 이하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부학자금제도의 대출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55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질의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8.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 문의하신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구소득수준 등을 감안(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1학기 기준)

- 소득2분위 이하(이자 전액 지원), 3~5분위(4%지원), 6~7분위(1.5%지원)

※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동 제도는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하며, 대출신청 현재 만35세 이하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부학자금제도의 대출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55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질의

○ 이자가 만만치 않아 1년 거치기간 1년 상환기관으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시국이다 보니 거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면 상환기간만이라도 연장해보려고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기금에 연락해보았더니 무조건 연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4.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정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가 보증을 서고 금융시장의 재원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중의 투자가로부터 재원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학생의 상환조건 즉, 대출이율 및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을 상품화하여서 시중의 투자가와 거래가 된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므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문의

질의

○ 이번 학기에는 사정상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1학기 등록금 약 38만원 대출을 하여 다달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아 나아간다는 조건 하에서도 단지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신청 전에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1. [학생학부모지원과]

○ 질의하신 학자금대출시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하였을 경

우, 이자 및 원금상환에 있어서 연체 사실이 없다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신용의 평가는 은행연합회 또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본인의 신용정보(등급)의 변경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시 학생의 신용평가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제공자료와 대출대상자가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평가방식(SCSS)을 통해 학생신용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학자금대출 현역사병 이자유예 문의

질의

○ 현역사병이자유예를 5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전경으로 복무중입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에 한하며, 전의경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6. [학생학부모지원과]

○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월 8일부터 현역사병의 복무기간 중 거치기간 중의 이자를 기금이 대납해주고 제대 후 3년안에 대납금액을 상환하는 현역사병 이자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제도는 신청 후 2~3개월 동안 국방부를 통한 군 복무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자를 유예할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전의경의 경우 복무여부 확인을 병무청 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를 통해야 하는 관계로 시스템 개발 등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민원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제도개선 중에 있으며, 병무청과 합의를 통하여 전의경도 현역사병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월부터,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의 현역사병 범위에 전환복무자(병역법 24조, 25조에 의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OO디지털대학교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질의

○ 00디지털대학교 같은 대학교는 학자금 대출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까? 지원을 확대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 [학생학부모지원과]

○ 00디지털대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동 학교의 학위과정으로 정규 입학하였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09학년도 신입생의 학자금대출 신청은 2009년 1월경 부터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한 시간제 등록생 등에 대하여만 제한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대 인문사회계열장학금 관련 질의

질의

○ 2008년 1학기부터 지방대인문사회계열장학금? 이라는 게 생겼던데요. 2학기에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제가 대학생인데 1학기에는 사정상 휴학했다가 2학기에 다시 복학을 하거든요. 2학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 [학생학부모지원과]

○ 지방대학 인문계열장학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신입생 및 재학생(2~4학년)에 대해 각 대학별 자체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장학생으로 선정·추천받은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 온라인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기금측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후 최종대상자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원자격은 되나,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별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자에 한해 학자금대출사이트에 신청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인문계열 장학금 관련 질의

질의

○ 제가 지방인문계열 장학금을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국민기초 수급자라서 생활비 30만원/월 혜택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요 지방인문계열장학생에서 우수장학생 제외라고 써져 있던데 [[따라서 본인이 인문장학생(우수장학생 제외)으로서 학기별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건 뭐죠? 우수장학생과 인문장학생이 무슨 차이죠?

회신 회신일 : 2009. 2. 4. [학생학부모지원과]

○ 문의하신 우수장학생은 인문장학생의 휴학 또는 성적미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한하여 대체 선발된 학생을 말하며, 인문장학생은 계속장학생과 신규장학생으로 구분됩니다. 계속장학생(2~4학년)은 기존 장학생으로서 매학기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말하며, 신규장학생(1학년 신입생)은 기존 장학생의 졸업으로 발생한 인원범위 내에서 신규선발된 학생을 말합니다.

○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5점 만점에 3.5이상 또는 4.3점 만점에 3.3이상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2008년도 장학생으로 '계속장학생'에 해당되며, 성적과 생활비 지원기준(학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을 충족한다면 생활비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성적장학금 및 학교 규정 질의

질의

○ 이번에 학교 성적장학금 규정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익 점수가 안 되면 성적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장학금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학교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2.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의 성적, 저소득, 특기장학금 등 대학 내 자체 장학금의 지원기준은 해당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따라서, 말씀하신 대학의 장학금 지급기준의 변경 및 시행방

법 등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향후 장학금 기준 등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질의

질의

○ 학자금 이번 학기에 저리 1종으로 됐으면 현재 차상위계층인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4. [학생학부모지원과]

○ 올해부터는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를 소득분위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소득분위 2분위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3~5분위는 국가가 3%를 본인이 4.65%를 부담하는 저리1종으로, 6~7분위는 저리 2종으로 국가가 1%를 본인이 6.65%를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자금대출 필요 서류 문의

질의

○ 몇 년전 법적으로 이혼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대출을 받는데 굳이 그러한 것이 필요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6.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부생의 경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 시 소득수준별로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지원 대상을 선정시 연간 소득수준(가구별 실제 총소득, 재산, 자동차정보 등을 합산하여 결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수준파악시 미혼자의 경우는 학생본인과 부모의 소득, 재산등을 보고 기혼자의 경우는 학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혼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및 이혼자 모두 해당)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역사병의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에 관하여 질의

질의

○ 정부 학자금 대출자중 현역에 입대 하였을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6. [학생학부모지원과]

○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는 군복무기간 동안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학생은 전역 후에 유예한 이자를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학자금포털사이트에 (www. studentloan.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 복학에 관한 등록금 문제 질의

질의

○ 휴학할때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기간이 끝나고 복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사례) 학기개시일 2008.3.2 개강, 2008.3.7일/2008.3.12/2008.4.22일 3명의 학생이 휴학을 했으며 2009학년도에 복학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복학하지 않았고, 복학의사도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4.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사유는 자퇴의 경우입니다. 즉, 학칙으로 휴학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했다고 해서 등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복학일을 지나서 계속해서 복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가 되는데, 제적이 되는 경우 역시 등록금 반환사유가 아니므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복학의 의사가 없는 경우 "제적처리가 되면 기납부한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으나, 자퇴를 하면 기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통지하셔서 학생이 자퇴를 해서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복학 의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퇴를 하도록 종용하라는 것은 아니며, 휴학 연장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여부를 고려할 경우 제적 보다는 자퇴가 학생에게 유리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를 하는 경우 학교는 등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등록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등록 후 휴학일까지 받은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제하고 반환을 하기 위함)

○ 따라서, 동 민원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3월 7일과 3월 12일에 휴학을 한 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5/6를 반환받게 되며, 4월 22일에 휴학을 한 학생의 경우는 수업료의 4/6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 타

한국사능력시험 일정

질의

○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이번 한국사 능력시험 6회 일정이 시도의 지방공무원시험일이 있는 날과 겹칩니다.

○ 한국사 능력시험은 일년에 두번뿐인 시험인데 이번 6회 시험을 놓치면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초중고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공무원시험 수험생도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이번 시험일정이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0. [교육과정기획과(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험 일정은 이미 공고된 상태이며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공무원 시험과 겹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10월 24일(토)에도 또 한번 기회가 있사오니 그때 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관련 문의

질의

○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지원 자격과 선발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0. [글로벌인턴지원단]

(1) WEST 프로그램 개요

WEST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2008년 8월 한·미 정부간에 합의된 사업이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말에 1기 182명, 8월말에 2기 158명이 출국하여 어학연수 및 인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WEST 프로그램 지원 기준

참가대상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휴학생) 및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으로 4년제는 4학기 이상, 전문대는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어학성적은 토익점수 750점 이상, 대학평점은 3.375/4.5, 3.225/4.3, 3.0/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WEST 프로그램 진행절차

선발절차는 '모집 공고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영어회화능력 평가 및 인성 면접 → 스폰서(미국 대행업체) 인터뷰 실시 → 합격자 발표'이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 비자심사 → 미국 출국 후 프로그램 참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학정보(목록)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질의

○ 전국의 4년제 대학교 가운데 사립과 국립 학교 목록을 공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교계 사립대학의 경우 각각 해당 종교도 공개할수 있는지요? 또 대학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내 별도로 마련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8. [인재정책분석과]

○ 문의하신 대학 목록은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대학생.성인 〉 학교정보 〉 학교유형(대학교, 대학)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주소록은 통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자격에 대한 문의

질의

○ 국외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은데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첫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1호(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1호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란 국내에서의 학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국내에서 중학

교 3학년 1학기에 국외 유학을 한 경우 국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둘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녀등(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타 부양의무자의 의미에 대하여...(예를 들어 호주에서 유학하는 경우 현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 후견인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부양의무자에 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에 있고 조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국제협력정책과]

○ 자비유학 자격이 있으려면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란 통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의미하며, 미인정 조기유학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을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미인정 유학을 떠나 국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고등학생이 되신 경우 미인정 조기유학으로 득한 학력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귀 자녀께서 현재 외국에서 고등학생이 되셨다 하더라도 자비유학 자격을 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비유학 자격은 유학을 떠날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대해 문의 하셨는 바, 동조 15조의 입법취지는 전 가족이 해외로 떠나 부득이 하게 학생이 동반하여 이주한 경우에 한해 유학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기타 부양의무자라 함은 실제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후견인으로 지정된 현지인은 기타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조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실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유학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비유학과 장학금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교 진학 후 국비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발과정 선발시기, 그리고 유학생 국비장학금을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4. [국제협력정책과]

○ 국비유학생(외국정부초청장학생)은 국가간의 문화협정, 교육교류약정 등에 의거, 각 국가별로 의뢰해온 초청인원에 대하여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선발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유학생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선발로 그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로 정하고 있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 그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국비유학생 선발 및 정부초청장학생의 선발은 국제교육진흥원홈페이지(www.ied.go.kr)->홍보센터->공지사항의 공고 또는 국제교류부 (대표전화: 02-3668-137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교육진흥원(www.ied.go.kr)에서는 국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국비유학생 및 정부초정장학생의 선발을 통하여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대상자를 선발 및 공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규대학 졸업 인정 여부 문의

질의

○ 저는 중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된 중의약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작년에 고등교육을 서로 인정한다는 협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대학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 면허나 자격증 인정여부도 같이 인정협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3. [국제협력정책과]

○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분야 학력 및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 제2항 적용 범위에서 "본 양해각서는 양국의 자격인증과 관련이 없으며, 자국의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면허, 자격증 인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또한 동 양해각서는 "고등교육 학력 및 학위를 서로 인정함으로써 양국의 학생들이 상대국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상대국 학생의 해당 교육기관에의 입학 허용여부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중의약대학 졸업이 국내의 한의학 관련 대학 졸업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 유학 관련 지원제도 문의

질의

○ 이번 학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연수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지원 제도나 여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5. [국제협력정책과]

○ 교과부에서는 매년 40여명의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www.niied.go.kr)
- 담당자 : 3668-1375 (국비유학 담당자)

○ 그 외에도, 중국정부에서 한국학생을 초청하여 지원하는 중국정부 초청 국비유학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 담당자 : 3668-1389 (외국정부초청 장학제도 담당자)

○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타 정부기관 장학프로그램 및 민간 장학금도 함께 알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외국인과학기술자 F-5비자(영주권) 신청 문의

질의

〈문의 1〉

대학교에 E-3자격으로 근무중인 외국인 과학자의 F-5비자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년째 근무중이며 SCI논문실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법무부는 SCI논문실적 등이 우수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교과부 장관 추천을 받는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사이언스카드) 발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발급요청 대상자가 과학분야의 특정능력소지자의 경우에 급여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SCI 논문실적, 수상경력,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사이언스카드) 발급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7. 7. [국제교류협력과]

〈답변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해 드리는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는 E-1(교수), E-3(연구) 비자 발급시에만 해당됩니다. F-5비자(영주)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발급은 출입국관리소에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친 후 결정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능력시험인증서(3급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본인작성), 신원보증서 그리고 수수료(5만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소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사이언스카드 발급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scard.go.kr)에 방문하셔서 상단에 있는 “사이언스카드제도”- “사이언스카드신청”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 사례집

총 괄	감 사 관	변 광 화
	민 원 조 사 팀 장	김 대 성
기 획	사 무 관	배 석 희
	교 육 연 구 사	정 회 택
	행 정 주 사	박 영 태
	행 정 주 사	박 지 영
편집정리	전 문 상 담 관	권 명 숙
	전 문 상 담 관	박 혜 진
	전 문 상 담 관	이 학 모
	전 문 상 담 관	이 지 숙
	전 문 상 담 관	이 봉 순
인 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타(☎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